

# 2020 군사법원 연감

[2020. 1. ~ 2020. 12.]



고등군사법원 / 육·해·공군 군사법원

# 머 리 말



13대 고등군사법원장  
준장 박 종 형

(2020. 1. 3. ~ 현재)

2017년 최초 발간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는 군사법원 연감은 지난 1년간의 군사법원 운영현황과 통계자료를 정리·수록하여 군사법원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군사법원 연감은 2020년 연말을 기준으로 고등군사법원 및 각 군사법원의 인원현황, 군사법 행정의 운영 현황, 각종 통계자료 및 군사법원 주요 판례 등을 수록한 군사법원의 소중한 기록입니다.

고등군사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군사법원 판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 및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 열람·검색 서비스' 구축 사업을 통해 모든 국민이 확정된 군사법원의 비실명 판결서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2018년도에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순정 균형사범인 '상관명예훼손 등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였고, 이후에는 2020년에는 '군 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군사법원에 기소되는 성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난 한 해 동안 국민 및 장병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를 이번 연감을 통해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군사법원의 운영도 제한받고 있지만 장병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사법원의 운영은 우리 군사법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이며, 군사법제도 개혁의 취지와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공감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사법원 운영을 위하여는 재판 절차의 투명성, 재판 결과의 공정성, 모든 군사법원 소속원들의 직무상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사법원 구성원들 모두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군내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장병들의 고유한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 군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군사법원 연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군사법원 연감이 군사법원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군의 모든 장병 및 국민을 위한 군사법 제도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군사법원 연감은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에 전자문서(PDF파일)의 형태로도 게시되어 있고, 모든 관계자들이 쉽고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연감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국방부 법무관리관님 이하 각 군 군사법원장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자료수집, 발간 등에 수고를 해준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장병에게 신뢰받는 군사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4월

고등군사법원장 육군 준장 박 종 형

# 목 차

## □ 군사법원 청사 전경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육군 군사법원
- 해군 군사법원
- 공군 군사법원

## □ 법원장 및 주요 직위자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육군 군사법원
- 해군 군사법원
- 공군 군사법원

## □ 군사법원 부대기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육군 군사법원
- 해군 군사법원
- 공군 군사법원

## □ 연간 발자취(화보)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육군 군사법원
- 해군 군사법원
- 공군 군사법원

## □ 군사법원 월간 주요 행사표

## □ 연간 군사법원 운영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육군 군사법원
- 해군 군사법원
- 공군 군사법원

## □ 2020년 사건 통계현황

- 고등군사법원
- 국방부/각 군 보통군사법원 종합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육군 군사법원
- 해군 군사법원
- 공군 군사법원

## □ 2020년 주요 판례

- 고등군사법원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육군 군사법원
- 해군 군사법원
- 공군 군사법원

## □ 군사법 관련 법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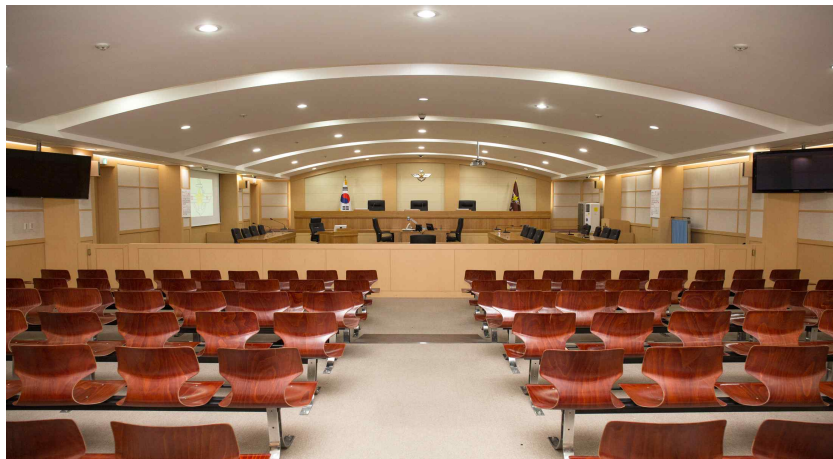
## □ 2020년 주요 개정 형사법 관계법령

# 군사법원 청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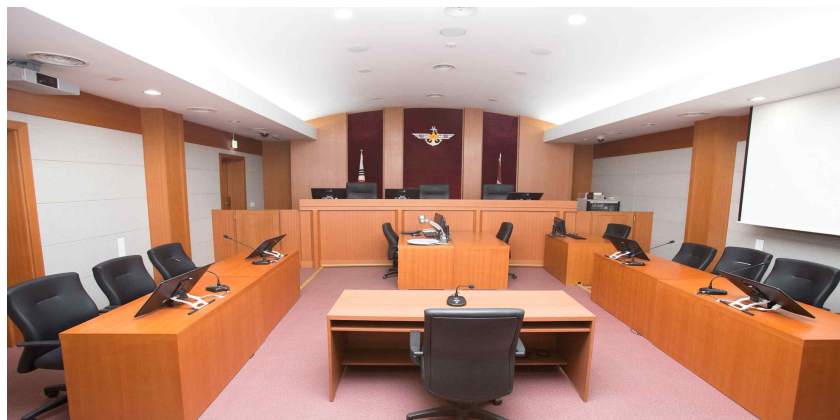
##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청사 전면]



[대법정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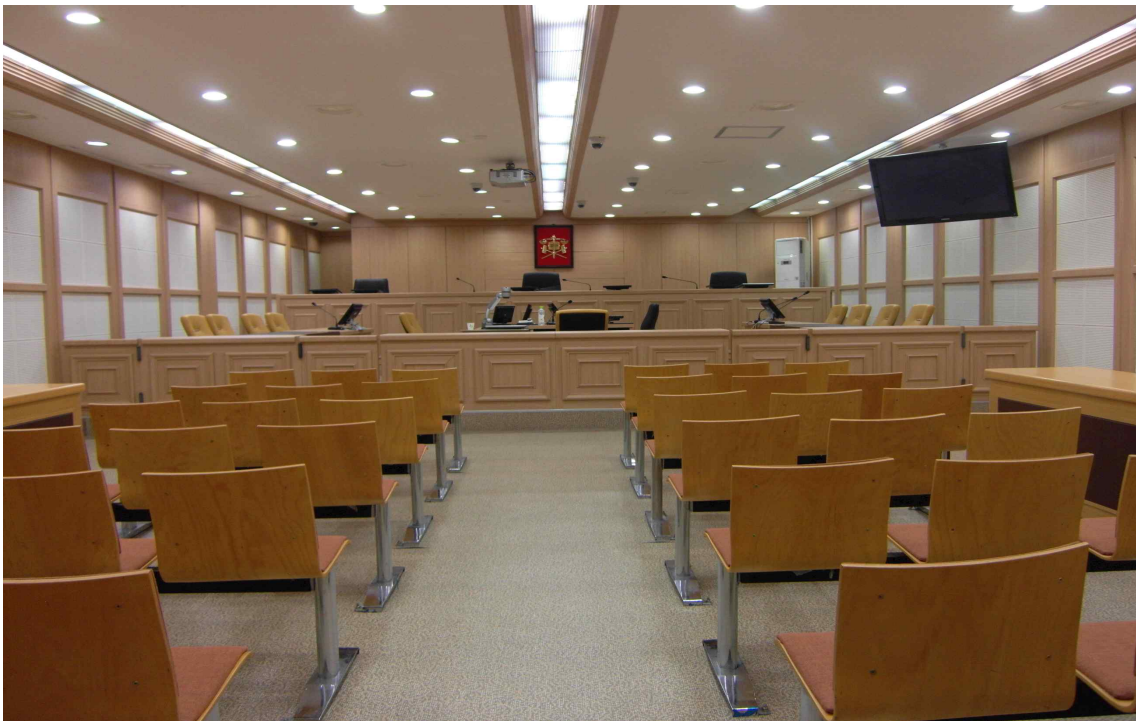


[소법정 내부]

□ 육군 군사법원



[육군본부 군사법원 청사 전면]



[육군본부 군사법원 법정 내부]

## □ 해군 군사법원



[해군본부 군사법원 청사 전면]



[해군본부 군사법원 법정 내부]

○ 해병대



[해병사 군사법원 청사 전면]



[해병사 군사법원 법정 내부]



## □ 공군 군사법원



[공군본부 군사법원 청사 전면]



[공군본부 군사법원 법정 내부]

# 법원장 및 주요 직위자

##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 고등군사법원장



13대 법원장 준장 박 중 형  
(2020. 1. 2. ~ 현재)

### ○ 주요 직위자



고등1부장  
육군대령 김상환



고등2부장  
해군대령 장준홍



보통부장  
육군대령 이익원



재판연구부장  
공군중령 이형일



국선변호부장  
육군소령 이희원



행정처장  
3급 양의찬

## □ 육군 군사법원

### ○ 육군 군사법원장



17대 법원장 대령 서 성 훈  
(2018. 12. 26. ~ 2020. 12. 28.)

### ○ 주요 직위자



재판1부장  
중령 문상원



재판2부장  
중령 김영오



재판3부장  
중령 박지근



재판4부장  
대령 황민제



재판연구부장  
소령 오상열



국선변호부장  
대위 김갑현



행정과장  
4급 유재열

## □ 해군 군사법원

### ○ 해군 군사법원장



15대 법원장 대령 옥도진  
(2020. 1. 20. ~ 2021. 1. 3.)

### ○ 제1재판부 주요 직위자



선임군판사  
소령 장동호



군판사  
소령 김다미



국선변호부장  
대위(진) 류인제



주임원사  
원사 정원덕

### ○ 제2재판부 주요 직위자



제2재판부장  
중령 하성호



군판사  
중령 한재호



군판사  
소령 최은성

## □ 공군 군사법원

### ○ 공군 군사법원장



14대 법원장 대령 송 가 준  
(2019. 12. 24. ~ 현재)

### ○ 주요 직위자



재판1부장  
대령 송가준



재판2부장  
대령 권상진



선임군판사  
소령 서대봉



국선변호부장  
대위(진) 호성식



행정과장  
준위 염규중



합의재판사무담당  
4급 김종만

# 군사법원 부대기

## □ 고등군사법원



○ 제정일자: 2000. 6. 29.

○ 규 격: 163cm × 88cm

○ 표식설명

- 단순·명료한 디자인: 공명정대한 고등군사법원을 의미
- 자주빛 바탕: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고결함을 상징
- '법원' 붉은색 글씨: 엄정한 재판권의 행사를 표상(생명, 힘, 정열, 사랑)

## □ 육군 군사법원



○ 제정일자: 2000. 7. 1.

○ 표식설명

- 자주색 바탕: 법무병과 상징
- 흰색 도안: 청렴
- 원: 21세기 통일 한국 염원
- 칼: 군사법 엄정함, 정의
- 저울: 군사법원의 공정성, 형평성
- 2000: 군사법원 창설년도

## □ 해군 군사법원



○ 제 정 일 자: 2008. 11.

○ 창 안 자: 군판사 대위 박성완

○ 부 대 기 설 명

- 의의: 대한민국 해군의 법치주의 실현기관으로서 엄정한 법적용과 집행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해군의 군법질서 유지와 지휘권 확립에 기여함을 의미함
- 앵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해군조직의 안정을 도모
- 앵카내의 동그라미와 홑줄: 군내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해군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
- 테두리 무궁화: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켜나가자는 의미
- 테두리 무궁화 색깔(청색): 차가운 이성을 상징
- 테두리 무궁화내의 칼: 정의를 실현하는 힘을 상징
- 앵카 동그라미 안의 저울: 엄정한 정의의 기준



## □ 공군 군사법원



### ○ 도안 의의

- 높아진 공군의 위상에 발맞추어 법무병과로서 더욱 진보할 수 있는 건전한 기반이 되고자 군사법원의 신념을 새긴 도안

### ○ 부분별 의의 및 설명

- 저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재판
- 하단의 법전: 법에 근거한 공명정대한 재판
- 횃불: 시시비비를 가려내어 정의의 등불을 밝히는 법원을 상징
- 칼: 범죄를 엄단하고 부정을 척결하여 군내 기강 확립의 의지
- 테두리의 월계수: 법질서 확립에 기반하여 공군의 영공수호에 일조하고자 하는 신념

### ○ 부대 임무

- 공명정대한 재판을 통한 법질서 확립
- 군내 준법의식 고취 및 각종 범죄 엄단·예방

# 연간 발자취(화보)

##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제13대 고등군사법원장 취임식 (2020. 1. 2.)



우수 국선번호인 감사장 수여식 (2020. 1. 8.)



제20주년 창설기념행사 및 전반기 성과분석회의 (2020. 7. 1.)



역대 법원장 초청행사 (2020. 10. 30.)



전군 군사법원장 회의 (2020. 11. 20.)



이희원 법무관 전역식 (2020. 12. 30.)

## □ 육군 군사법원



군사법원 통계 로스쿨 실무수습생 교육 (2020. 1. 13.)



제2군단 군사법원 개원식 (2020. 1. 30.)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차량 지원 (2020. 5. 19.)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차량 지원 (2020. 5. 21.)



초대 육군 군사법원장 대령 서재종 전역식 (2020. 6. 29.)



군사법원 창설 20주년 기념식 (2020. 7. 1.)



수도군단 법정 개축 (2020. 12. 3.)



## □ 해군 군사법원



해군본부 군사법원 제2재판부 속기사 임용 (2020. 5. 1.)



해병대 9여단 법정 개소 (2020. 6. 22.)



전자법정화를 위한 진해기지사령부 영상녹화장비 도입 (2020. 11. 13.)

## □ 공군 군사법원



제20주년 군사법원 창설 기념식 (2020. 7. 1.)



제20주년 군사법원 창설 기념식 (2020. 7. 1.)



'20년도 항공우주법 연구모임 간담회 (2020. 7. 29.)



'20년도 항공우주법 연구모임 간담회 (2020. 7. 29.)

## 군사법원 월간 주요 행사표

<b>1월</b>	<p>2일 [국방부] 제13대 고등군사법원장 취임식</p> <p>3일 [해 군] 제14대 군사법원장 대령 장준홍 이임</p> <p>6일 [공 군] 증인지원관 교육(법원공무원연수원)</p> <p>8일 [국방부] 우수 국선변호인 감사장 수여식</p> <p>9일 [육 군]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p> <p>20일 [해 군] 제15대 군사법원장 대령 옥도진 취임</p> <p>30일 [육 군] 제2군단 법정 개소식</p>
<b>2월</b>	<p>19일 [육 군] 육해공군 군사법원 판결집 발간</p>
<b>3월</b>	<p>2일 [육 군] 종행교 군판사반 교육자료 전달</p> <p>9일 [육 군] 국선변호 모범사례집 발간</p>
<b>4월</b>	<p>23일 [육 군] 군판사 임명장 수여식</p>
<b>5월</b>	<p>1일 [해 군] 해군본부 군사법원 제2재판부 전자법정운영담당(속기) 채용</p> <p>15일 [공 군] 공군대학 주관 비행대대장 보임전 교육(강사: 법원장)</p> <p>29일 [해 군] '20년 군사법원 주요 법령 및 최신판례집 발간</p>
<b>6월</b>	<p>4일 [공 군] 법무사관 후보생 간담회</p> <p>11일 [육 군] 육군군사법원 관할지침 개정</p> <p>11일 [공 군] 항공우주법 세미나 협조 관련 KAIST 방문</p> <p>18일 [공 군] 제20주년 법원창설 업무유공자 포상 추천</p> <p>18일 [공 군] 항공우주법학회 주관 심포지움 참석</p> <p>29일 [육 군] 초대 군사법원장 대령 서재종 전역식</p>

<p><b>7월</b></p>	<p>1일 [국방부] 창설 20주년 기념행사 및 전반기 성과분석회의  1일 [육 군] 군사법원 창설 20주년 기념식  1일 [해 군] 군사법원 창설 20주년 기념행사 실시  1일 [공 군] 제20주년 법원 창설기념 행사  16일~17일 [해 군] 2사단 보통군사법원 지도방문 및 직무감찰  28일 [공 군] 중앙보안감사 수검  29일 [공 군] 항공우주법 연구모임 간담회</p>
<p><b>8월</b></p>	<p>4일~5일 [해 군] 1함대 보통군사법원 지도방문 및 직무감찰</p>
<p><b>9월</b></p>	<p>16일 [육 군] 군사법원 파견 인원 총기 위탁관리 및 사격 실시 협조</p>
<p><b>10월</b></p>	<p>21일 [공 군] 공군대학 합동기본 정규과정 강의(강사: 법원장)  30일 [국방부] 역대 법원장 초청행사</p>
<p><b>11월</b></p>	<p>2일 [육 군] 법원서기 신규임용자 신고  4일 [공 군] 美공군 우주법 전문가 화상 강연  10일 [육 군] 재판장 매뉴얼 발간  20일 [국방부] 전군 군사법원장 회의</p>
<p><b>12월</b></p>	<p>9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지도방문(비대면)  10일 [육 군] 군사법원 업무분장 예규 개정  16일 [공 군] 연간 업무분석회의(화상)  30일 [국방부] 이희원 법무관 전역식  30일 [국방부] '20년 성과분석 및 '21년 사업계획 보고(비대면)  31일 [육 군] 법원서기 교육자료 배포</p>

# 연간 군사법원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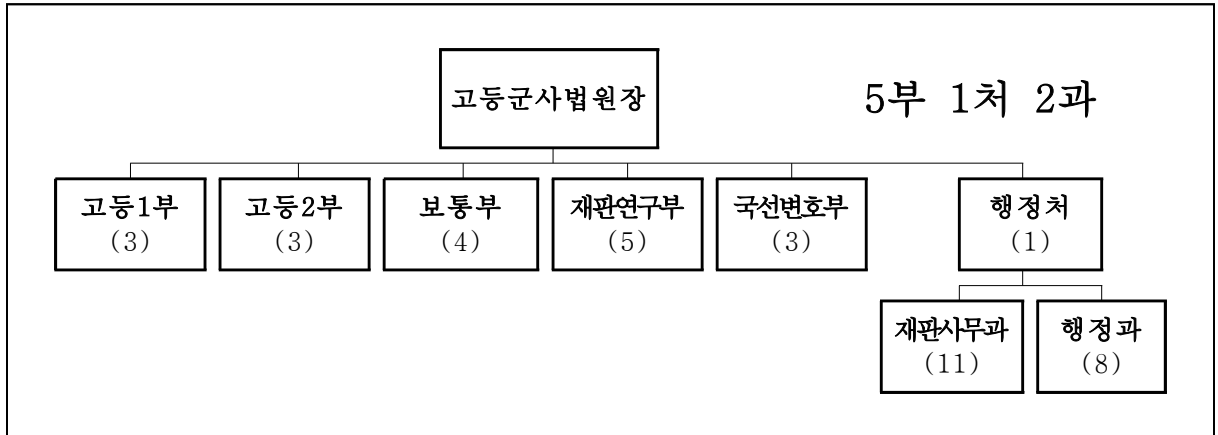
##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 연혁

<b>1948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군 과정 미 군법회의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특별/약식 군법회의(단심제 + 판결심사제도)</li> </ul> </li> <li>○ 국군조직법상 군법회의 설치 근거 마련</li> </ul>
<b>1950. 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경비법(미 군법회의 제도) 체제하 군법회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령</li> <li>- 계엄하의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령</li> </ul> </li> </ul>
<b>1954. 1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법회의 헌법적 근거 마련(제2차 헌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에 관한 상고사건 대법원 관할</li> <li>- 군법회의 구성과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함</li> </ul> </li> </ul>
<b>1962. 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법회의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심제도(보통군법회의 → 고등군법회의 → 대법원)</li> <li>- 군 특수성 반영을 위한 제도(관할관, 심판관)존치</li> <li>- 소송절차는 일반 형사소송절차 반영 : 사법기관성 강화</li> </ul> </li> </ul>
<b>1987. 1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개칭(제9차 헌법 개정)</li> <li>○ 군사법원법 제정(법무사 → 군판사)</li> </ul>
<b>1994. 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법원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군사법원 통합(국방부, 육·해·공군 → 국방부)</li> <li>- 재판부 구성(심판관, 군판사)상 군판사 비율 상향</li> <li>- 구속영장발부권: 관할관(지휘관) → 군판사</li> </ul> </li> </ul>
<b>2000. 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군사법원 창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분리</li> </ul> </li> </ul>
<b>2008. 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판중심주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 형사소송법제도에 따른 인신구속제도, 증거조사방식 등</li> </ul> </li> </ul>
<b>2016. 1. 6.</b> (2017. 7. 7.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법원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li> <li>-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li> <li>- 관할관 확인 감경권 제한</li> </ul> </li> </ul>

○ 일반현황

● 기구도



● 정원

구 분	총 계	장 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전 시	42	17	0	8	14
평 시	39	17	0	8	14

● 주요 보직자

직 책	계 급	성 명	임관기수	비고
법 원 장	육군준장	박 종 형	법무#60	군법11
고등1부장	육군대령	김 상 환	법무#66	군법14
고등2부장	해군대령	장 준 홍	해법무#23	군법15
보통부장	육군대령	이 익 원	법무#66	군법14
재판연구부장	공군중령	이 형 일	공법무#22	군법14
국선변호부장	육군소령	이 희 원	법무#83	
행정처장	3급	양 의 찬	'13년 임용	3사#19
재판사무과장	4급	이 도 선	'97년 임용	
행정과장	5급	김 진 영	'03년 임용	



○ 직원 보직현황

부서	직책	보 직 자		비 고	
		계 급	성 명		
지휘부	법원장	육군준장	박종형		
고등1부	부 장	육군대령	김상환		
	고등군판사	육군중령	이정민		
	고등군판사	공군소령	박지운		
고등2부	부 장	해군대령	장준홍		
	고등군판사	해군중령	김혜리		
	고등군판사	육군소령	정초아		
보통부	부 장	육군대령	이익원		
	보통군판사	해군소령	조은영		
	보통군판사	공군소령	신소열		
	영장전담군판사	육군소령	이민화		
재판연구부	부 장	공군중령	이형일		
	재판연구관	육군소령	추대성		
	외국법령연구관	육군중위	이상찬		
	법원조사관	6급	양홍승		
	법원조사관	-	-		
국선연구부	부 장	육군소령	이희원		
	국선변호장교	해군대위	곽예신		
	국선변호장교	공군대위	김재환		
행정처	재판사무과	행정처장	3급	양의찬	
		재판사무과장	4급	이도선	
		재판사무담당	6급	김교성	
		군사법원서기	해군원사	김찬형	
		군사법원서기	9급	이윤희	
		군사법원서기	육군상사	김화연	
		군사법원서기	공군상사	박명균	
		군사법원서기	육군상사	강은정	
		사건접수담당	육군중사	최재희	
		영장담당서기	해군중사(진)	김한서	
		속기사	8급	이영하	
		법무통합체계담당	9급	유은옥	
	행정과	행정과장	5급	김진영	
		법무행정담당	7급	홍선미	
		인사담당	9급	허은혜	
		재정담당	육군원사(진)	손병택	
		군수/보급담당	공군중사	한진의	
		법령자료담당	7급	백숙현	
지휘부행정담당	7급	김유라			
전산정보담당	9급	전홍길			

## ○ 연간 주요 추진실적

### • 고등부

#### -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한 노력

- 피고인 전역 등으로 '이송' 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피고인 주소지 관할 민간법원으로 이송
-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정기기일 외 증인신문 등을 위한 추가기일 지정
- 코로나 19로 인한 휴정기간(16주)에도 불구하고 집중심리제, 선고기간 단축 등 노력
-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고 군검사가 원활하게 공판 유지를 할 수 있는 재판 진행

#### - '항소심판결 파기 관리'를 통해 군사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 대법원에 상고되어 판결을 받은 사건 총 112명 중 파기 사건은 4건으로 파기율 3.5%
- 대법원 파기이유 및 분기별 주요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각군 군사법원에 공유

#### - '재판만족도 평가'를 통한 소송관계인과 소통 활성화

- 피고인, 군검사, 변호인, 증인, 피해자, 방청객의 의견을 경청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재판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
-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설문 항목 추가반영 등 설문내용 등을 보완하여 재판만족도 평가 실시

## ● 보통부

### - 군사재판의 신속성 제고 및 양형기준 준수 노력

군사재판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집중심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3항) 보장을 위한 '구공판 사건 150일 이내 사건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양형기준 준수를 통해 군사재판의 신뢰성 및 신속성을 제고

#### ① '집중심리제'의 정착 노력

-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하여 다툼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기일 간격을 짧게 하여 집중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극명히 다투는 경우 많은 증인이 신청되는데 이러한 경우 집중적인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짧은 기간에 연속한 증인신문으로 이전 기일에 심리한 내용에 대한 기억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실제적 사실관계 발견에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있음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기소하는 방산비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수수 등 복잡한 사건을 담당하므로,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인 증인신문 및 기일지정으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도모함

#### ② 구공판사건 150일 이내 처리

- 헌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피고인의 불안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기소된 이후 150일 이내 사건 처리를 목표로 하였고, 이를 달성하고자 30일 이내 첫 기일 지정 및 집중심리제를 통해 신속하고도 정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였음
- 코로나 19로 인한 증인 소환 불응, 휴정기(16주) 등 재판 지연 사유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2020년 선고한 사건 중 약 37%를 기한 내 처리하였음

#### ③ 양형기준 준수 노력

- 군사법원법은 형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 양형기준을 존중할 것을 정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준수 하여 형의 편차를 줄이는 것이 군사법원의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임
- 2020년 선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건의 경우 모두 양형기준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음

## ● 재판연구부

### - 균형사법 양형기준 정립

- 불합리한 양형편차 시정을 통한 군사재판의 신뢰 제고 필요
-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軍전문위원으로 정식 위촉되어 활동
- 신설된 균형법상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양형기준은 '19. 7. 1.부터,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은 '20. 7. 1.부터 시행

### -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운영 추진

- 군사법원의 성범죄 재판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필요
- 고등군사법원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설치 검토 보고('20. 11. 10.)
- 전군 군사법원장 및 선임 군판사 간담회에서 각 군 군사법원장의 의견 청취 및 결과보고('20. 11. 20./'20. 12. 2.)
- 군사법원법,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검찰단의 조직 및 관할에 관한 훈령,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하여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설치 근거 규정 마련 예정
- 고등군사법원에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고등3부) 설치 추진

### - 군사법원 관련 법령 및 예규 제·개정

- 법원조사관 제도 관련 군사법원 재판사무에 관한 훈령 개정('20. 7. 2.)
- 기타 각종 규정 개정·폐지 등 협조

### - 예하 부대 보통군사법원 지도방문

- 각 군 보통군사법원과의 원활한 업무협조·인적교류 강화 및 군사법원 운영 관련 개선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
- 코로나19 사태로 축소·비대면 지도방문 실시
- 육군 군사법원 재판2부(춘천) 대상 실시 및 군사법제도 개선 관련 의견 수렴

## - 정기적 판례세미나 실시

- 고등군사법원 자체 판례세미나 활동을 통한 군판사 상호 의견 교류 및 재판 전문성 강화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관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연구, 전자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판례 연구, 최신 형사판례 연구('20. 1. ~ 2.), 군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검토, 상관모욕 무죄판결 분석, 군형법 제60조의6 해석 및 적용범위 검토 등

## - 전군 군사법원장 및 선임 군판사 간담회

- 전군 군사법원장 회의를 통해 군사법원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중추적 재판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 군사법원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설치, 신설된 군사법원 조사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 실시

## - 전군 군판사 직무교육

- 전군 군판사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소통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전군 군판사 직무교육 연기('20. 6.)
- 코로나19로 인해 사법연수원 측 요청으로 전군 군판사 직무교육 취소('20. 9.)
- '20 군판사 직무교육 책자 발간 및 각 군 군사법원에 배포('20. 10.)

## - 국회 업무

- 법사위 및 국방위 등 국회 각종 질의응답 자료 회신
- 각 의원실 연락 및 국회 출장 업무 수행 등

## ● 국선변호부

### - 민간 국선변호인 명부 운영으로 피고인의 선택권 제고

-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국선변호인 추천 의뢰하여 신청자 총 280명 중 최종 선정된 70명 (군법무관 출신 14명, 사법시험 28명, 변호사시험 28명)과 국선변호부 소속 군법무관 3명의 인적사항 및 경력을 인터넷 및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공개
-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 시 해당 명부를 함께 제공하여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직권으로 지정
- 다양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에 국선변호인 명부 갱신

### - 국선변호인의 충실한 변호 보장

- 재판부 평가(50점) 및 피고인 만족도 평가(50점)를 고려하여 당해 연도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과 다음 연도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 갱신 과정에 반영
- 재판부 평가 및 피고인 만족도 평가를 통하여 국선변호인의 충실한 국선변호를 유도하고 부적격 국선변호인은 명부 갱신 시 배제
- 우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국방부장관 감사장과 격려금 수여(연 1회)
  - \* 우수 국선변호인에게 자궁심 고취 : '20년 우수 국선변호인(변호사 고혜정, 간영범)
  - \* 격려금 액수 확대(30만원 → 50만원)

### - 구속피고인 화상접견제도 구축

- 피고인 접견 편의를 위하여 민간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도 국군교도소에 수용된 피고인 접견을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의 화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함
- 기존에는 국선변호장교만 국군교도소에 수용된 피고인과 화상접견이 가능하였으나, 민간 국선변호인까지로 대상을 확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실질적 보장함
-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화상접견 내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군 수용자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소요 제출('20년 11월)
- '21. 2. 15.부터 실시하며, 화상접견신청서 및 안내자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 국군교도소 수용자 정기 면담 실시

- 매주 2회(화, 목) 국군교도소 화상 법률상담 및 매월 1회 정기 방문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에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군사법원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
- 판결 주요 내용과 의미, 보석, 상소 여부 등 관련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
-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군교도소 직접 방문이 제한되는 경우 고등군사법원 화상시설 장비로 국군교도소 수용자들 대상으로 화상 법률상담 적극 실시

## - 법률상담 강화

-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인트라넷, 인터넷, 전화, 방문 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병 인권보호에 기여
-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속한 상담 실시

● 행정처

- 정적인 회의문화 개선을 위한 그룹별 소통간담회 시행

• 1차 그룹별 간담회

일 정	구 분	주요내용
1. 17.(금)	여직원	청사 보수 소요 반영 추진(여자 샤워실)
1. 22.(수)	남직원	청사 보수 소요 반영 추진(남자 탈의실 및 휴게실)
1. 29.(수)	법원서기	군사법정보시스템 ISP 사업 구축 담당자 논의
2. 05.(수)	군판사	코로나19로 인한 재판 방청 제한 관련 논의
2. 07.(금)	연구부·변호부	「군 수용자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관련 논의

• 2차 실무자 간담회(부서·직책·신분별 상이하게 4명씩 편성)

일 정	주요내용
5. 22.(금)	당직근무 개선 관련 논의(금, 토 익일 0.5일 휴식 보장)
5. 27.(수)	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6. 03.(수)	출·퇴근 및 전투체육 시간 점검 강화
6. 12.(금)	전자법정(소법정) 장비 수리 및 교체 관련 사항
6. 17.(수)	청사 보수 소요 반영 추진(체력단련장)
6. 23.(화)	법원조사관 신설에 따른 업무분장 논의

• 3차 재판부 간담회

일 정	구 분	주요내용
5. 29.(금)	재판부·법원서기·속기사 간담회	사건 접수 및 재판 진행에 있어서 원활한 업무처리 방안
6. 16.(수)	재판부·과학수사연구소 간담회	디지털 증거수집 및 탐색 과정 시연, 최면수사·거짓말탐지기 조사과정 참관



## - 군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점검활동 강화

- 출·퇴근 및 보안일일결산 점검 : 매월
- 사건 재배당에 따른 공정한 재판 실시 여부 점검 : 반기
- 외부강의 등 규정 준수실태 점검 : 반기
- 예산 사용현황 점검 : 반기
  - \* 목적외 사용, 시간외사용, 휴일사용 등
- 취약분야 시기별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수시
  - \* 연말연시, 선거 시, 명절 기간 전후 이행실태 점검
- 개인 및 부서별 보안점검 및 보안평가 : 반기
- 청사 시설보안 실태 점검
  - \* 지문인식기, 출입문 시건장치, 지하주차장 셔터 점검 등
- 비밀 소유 및 관리현황 점검 : 매월

## - 민원인 및 법원 직원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

- 검찰단 이전에 따른 청사 현관 법원 마크 및 보통군사법원 동판 설치
- 국기계양대 노후기 교체, 호송차 출입구 모터 교체
- 지하주차장 출입구 아스콘 보강 및 배수로 설치를 통한 청사 내 빗물 역류 방지
- 샤워장, 당직실 정비를 통한 근무여건 개선
  - \* 청사 재배치에 따른 추가 시설 추진(강당, 역사관, 접견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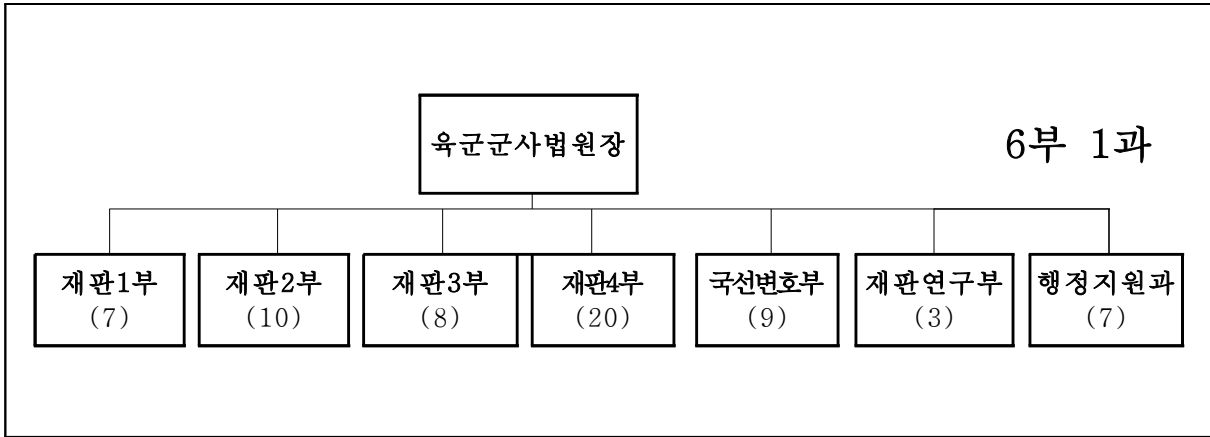
## - 고등군사법원 실정에 맞도록 예규 개정 추진

- 위기조치예규 : 비상소집 시 비상연락망 체계도에 따른 전파 근거 명시, 재난대책 본부 운영 신설(재난대책본부 운영사항, 소방대 편성 및 화재발생 시 행동절차 반영)
- 행정사무예규 : 계획 표창에 보통군사법원 지도방문 추가, 회의 및 예산관련 용어 변경, 법령자료실 운영(희망도서 신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신설, 당직 근무시간 및 당직신고 절차 변경, 법원 홈페이지 메뉴별 운영책임자 지정

## □ 육군 군사법원

### ○ 일반현황

#### ● 기구도



#### ● 정원

구 분	총 계	장 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병
전 시	164	83	1	40	21	19
평 시	66	34	1	13	18	

#### ● 주요 보직자

직 책	계 급	성 명	임관기수	비고
법 원 장	대령	서성훈	법무65기	
재판1부장	중령	문상원	법무76기	
재판2부장	중령	김영오	법무62기	
재판3부장	중령	박지근	법무67기	
재판4부장	대령	황민제	법무60기	
국선변호부장	대위	김갑현	법무93기	
재판연구부장	소령	오상열	법무77기	
행정지원과장	4급	유재열	공채86기	

○ 직원 보직현황

● 장교 및 행정지원과

부서	직 책	보 직 자		비고
		계 급	성 명	
지휘부	법원장	대령	서성훈	
재판1부	부 장	중령	문상원	
	군판사	중령(진)	소재필	
	군판사	소령	박한수	
	군판사	소령	조인혜	
재판2부	부 장	중령	김영오	
	군판사	소령	양성화	
	군판사	소령	채선이	
	군판사	소령	권민상	
재판3부	부 장	중령	박지근	
	군판사	소령	이동연	
	군판사	소령	김제훈	
	군판사	소령	김동영	
재판4부	부 장	대령	황민제	
	군판사	중령(진)	김애령	
	군판사	중령	김형동	
	군판사	소령	이준철	
	군판사	소령	김태용	
	군판사	중령	윤현정	
	군판사	소령	신원진	
	군판사	소령	서지현	
	군판사	중령(진)	김종권	
	군판사	소령	석용식	
국선변호부	부 장	대위	김갑현	
	국선변호장교	중위	이평화	
	국선변호장교	대위	김태룡	
	국선변호장교	대위	이정현	
	국선변호장교	대위	신용섭	
	국선변호장교	중위	손주영	
	국선변호장교	중위	이세웅	
	국선변호장교	대위(진)	이재현	
	국선변호장교	대위	오정환	
재판연구부	부 장	소령	오상열	
	재판연구담당	5급	공석	
	재판연구담당	5급	공석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4급	유재열	
	재정담당	6급	서은희	
	행정/통계담당	7급	박지은	
	전자법정운용담당	8급	이라리	

• 법원서기 및 속기사

부서	직책	보직자		비고
		계급	성명	
재판1부	법원서기	준위	오은화	
	전자법정운용담당	8급	이라리	
재판2부	법원서기	상사	장승환	
	법원서기	8급	권윤주	
	법원서기	중사	안승률	
	법원서기	하사	최규진	
	법원서기	상사	백혁	
	전자법정운용담당	8급	권윤주	11.2.부 법원서기 임용
재판3부	법원서기	중사	류지성	
	법원서기	중사(진)	성은빈	
	법원서기	하사	이찬형	
	전자법정운용담당	8급	우은채	
재판4부	법원서기	상사	이지원	
	법원서기	중사	사혜진	
	법원서기	9급	이찬희	
	법원서기	중사	윤준필	
	법원서기	중사	엄상진	
	법원서기	중사	남상욱	
	법원서기	중사	박경록	
	법원서기	상사	박혜진	
	법원서기	중사	위보라	
	전자법정운용담당	8급	김영일	11.2.부 징계인권서기 임용

## ○ 연간 주요 추진실적

### ● 군판사 임명

군판사 임명식은 2020년 4월 23일 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되었다. 이전에 임명된 군판사를 제외하고 총 15명의 군판사가 새롭게 임명되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육본 군판사 3명만 신고하였으며, 나머지 12명의 군판사는 장성급 부대장에게 위임하여 임명식이 실시되었다. 2019년과 동일하게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을 비롯하여 각 부의 재판부장들은 중령급으로 임명하였으며 추가적으로 3군사 재판부장은 대령으로 임명하여 상급 부대 군사법원의 무게감을 더하였다. 또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판사는 전원 영관급 법무장교로 임명하여 군사법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 ● 재판 관련 법원 구성원 직무교육

#### - 군판사 임명 전 종합행정학교 교육

2020년 역시 육·해·공군 군판사 보직 예정자 및 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육군 주관 하에 종합행정학교에서 군사재판실무반 교육을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예년과 같은 방식의 직무교육은 불가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군판사 임명 전 실시하는 종합행정학교 군사재판 실무반 교육을 대체하여 '군사재판 실무반' 교재를 각 군판사들에게 배부하였다. 해당 교재는 기존 군판사들의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 나오는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판결문 작성, 성범죄재판실무, 법원실무제요, 소송지휘, 양형 기준 적용, 영장실무 등을 그 내용으로 담았다. 이에 더하여 민간변호사와 군검사의 입장에서 군사법원 재판에 바라는 점 또한 내용으로 담았다. 해당 교재를 통하여 군판사들의 재판 업무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재판에서 다양한 관점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 우수 국선담당 민간변호사, 군법무관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수여

연례적으로 위 표창 및 감사장은 국선변호장교들에 대한 직무교육시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위 업무가 이루어졌다. 연 2회 실시되던 민간변호사에 대한 감사장은 연 1회 실시되었으며, 관련하여 유선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우편으로 감사장 및 소정의 선물을 보내는 것으로 하였다.

#### - 군사법원 법원서기·속기사 세미나

군사법원서기 직무교육을 대체하여 '2020년 법원서기 교육자료 모음'을 배포하였다. 해당 교육자료에는 의견서·변론요지서 등의 접수 및 편철, 이송사건의 처리, 약식명령 이후에 피고인이 전역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의 처리, 그리고 항소심으로 기록송부시 주의사항에 이르기까지 형사재판 절차 전반에 걸쳐 군사법원서기에게 필요한 직무지식을 그 내용으로 하였으며 일선 군사법원서기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충실하게 담아내었다.

## ● 군사법원 소통강화

### - 간소화한 Workshop과 지도방문

1. 30. 강원지역 군사법원 업무의 중심이 될 2군단 법정이 신축되었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개소식에 대부분의 군사법원 인원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구성원의 소통을 위한 행사도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군사법원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군사법원은 이를 위해 군판사 임명식부터 간소화 하여 진행했으며, 한해 동안의 지도방문을 하반기로 미뤄오다가 결국 과감히 취소하였고, workshop역시 육군본부 내에서 계룡대 근무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 ● 군사법원 관련 제도 개선

### - 「군사법원 업무분장 예규」 개정

이번 예규의 개정은 재판연구부의 강화가 주된 목적이었다. 현재 육군 군사법원은 재판연구담당을 5급 군무원으로 2명 선발할 예정이며,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재판연구담당 군무원이 충원될 경우, 실질적인 군사법원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외국의 판례 및 사법제도 연구, 민간법원과 군사법원의 비교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그 근거를 위 예규에 마련하였다.

### - 「전시 군사법원 관할 지침」 제정

2017년 폐지되었던 사단급 군사법원이 전시에 필요한 경우 설치되게 된다. 이 경우 인적 물적 자원의 구성 및 유지, 지원 등의 문제가 훈련상황 간 파악되었으며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 사단 군사법원을 고려한 관할 지침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전시 상황변화에 따라 소속군단이 변경되는 사단이 있으며, 법무실이 없는 동원사단에도 군사법원이 설치됨을 파악하게 되었다.

### - 군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원활한 군사법원 운영을 위한 강조사항 전파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역동적으로 변화하였다.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확진자는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대구경북지역 확산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주춤하던 그 기세는 수도권에 무서운 위력으로 퍼져나가기도 하였다. 수많은 외부인이 출입하는 재판의 특성상 군사법원은 감염의 위험도가 지극히 높으며, 반면 군부대의 폐쇄성은 급격한 확산을 우려하게 하는 요인이다. 대법원 역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차례 휴정 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육군 군사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7차례에 걸쳐 군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원활한 군사법원 운영을 위한 강조사항을 전파하였다.

## ● 연구 및 발간 활동

### - 「재판장 매뉴얼」 발간

2020. 11월 육군본부 군사법원 조인혜 군판사가 수많은 전문서적을 참고하여 「재판장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재판장 매뉴얼」은 군사법원법과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등 각종 법률과 형사재판 실무 등을 참고하여 재판장 업무 시 언제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발간한 것으로, 초임 군판사 뿐만 아니라 타 보직을 거친 후 오랜만에 군판사 임무를 수행하는 중견 법무관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업무 참고서적이다.

### - 「육·해·공군 군사법원 판결집」 발간

육·해·공군 군사법원은 군판사를 비롯한 법무병과원 및 군사법 관련자들이 재판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9년 한 해 동안 선고한 사건 중 주요 판결을 엄선하여 2020년 2월 「2019년 육·해·공군 군사법원 판결집」을 발간하였다. 육군 군사법원 판결이 이 판결집의 대부분의 내용을 구성하였는데, 특히 성폭력범죄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분야에 중요 판결이 많았고, 판결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을 존중한 점이 돋보인다. 이 책은 다수의 최신판결을 수록하여 군사법제도의 이해를 돕는데 한층 더 기여를 하고 있다.

### - 「국선변호 모범사례집」 발간

국선변호 모범사례집은 2019년 한 해 동안 국선변호장교들이 실제 담당했던 사건에 대하여, 변론 방향의 설정부터 실제 진행되었던 변론의 내용과 판결의 결과까지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책자로서, 2020년 3월에 발간되었다.

이 책에서는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뿐만 아니라, 증거채택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은 사건까지 예하부대 국선변호장교들이 직접 작성한 경험담을 엮어낸 점이 특징이다.

### - 주요 판례연구

중요·최신 판례에 대한 연구를 2020년에도 지속하여 통하여 군판사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판례연구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중요판례를 재판연구부에서 선정하여 요약·편집하고 일부 설명과 분석을 추가한 것으로서, 법률가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최신 중요 판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연구 자료는 육군 군사법원 홈페이지 및 JAGC-NET을 통하여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연구는 형사사건과 군 형사사건 전반을 다루었으며, 특히 판단이 모호한 성폭력범죄나 무고죄의 판단기준, 사이버 성범죄의 최신경향 등을 분석·제시하여 군판사의 업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 재판여건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2018년에 2군단 법원 신축예산을 최종 반영(29억원), 2018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에 완공된 2군단 법원은 보안측정 등 절차를 마치고 2020년 1월 30일 개원식 후 명실상부 독립된 군사법원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수도군단 법무부 및 법원신축은 2019년 5월 국방부 검토결과 예산 미반영으로 무산됨에 따라 수도권단에서 舊군사경찰단 건물을 대보수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여 예산 반영(9.11 억원)하여 20년 1월부터 설계업체 선정을 거쳐 7월경 대보수 착공으로 20년 11월 27일 준공 검사 완료 후 12월 3일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였다.

육·해·공군 군사법원 신축은 '20~'24 국방중기계획에 '23년도에 반영하였던 것을 연도를 조정하여 '21년도에 조기 추진하는 것으로 '21~'25 국방중기계획에 요구 및 2021년 예산편성요구안을 작성 제출하였으나 향후 군사법 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시 변화될 육·해·공군군사법원 조직 변화와 예산안 규모 재검토 및 기 확보된 육·해·공군군사법원 신축부지가 인사사령부 인재선발센터 신축건물과 인접하여 위치함에 따른 조정 필요가 있어 2023년에 면밀한 사업 재검토를 통해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3군단 법원 증축은 '21~'25 국방중기계획 및 '22~'26 국방중기계획에 현재 '25년도에 반영되어 있으며 향후 연도 조정 요구를 협조하여 원활한 재판 및 법원 운영을 위한 예산획득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 재판지원 차량 확보 및 법정시설 개선운동

2020년 4월에 승합차 1대와 승용차 3대를 확보하여 재판4부(6군단, 7군단, 수도권단, 특전사)에 보급 지원하였으며, 해당 관할부대에서 직접 관리 및 정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 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였다. 향후에도 편제 대비 부족한 재판지원 차량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확보 보급할 예정이다.

### - 비품구입 및 법복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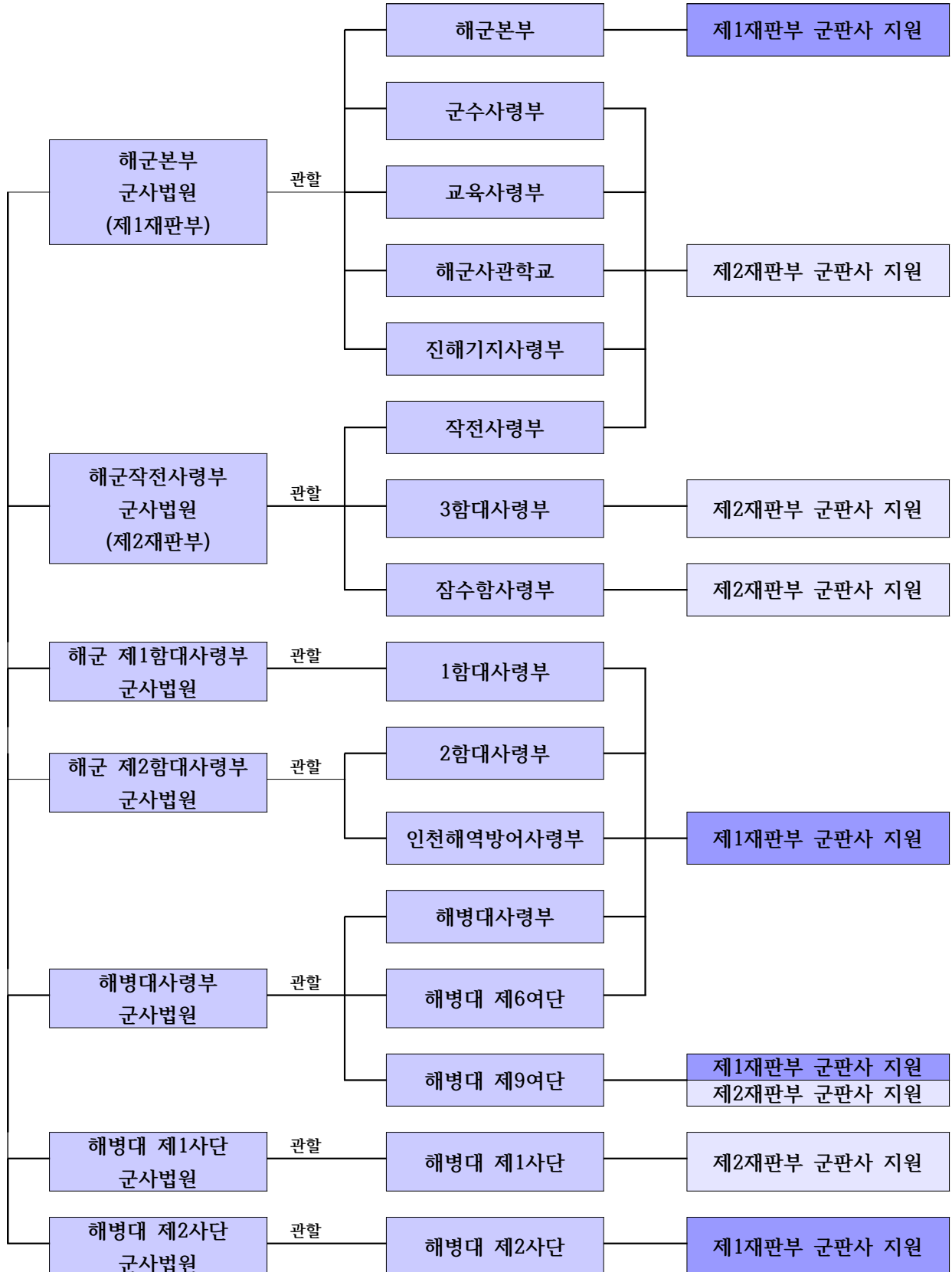
부대비품비 7,330만원 예산을 배정받아 4개 법원에 실물화상기, 6개 법원에 고속스캐너, '19년에 보급한 공기청정기에 대한 필터, 코로나 예방책으로 체온계 및 아크릴칸막이를 구매하여 보급하였으며, 4개 법원에 피해자 변호인석을 설치하였고, 노후화된 비품 교체로 1군단 1,612만원, 6군단 240만원, 7군단, 569만원, 지작사 1,060만원, 교육사 1,000만원, 특전사 60만원, 31/53사단 159만원을 재배정하였고, 2군단 신축법정에 비품 추가를 위해 579만원을 재배정하였다. 피복비 870여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군판사 7벌, 군검사 21벌의 법복을(단가 230,000원) 6월 중에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법복과 함께 착용하는 정복 와이셔츠를 일괄 구매하여 군판사 및 법원서기, 군검사에게 각각 보급하였다. 민간법원 판사 넥타이와 같은 디자인으로 육군군사법원 마크를 삽입하여 제작한 넥타이를 군판사에게 보급하였다.



## □ 해군 군사법원

### ○ 일반현황

#### • 기구도



○ 일반현황

부 대 명		직 책	보 직 자		비 고
			계 급	성 명	
해 군 본 부	제1재판부	군사법원장	대령	옥도진	
		제1재판담당1	소령	장동호	
		제1재판담당2	소령	김다미	
		해군본부법원서기	원사	정원덕	
		해군본부법원서기	하사	박진배	
		순회재판지원서기2	상사	하진홍	
		전자법정운영담당(속기)	9급	박민선	
	국선변호부	국선변호부장	대위	박지호	
	제2재판부	제2재판부장	중령	하성호	
		제2재판담당1	중령	한재호	
		제2재판담당2	소령	최은성	
		순회재판 지원서기1	상사	정영미	
		순회재판 지원서기2	중사	양승진	
		전자법정운영담당(속기)	9급	이수현	
	행정과	행정과장	소령	김다미	겸직
		행정담당	중사	이재권	
	작 전 사	심판부	법원서기	상사	이영주
국선변호부		국선변호부장	대위	최영권	
1합대		법원서기	상사(진)	윤지현	
2합대		법원서기	상사	이삼선	
해병대사		법원서기	상사(진)	정혜진	
1사단		법원서기	중사	김중수	
2사단		법원서기	상사	정우석	

## ○ 연간 주요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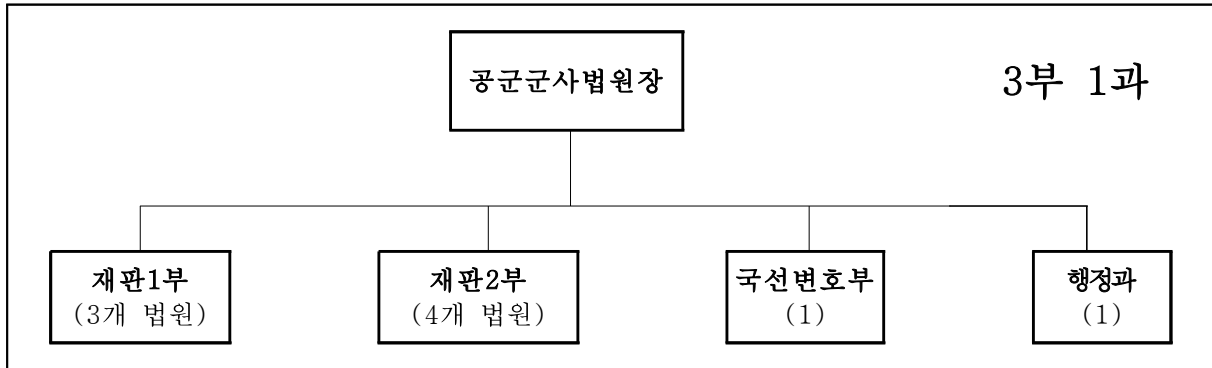
- **해군본부 군사법원 제2재판부 전자법정운영담당(속기) 채용('20. 5. 1.)**
  - 대상 : 전자법정운영담당(다군) 9급(임기제) 1명
  - 임무 : 제2재판부 담당 재판에 대한 전자법정 운영 및 속기 업무
- **'20년 군사법원 주요 법령 및 최신판례집 발간('20. 5.29.)**
  - 주요 군사법원 및 대법원 최신 판례 수록
  - 개정 형사소송법 및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수록
- **군사법원 창설 20주년 기념행사 실시('20. 7. 1.)**
  - 現 상황 고려 소규모 행사 진행(본부지구 법무병과 내무 행사로 실시)
  - 집단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사 장소(군사법정) 방역조치
- **진해기지사령부 군사법정 전자법정화 완료('20.11. 3.)**
  - 신축법정 內 신규 영상녹화장비 도입
  - 도입장비 : 실물 화상기, 영상녹화용 PC, 증거 재생용 노트북 등
- **'20년 군사재판실무서(골드북) 발간('20.12.21.)**
  - 관련 법령에 의거한 실무처리절차 개선과 신설법령 및 최신 판례 추가
  -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등 개정내용 추가 및 내용 보강 등
- **형사절차에서의 각종 조력 제도 적극 시행**

구분	관련근거	내용	담당자 요구자격	개선 필요
형사피고인 국선변호인 지원	군사법원법 제62조	민간형사재판과 달리 모든 군사 재판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 지원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 있는 장교	국선변호담당 공석 해소 필요
전담 국선변호인 지정	해군 군사법원 업무 규정 제43조의 2	군사작전의 특수성이 쟁점이 되는 작전법위반 사건, 언론보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참모 총장 하명 중요사건 등 전담 국선변호인 지정	변호사 자격 있는 장교	징계사건 확대 검토
특별변호인 지정	군사법원법 제60조	특별한 사정(군의 특수성,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사건 등)이 있는 경우 변호사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지정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는 군인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성폭법 및 아청법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성폭력범죄등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 변호사 선정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 있는 장교	-
증인지원관 지원	위 법률 및 위 훈령 제27조	각급 군사법원의 증인지원실에서 증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언, 상담 등)	법무병과 장교 및 준·부사관	증인지원관 직무교육 강화

## □ 공군 군사법원

### ○ 일반현황

#### • 기구도



### ○ 직원 보직현황

부서	직책	현보직		비고
		계(직)급	성명	
지휘부	군사법원장	공군대령	송가준	
재판1부	재판1부장(겸직)	공군대령	송가준	
	보통법원판사	공군소령	서대봉	
	보통법원판사	공군소령	권미정	
	재판연구관	공석		
	단독재판사무담당	공군상사	이정길	
	합의재판사무담당	4급	김종만	
재판2부	재판2부장	공군대령	권상진	
	보통법원판사	공군소령	이용찬	
	보통법원판사	공군소령	김현준	
	합의재판사무담당	9급	이여진	
국선변호부	국선변호부장	공군대위(진)	호성식	
	국선변호담당	공군대위(진)	정의선	
		공군중위	손승우	
	국선변호사무담당	공군원사	이현상	
행정과	행정과장	공군준위	염규중	
	행정담당	8급	김일환	
	속기사	8급	이기문	
	속기사	8급	염혜정	

## ○ 연간 주요 추진실적

### ● 재판부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 5. 고등군사법원과 연계하여 사법연수원에서 진행예정이던 군판사 실무교육은 취소되었으나, 최신 동향이 수록된 교육자료의 제공이 이루어져 이를 참고 활용하여 내부 토의 및 연구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판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성 있는 재판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연구 및 교육 강화
- 법원서기 업무 전문성 강화
  - 전군 증인지원관 교육(1.6. ~ 1. 10.), 법원정보체계 및 비실명화 작업 교육

### ● 장병 법률상담 등

- 법률상담
  - 장병(인트라넷, 전화, 방문) 법률상담 약 121건
  - 시민(계룡시청 격주 2시간) 법률상담 약 35건

### ●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 개선

-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민간 국선변호인 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선택권 및 접근권을 한층 더 보장하기 위하여 각 권역별로 국선변호인을 새로이 선정함으로써 민간 국선변호인 명부를 현격히 개선

### ● 법률상담 사례집 발간 작업 착수

- 법률상담을 통한 사후적 법률 서비스 제공과는 별개로 공군 장병들의 사전적 법률지식 배양을 위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 군 기강 확립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 등을 주제로 선정하여 책자 발간 준비 작업에 착수

### ● 항공우주법 연구 모임 및 미 공군 우주법 전문가 화상 강연

- 20. 7. 2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영진 박사를 초청하여 항공우주법 세미나 관련 학술교류 및 토의를 실시하고, 11. 4. 미 공군 우주법 전문가를 초청하여 미 우주군 조직, 공군과의 관계 및 법무기능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 강연 실시

# 2020년 사건 통계현황

## ◆ 일러두기(대법원 사법연감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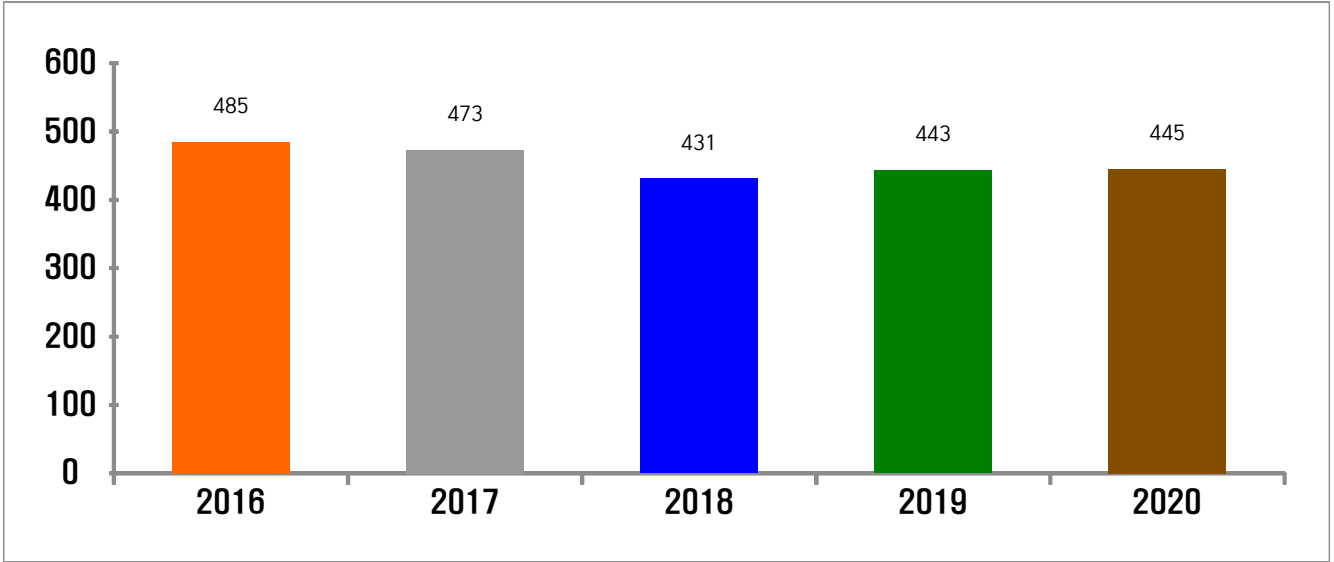
- 사건은 인원수(명)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접수"는 해당 연도에 새로이 접수된 사건을 의미함
- "처리"는 이월 사건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에 처리한 사건을 의미함
  - \* 단, 육군의 경우 자체 사건통계시스템상 해당 연도 접수사건 기준으로 작성됨
- 약식사건 처분별 처리결과에서 '기타'는 공판절차회부와 이송만 기재하고, 정식재판청구는 벌금에 기재함
- 경합사건의 죄명은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명만으로 기재함
-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형으로 기재함
- 기소죄명과 인정죄명이 다를 경우 접수에는 기소죄명을, 처리에는 인정죄명을 기준으로 각각 기재함
- 신분별 현황에서 '생도'는 민간인에 기재함
- 표 또는 도표 중 "기타"는 구분된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건수를 나타냄
-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는 약식사건을 포함하여 기재함



고등군사법원

## □ 고등군사법원

### 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접수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명	485	473	431	443	445

#### ○ 분석

- 2020년 전년 대비 항소사건 접수 유사

### 2. 2020년 항소사건 군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명 (비율)	445 (100)	24 (5.4)	323 (72.6)	63 (14.2)	35 (7.9)

#### 2-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군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277 (100)	154 (7.0)	1,710 (76.8)	235 (9.0)	178 (7.2)
2016년	명 (비율)	485 (100)	31 (6.4)	369 (76.1)	47 (9.7)	38 (7.8)
2017년	명 (비율)	473 (100)	36 (7.6)	357 (75.5)	56 (11.8)	24 (5.1)
2018년	명 (비율)	431 (100)	29 (6.7)	324 (75.2)	29 (6.7)	49 (11.4)
2019년	명 (비율)	443 (100)	34 (7.7)	337 (76.1)	40 (9.0)	32 (7.2)
2020년	명 (비율)	445 (100)	24 (5.4)	323 (72.6)	63 (14.2)	35 (7.9)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항소사건 접수 중 육군 76.8%, 해군 9%, 공군 7.2%, 국방부 7%
- 2020년 육군 72.6%, 해군 14.2%, 공군 7.9%, 국방부 5.4%
- 2020년 전년 대비 해군 사건 증가, 국방부 및 육군 사건 소폭 감소, 공군 사건 유사



### 3. 2020년 항소사건 항소인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445 (100)	157 (35.3)	139 (31.2)	149 (33.5)

#### 3-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항소인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277 (100)	912 (43.1)	623 (25.3)	742 (31.6)
2016년	명 (비율)	485 (100)	204 (42.1)	121 (24.9)	160 (33)
2017년	명 (비율)	473 (100)	219 (46.3)	115 (24.3)	139 (29.4)
2018년	명 (비율)	431 (100)	165 (38.3)	120 (27.8)	146 (33.9)
2019년	명 (비율)	443 (100)	167 (37.7)	128 (28.9)	148 (33.4)
2020년	명 (비율)	445 (100)	157 (35.3)	139 (31.2)	149 (33.5)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피고인 항소 43.1%, 군검사 항소 25.3%, 쌍방 항소 31.6%
- 연도별 분석결과 피고인의 항소율 감소, 군검사의 항소율 증가 추세
- 2020년 항소사건 중 피고인 항소 35.3%, 군검사 항소 31.2%, 쌍방 항소 33.5%
- 2020년 전년 대비 피고인 항소율 감소, 군검사 항소율 증가, 쌍방 항소율 유사

### 4. 2020년 항소사건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445 (100)	102 (22.9)	151 (33.9)	170 (38.2)	15 (3.4)	7 (1.6)

#### 4-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278 (100)	465 (19.2)	694 (28.0)	997 (47.6)	92 (3.8)	30 (1.5)
2016년	명 (비율)	485 (100)	87 (17.9)	132 (27.2)	238 (49.1)	17 (3.5)	11 (2.3)
2017년	명 (비율)	473 (100)	99 (20.9)	114 (24.1)	238 (50.3)	20 (4.2)	2 (0.4)
2018년	명 (비율)	431 (100)	90 (20.9)	147 (34.1)	174 (40.4)	16 (3.7)	4 (0.9)
2019년	명 (비율)	444 (100)	87 (19.4)	150 (33.9)	177 (40.0)	24 (5.4)	6 (1.4)
2020년	명 (비율)	445 (100)	102 (22.9)	151 (33.9)	170 (38.2)	15 (3.4)	7 (1.6)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병 47.6%, 준·부사관 28%, 장교 19.2%, 군무원 3.8%
- 연도별 분석결과 장교 사건 증가, 병 사건 감소 추세
- 2020년 접수 중 병 38.2%, 준·부사관 33.9%, 장교 22.9%, 군무원 3.4%
- 2020년 전년 대비 군무원 및 병 사건 감소, 장교 사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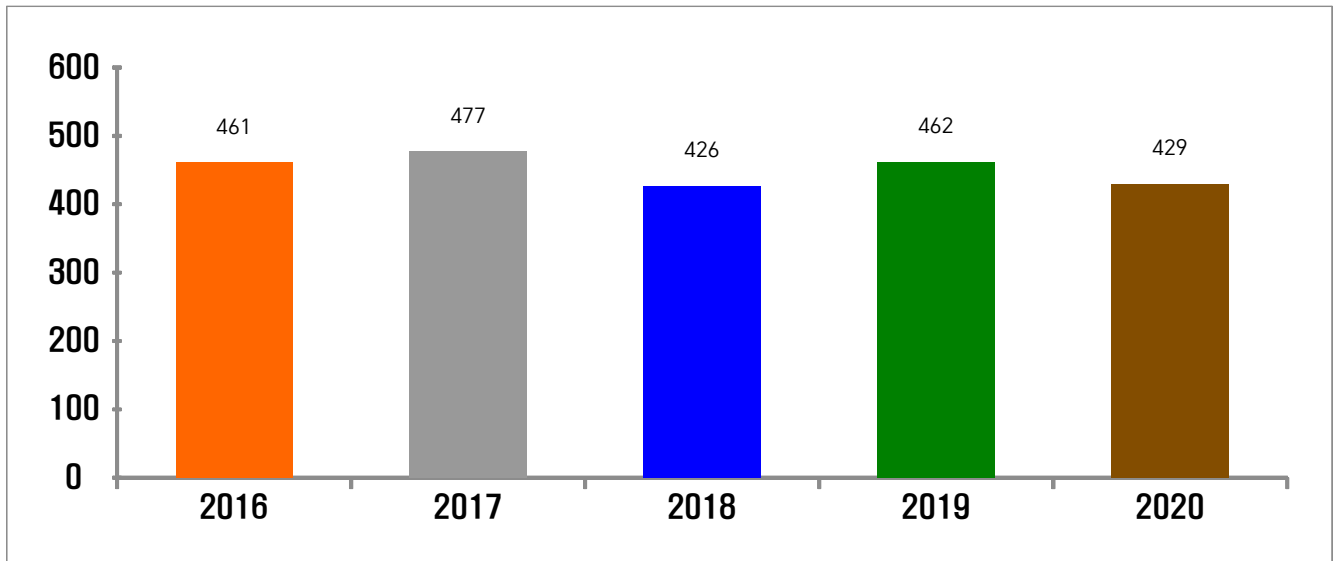
## 5. 2020년 항소사건 신분별·죄명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445	102	151	170	15	7
군형법 범	간첩이적	0					
	군무이탈	7	1	2	4		
	상관에관한죄	21	5	9	7		
	군용물관련죄	4		1	2		1
	초병에관한죄	2		1			1
	성범죄(군인등)	67	17	40	7	3	
	기타	0					
주요형법 범	내란소요죄	0					
	뇌물에관한죄	6	4	2			
	문서인장죄	11	4	4	2	1	
	살인의죄	2			2		
	과실치사상죄	0					
	절도강도의죄	12	1	4	6	1	
	사기횡령배임죄	29	3	8	18		
풍속에관한죄	0						
교통법 범	교특법위반	5		3	2		
	도교법위반	12	4	5	2	1	
	특가법(도주)	5		2	2	1	
성범죄	형법위반	51	9	13	28	1	
	성폭법위반	51	15	16	20		
	아청법위반	24		7	14	1	2
	성매매특별법	1		1			
배전법 범	상해,폭행	34	9	8	15	2	
	상해등치사	0					
	폭처법위반	8	1		7		
군사기밀보호법		4	2				2
국가보안법		0					
기타		89	27	25	32	4	1

### ○ 분석

- 2020년 접수 중 성범죄(군형법 포함) 43.6%, 주요형법범 13.5%, 폭력범죄 9.4%,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7.6%, 교통범죄 4.9%
- 신분별 주요 범죄 비율
  - 장교: 성범죄(군형법 포함) 40.2%, 주요형법범 11.8%
  - 준·부사관: 성범죄(군형법 포함) 51%,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8.6%
  - 병: 성범죄(군형법 포함) 40.6%, 주요형법범 16.5%
  - 군무원: 성범죄(군형법 포함) 33.3%, 주요형법범 13.3%
  - 민간인: 군형법범 28.6%

## 6.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처리 결과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명	461	477	426	462	429

### ○ 분석

- 2020년 전년 대비 항소사건 처리 7% 감소

## 7. 2020년 항소사건 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명 (비율)	429 (100)	24 (5.6)	324 (75.6)	57 (13.3)	24 (5.6)

### 7-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5년 평균	합계 (비율)	2,255 (100)	151 (6.4)	1,816 (77.5)	205 (8.8)	170 (7.3)
2016년	명 (비율)	461 (100)	28 (6.1)	367 (79.6)	29 (6.3)	37 (8.0)
2017년	명 (비율)	477 (100)	34 (7.1)	351 (73.6)	63 (13.2)	29 (6.1)
2018년	명 (비율)	426 (100)	33 (7.7)	324 (76.1)	38 (8.9)	31 (7.3)
2019년	명 (비율)	462 (100)	34 (7.4)	351 (76.0)	30 (6.5)	47 (10.2)
2020년	명 (비율)	429 (100)	24 (5.6)	324 (75.6)	57 (13.3)	24 (5.6)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항소사건 처리 중 육군 77.5%, 해군 8.8%, 공군 7.3%, 국방부 6.4%
- 연도별 군별 처리 비율 해군 증가, 국방부 및 공군 감소 추세
- 2020년 육군 75.6%, 해군 13.3%, 공군 및 국방부 5.6%
- 2020년 전년 대비 해군 사건 증가, 국방부 및 공군 사건 감소

## 8. 2020년 항소사건 구속 / 불구속 현황

구분	합계	구속	불구속
명 (비율)	429 (100)	83 (19)	346 (81)

### 8-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구속 / 불구속 현황

구분	합계	구속	불구속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255 (100)	630 (26.9)	1,712 (73.1)
2016년	명 (비율)	461 (100)	148 (32.1)	313 (67.9)
2017년	명 (비율)	477 (100)	126 (26.4)	351 (73.6)
2018년	명 (비율)	426 (100)	88 (20.7)	338 (79.3)
2019년	명 (비율)	462 (100)	76 (16.5)	386 (83.5)
2020년	명 (비율)	429 (100)	83 (19)	346 (81)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구속 사건 26.9%, 불구속 사건 73.1%
- 연도별 분석결과 구속 사건 감소, 불구속 사건 증가 추세
- 2020년 항소사건 중 구속 사건 19%, 불구속 사건 81%
- 2020년 전년 대비 구속 사건 증가, 불구속 사건 감소

## 9. 2020년 항소사건 재판결과

구분	합계	판결					항소취하	이송 등	1심 판결 파기율
		파기자판				항소기각			
		소계	동일	양형부당					
명 (비율)	429 (100)	147 (34)	40 (9.3)	28 (6.5)	79 (18.4)	187 (43.6)	11 (2.6)	84 (19.6)	44%

\* 1심 판결 파기율=파기인원/판결인원×100[항소취하, 이송 등 제외]

### 9-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재판결과

구분	합계	판결					항소취하	이송 등	1심 판결 파기율	
		파기자판				항소기각				
		소계	동일	양형부당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342 (100)	990 (42.3)	259 (11.1)	146 (6.2)	585 (25.0)	899 (38.4)	134 (5.7)	319 (13.6)	52.4%
2016년	명 (비율)	461 (100)	175 (38)	40 (8.7)	17 (3.7)	118 (25.6)	183 (39.7)	35 (7.6)	68 (14.8)	48.9%
2017년	명 (비율)	477 (100)	203 (42.6)	53 (11.2)	35 (7.3)	115 (24.1)	187 (39.2)	23 (4.8)	64 (13.4)	52.1%
2018년	명 (비율)	426 (100)	192 (45.1)	69 (16.2)	31 (7.3)	92 (21.6)	162 (38)	18 (4.2)	54 (12.7)	54.2%
2019년	명 (비율)	462 (100)	182 (39.4)	53 (11.5)	35 (7.6)	94 (20.3)	192 (41.6)	16 (3.5)	72 (15.6)	48.7%
2020년	명 (비율)	429 (100)	147 (34)	40 (9.3)	28 (6.5)	79 (18.4)	187 (43.6)	11 (2.6)	84 (19.6)	44%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1심 파기 42.3%, 항소기각 38.4%, 이송 등 13.6%, 항소취하 5.7%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1심 파기 감소, 항소기각 증가 추세
- 2020년 항소사건 중 1심 판결 파기율 44%, 전년 대비 파기율 감소

## 10. 2020년 항소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429 (100)	93 (21.7)	146 (34)	172 (40.1)	13 (3)	5 (1.2)

### 10-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255 (100)	437 (18.7)	632(27.0)	1,164 (49.7)	86 (3.7)	23 (1.0)
2016년	명 (비율)	461 (100)	99 (21.5)	99 (21.5)	249 (54)	8 (1.7)	6 (1.3)
2017년	명 (비율)	477 (100)	93 (19.5)	126 (26.4)	230 (48.2)	23 (4.8)	5 (1)
2018년	명 (비율)	426 (100)	79 (18.5)	133 (31.2)	193 (45.3)	19 (4.5)	2 (0.5)
2019년	명 (비율)	462 (100)	103 (22.3)	154 (33.3)	178 (38.5)	21 (4.5)	6 (1.3)
2020년	명 (비율)	429 (100)	93 (21.7)	146 (34)	172 (40.1)	13 (3)	5 (1.2)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병 49.7%, 준·부사관 27%, 장교 18.7%, 군무원 3.7%, 민간인 1%
- 연도별 분석결과 병 사건 감소, 타 신분은 계속 변동
- 2020년 병 40.1%, 준·부사관 34%, 장교 21.7%, 군무원 3%, 민간인 1.2%
- 2020년 전년 대비 병 사건 증가, 군무원 사건 감소

## 11. 2020년 항소사건 죄명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군형법범 (성범죄 제외)	주요형법	교통범죄	성범죄 (군형법 포함)	폭력범죄	군기/국보	기타
명 (비율)	429 (100)	45 (10)	62 (14.5)	27 (6.2)	184 (42.9)	29 (6.8)	1 (0.02)	81 (18.9)

### 11-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죄명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군형법범 (성범죄 제외)	주요형법	교통범죄	성범죄 (군형법 포함)	폭력범죄	군기/국보	기타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255 (100)	239 (10.2)	344 (14.7)	172 (7.3)	871 (37.2)	351 (15.0)	26 (1.1)	339 (14.5)
2016년	명 (비율)	461 (100)	55 (11.9)	72 (15.6)	36 (7.8)	163 (35.4)	84 (18.2)	9 (2)	42 (9.1)
2017년	명 (비율)	477 (100)	47 (9.9)	74 (15.5)	34 (7.1)	190 (39.8)	44 (9.2)	4 (0.8)	84 (17.6)
2018년	명 (비율)	426 (100)	26 (6.1)	62 (14.6)	36 (8.5)	163 (38.3)	61 (14.3)	6 (1.4)	72 (16.9)
2019년	명 (비율)	462 (100)	51 (11.0)	57 (12.3)	29 (6.3)	173 (37.4)	54 (11.7)	3 (0.6)	95 (20.6)
2020년	명 (비율)	429 (100)	45 (10)	62 (14.5)	27 (6.2)	184 (42.9)	29 (6.8)	1 (0.02)	81 (18.9)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성범죄(군형법 포함) 37.2%, 폭력범죄 15%, 주요형법범 14.7%,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0.2%
- 연도별 분석결과 성범죄 증가, 폭력범죄 감소 추세
- 2020년 성범죄(군형법 포함) 42.9%, 주요형법범 14.5%,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0%, 폭력범죄 6.8%
- 2020년 전년 대비 성범죄(군형법 포함) 및 주요형법범 증가, 폭력범죄 감소

## 12. 2020년 항소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429 (100)	0 (0)	56 (13)	111 (25.9)	96 (22.4)	21 (4.9)	47 (11)	98 (22.8)

\* 이송 등: 이송(84), 항소취하(11), 공소기각(3)

### 12-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255 (100)	1 (0)	433 (18.5)	627 (26.8)	502 (21.4)	81 (3.5)	241 (10.3)	457 (19.5)
2016년	명 (비율)	461 (100)	0 (0)	102 (22.1)	122 (26.5)	74 (16.1)	20 (4.3)	40 (8.7)	103 (22.3)
2017년	명 (비율)	477 (100)	0 (0)	91 (19.1)	127 (26.6)	104 (21.8)	16 (3.4)	52 (10.9)	87 (18.2)
2018년	명 (비율)	426 (100)	0 (0)	63 (14.8)	115 (27)	109 (25.6)	7 (1.6)	58 (13.6)	74 (17.4)
2019년	명 (비율)	462 (100)	0 (0)	56 (12.1)	108 (23.4)	135 (29.2)	20 (4.3)	53 (11.5)	90 (19.5)
2020년	명 (비율)	429 (100)	0 (0)	56 (13)	111 (25.9)	96 (22.4)	21 (4.9)	47 (11)	98 (22.8)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집행유예 26.8%, 재산형 21.4%, 자유형 18.5%, 무죄 10.3%, 선고유예 3.5%
- 연도별 분석결과 자유형 감소 추세
- 2020년 집행유예 25.9%, 재산형 22.4%, 자유형 13%, 무죄 11%, 선고유예 4.9%
- 2020년 전년 대비 집행유예 증가, 재산형 감소

## 13. 2020년 항소사건 죄명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등	
합계	429	0	56	111	96	21	47	98	
민법포함범죄	간첩이적	0							
	군무이탈	7		1	4	1		1	
	상관에관한죄	26			9		8	4	5
	군용물관련죄	7		2	3	1		1	
	초병에관한죄	3			1			1	1
	성범죄(군인등)	61		10	29	2	2	6	12
	기타	2				1	1		
주요형법포함범죄	내란소요죄	0							
	뇌물에관한죄	5			5				
	문서인장죄	7		1	3			3	
	살인의죄	1		1					
	과실치사상죄	0							
	절도강도의죄	13		1	5	2		2	3
	사기횡령배임죄	25		3	8	4		2	8
풍속에관한죄	1				1				
기타범죄	교특법위반	4					2	2	
	도교법위반	14		1	2	5	3	3	
	특가법(도주)	4		1	1	2			
정형법범죄	형법위반	55		10	17	11	1	7	9
	성폭법위반	37		6	5	14	1	3	8
	아청법위반	25		10	7	1	1	3	3
	성매매특별법	0							
폭력범죄	상해·폭행	30		2	3	13	1	1	10
	상해등치사	0							
	폭처법위반	9				4			5
군사기밀보호법	1			1					
국가보안법	0								
기타	92		7	8	34	6	12	25	

#### ○ 분석

- 성범죄(군형법 포함) 41.5%, 주요형법범 12.1%,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0.5%, 폭력범죄 9.1%
- 성범죄(군형법 포함)의 경우 집행유예 32.6%, 자유형 20.2%, 재산형 15.7%, 무죄 10.7%
- 주요형법범의 경우 집행유예 40.4%, 재산형 13.5%, 자유형 11.5%, 무죄 7.7%

#### 14. 2020년 항소사건 신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등
합계	429	0	56	111	96	21	47	98
장교	장성	6						6
	영관	42	5	15	15	2	3	2
	위관	45		2	13	10	4	7
준·부사관	146		20	45	37	8	21	15
병	172		29	34	28	7	11	63
군무원	13			2	6		4	1
민간인	5			2			1	2

##### ○ 분석

- 장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30.1%, 재산형 26.9%, 무죄 10.8%, 자유형 7.5%
- 준·부사관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30.8%, 재산형 25.3%, 무죄 14.4%, 자유형 13.7%
- 병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19.8%, 자유형 16.9%, 재산형 16.3%, 무죄 6.4%
- 군무원 사건의 경우 재산형 46.2%, 무죄 30.8%, 집행유예 15.4%
- 민간인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40%

#### 15. 2020년 항소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56 (100)	0 (0)	6 (10.7)	8 (14.3)	11 (19.6)	22 (39.3)	9 (16.1)

##### 15-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368 (100)	0 (0)	10 (2.7)	37 (10.1)	55 (14.9)	181 (49.2)	85 (23.1)
2016년	명 (비율)	102 (100)	0 (0)	3 (3)	18 (18)	12 (12)	44 (44)	25 (25)
2017년	명 (비율)	91 (100)	0 (0)	0 (0)	6 (6.6)	18 (19.8)	46 (50.5)	21 (23.1)
2018년	명 (비율)	63 (100)	0 (0)	1 (1.6)	3 (4.8)	4 (6.3)	40 (63.5)	15 (23.8)
2019년	명 (비율)	56 (100)	0 (0)	0 (0)	2 (3.6)	10 (17.9)	29 (51.8)	15 (26.8)
2020년	명 (비율)	56 (100)	0 (0)	6 (10.7)	8 (14.3)	11 (19.6)	22 (39.3)	9 (16.1)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1년 이상 3년 미만 49.2%, 3년 이상 27.7%, 1년 미만 23.1%
- 연도별 분석결과 3년 미만 감소 추세
- 2020년 1년 이상 3년 미만 39.3%, 1년 미만 16.1%, 3년 이상 44.6%
- 2020년 전년 대비 3년 이상 5년 미만 증가, 1년 이상 3년 미만 감소

## 16. 2020년 항소사건 처리일수

구 분	합계	사건처리 일수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명 (비율)	429 (100)	51 (11.9)	22 (5.1)	47 (10.9)	83 (19.3)	82 (19.1)	62 (14.5)	43 (10.2)	11 (2.6)	14 (3.2)	14 (3.2)

### 16-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처리일수

구 분	합계	사건처리 일수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255 (100)	251 (11.1)	127 (5.6)	249 (11)	437 (19.4)	464 (20.6)	346 (15.3)	168 (7.5)	76 (3.4)	69 (3.1)	68 (3)
2016년	명 (비율)	461 (100)	60 (13)	38 (8.2)	49 (10.6)	81 (17.6)	85 (18.4)	82 (17.8)	29 (6.3)	13 (2.8)	14 (3)	10 (2.2)
2017년	명 (비율)	477 (100)	45 (9.4)	31 (6.5)	61 (12.8)	122 (25.6)	92 (19.3)	58 (12.2)	29 (6.1)	21 (4.4)	13 (2.7)	5 (1.0)
2018년	명 (비율)	426 (100)	49 (11.5)	15 (3.5)	43 (10.1)	86 (20.2)	99 (23.2)	60 (14.1)	28 (6.6)	21 (4.9)	11 (2.6)	14 (3.3)
2019년	명 (비율)	462 (100)	46 (10.0)	21 (4.5)	49 (10.6)	65 (14.1)	106 (22.9)	84 (18.2)	39 (8.4)	10 (2.2)	17 (3.7)	25 (5.4)
2020년	명 (비율)	429 (100)	51 (11.9)	22 (5.1)	47 (10.9)	83 (19.3)	82 (19.1)	62 (14.5)	43 (10.2)	11 (2.6)	14 (3.2)	14 (3.2)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처리 중 120일 이내 27.7%, 121일 이상 210일 이내 55.3%, 211일 이상 17%
- 연도별 분석결과 120일 이내 감소, 121일 이상 증가 추세
- 2020년 처리 중 120일 이내 27.9%, 121일 이상 210일 이내 52.9%, 211일 이상 19.2%
- 2020년 전년 대비 121일 이상 210일 이내 감소, 120일 이내 증가

## 17. 2020년 항소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333 (100)	126 (37.8)	110 (33)	13 (3.9)	210 (63)

\* 이송 등 사건은 변호인 선임현황에 미포함

### 17-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889 (100)	866 (45.8)	644 (34.1)	222 (11.8)	1,023 (54.2)
2016년	명 (비율)	358 (100)	174 (48.6)	126 (35.2)	48 (13.4)	184 (51.4)
2017년	명 (비율)	390 (100)	177 (45.4)	119 (30.5)	58 (14.9)	213 (54.6)
2018년	명 (비율)	354 (100)	160 (45.2)	119 (33.6)	41 (11.6)	194 (54.8)
2019년	명 (비율)	374 (100)	136 (36.4)	117 (31.3)	19 (5.1)	238 (63.6)
2020년	명 (비율)	333 (100)	126 (37.8)	110 (33)	13 (3.9)	210 (63)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54.2%, 국선변호인의 변호사 선정률 34.1%
- 연도별 분석결과 사선변호인 선임률 증가 추세
- 2020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63%, 국선변호인의 변호사 선정률 33%
- 2020년 전년 대비 국선변호인의 변호사 선정률 증가



## 18. 2020년 항소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유예	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유예	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유예	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송	
합계	181	6	15	7	3	5	0	2	15	23	14	1	6	0	5	15	20	9	1	7	0	23	0	1	0	0	2	0	1
균형법위반	61	3	9		2	2		1	16	16	2		4		3	1	3				7							1	
형법위반	55	2	4	3		2			3	4	4		1		1	5	9	4	1	3		8					1		
성폭법위반	37	1	1	3	1	1		1	2	2	7				1	3	2	4		1		6					1		
아청법위반	24		1						4	1	1	1	1			6	5	1		2		2							
기타	4			1												1	1		1										

### 18-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유예	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유예	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유예	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송			
5년 평균	합계	870	23	66	38	4	24	0	12	39	84	53	16	42	0	19	91	117	56	5	29	0	132	1	6	3	1	6	0	3	
	균형법위반	289	14	47	0	3	10	0	7	13	62	2	13	18	0	6	10	33	0	1	0	0	40	1	5	0	1	1	0	2	
	형법위반	270	4	15	10	0	9	0	1	11	12	17	2	18	0	8	22	50	26	3	11	0	46	0	0	2	0	3	0	0	
	성폭법위반	207	5	2	22	1	4	0	3	10	9	25	0	4	0	2	41	18	18	1	8	0	29	0	0	1	1	0	2	0	1
	아청법위반	88	0	1	4	0	1	0	0	5	1	6	1	1	0	3	18	15	7	0	9	0	16	0	0	0	0	0	0	0	
	기타	16	0	1	2	0	0	0	1	0	0	3	0	1	0	0	0	1	5	0	1	0	1	0	0	0	0	0	0	0	
2016년	소계	163	4	15	6		5		1	8	11	7	6	5		1	28	23	5		8		29					1			
	균형법위반	56	4	11			3		1	3	10		5	1			2	7					9								
	형법위반	44		3	1					1		2	1	3			4	10	2		2		14					1			
	성폭법위반	42			4		2			3	1	3		1			17	5	1		1		4								
	아청법위반	20			1					1		2				1	5	1	2		5		2								
	기타	1		1																											
2017년	소계	190	6	13	10		6		5	5	18	8	1	10		3	19	26	14	2	7		34		3						
	균형법위반	59	2	9			1		2		16		1	5		1	1	9		1			9		2						
	형법위반	58	2	3	3		3			3	1	2		4		2	5	9	6	1	3		11								
	성폭법위반	53	2	1	5		1		2	2	1	4		1			9	5	4		4		11		1						
	아청법위반	18			2		1					2					4	3	3				3								
	기타	2							1										1												
2018년	소계	163	5	8	5		3		2	4	13	12	3	9		7	18	28	18	1	3		22			1	1				
	균형법위반	48	3	7			2		2	2	5		3	4		1	4	6					8			1					
	형법위반	59		1	1		1			1	6	5		5		3	7	14	10		1		4				1				
	성폭법위반	38	2		4					1	2	4				1	5	3	7	1	1		6			1					
	아청법위반	14										1				2	2	5		1		3									
	기타	4										2							1				1								
2019년	소계	173	2	15	10	1	5	0	2	7	19	12	5	12	0	3	11	20	10	1	4	0	24	1	2	2	0	3	0	2	
	균형법위반	65	2	11		1	2		1	2	15		4	4		1	2	8					7	1	2		1		1		
	형법위반	54		4	2		3		1	3	1	4	1	5		2	1	8	4	1	2		9			2	1				
	성폭법위반	37			6					2	3	7		2			7	3	2		1		2				1		1		
	아청법위반	12			1												1	1	2		1		6								
	기타	5			1							1		1					2												
2020년	소계	181	6	15	7	3	5	0	2	15	23	14	1	6	0	5	15	20	9	1	7	0	23	0	1	0	0	2	0	1	
	균형법위반	61	3	9		2	2		1	6	16	2		4		3	1	3					7		1					1	
	형법위반	55	2	4	3		2			3	4	4		1		1	5	9	4	1	3		8					1			
	성폭법위반	37	1	1	3	1	1		1	2	2	7				1	3	2	4		1		6					1			
	아청법위반	24		1						4	1	1	1	1			6	5			2		2								
	기타	4			1													1	1		1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성범죄 중 균형법위반 33.2%, 아청법위반 10.1%,  
신분별 병 49.4%, 준·부사관 29.1%, 장교 19.2%, 군무원 2.3%,  
처분별 집행유예 31.4%, 자유형 17.7%, 재산형 17.2%, 무죄 11.6%
- 연도별 분석결과 죄명별 균형법위반 감소, 아청법위반 증가 추세,  
신분별 준·부사관 및 장교 증가, 병 감소 추세,  
처분별 자유형 증가, 집행유예 및 재산형 감소 추세
- 2020년 균형법위반 33.7%, 아청법위반 13.3%, 전년 대비 균형법위반 감소
- 2020년 병 41.4%, 준·부사관 35.4%, 장교 21%, 전년 대비 준·부사관 증가
- 2020년 집행유예 32.6%, 자유형 19.9%, 재산형 16.6%, 무죄 11%  
전년 대비 자유형 증가, 재산형 및 무죄 감소

## 19. 2020년 항소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재판결과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5 (100)	0 (0)	2 (40)	0 (0)	0 (0)	1 (20)	2 (40)

### 19-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재판결과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4 (100)	4 (17.4)	13 (56.5)	0 (0)	0 (0)	2 (8.7)	4 (17.4)
2016년	명 (비율)	6 (100)	1 (16.7)	5 (83.3)	0 (0)	0 (0)	0 (0)	0 (0)
2017년	명 (비율)	5 (100)	2 (40)	1 (20)	0 (0)	0 (0)	2 (40)	0 (0)
2018년	명 (비율)	2 (100)	0 (0)	1 (50)	0 (0)	0 (0)	0 (0)	1 (50)
2019년	명 (비율)	6 (100)	1 (16.7)	4 (66.7)	0 (0)	0 (0)	0 (0)	1 (16.6)
2020년	명 (비율)	5 (100)	0 (0)	2 (40)	0 (0)	0 (0)	1 (20)	2 (40)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집행유예 56.5%, 자유형 17.4%, 무죄 8.7%
- 2020년 집행유예 40%, 무죄 20%
- 2020년 전년 대비 민간인 사건 유사

## 20. 2020년 항소심 파기자판 무죄 선고 현황(6명)

사건번호	계급	죄명	1심 선고결과	2심 무죄 선고 사유	비고 (상고결과)
2019노146	해군 중위	준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시간 동안에도 잠이 든 상태가 아니었으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의 상태는 아닌지 의문이 들어 아무런 기억이 없으므로 잠이 든 상태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비록 일관되기는 하나, 당시의 여러 객관적 정황들과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원심이 들고 있는 정황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대법원 진행중
2019노160	육군 상사	상관모욕	선고유예(금고3월)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20. 4. 29. 상고기각
2019노402	육군 소령	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가장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CCTV 등에 비추어볼 때 과장되었거나 사후적으로 재구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진행 중
2020노67	육군 상사	교특법위반(치사)	금고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20. 11. 5. 상고기각
2020노104	육군 중사	정통법위반 (명예훼손)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댓글은 총학생회장 입후보와 관련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피고인은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려는 학생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공하고자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020노149	해군 하사	무고	징역 1년, 집유 2년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지 성관계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므로,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진행 중

## 21. 2020년 상고사건 접수 현황

구분	항소심 판결인원	상고인원	상고율
명	334	183	54.8

### 21-1. 최근 5년간 상고사건 접수 현황

구분	항소심 판결인원	상고인원	상고율
5년 평균율	1,810	900	49.7
2016년	358	168	46.9
2017년	390	172	44.1
2018년	354	173	48.9
2019년	374	204	54.5
2020년	334	183	54.8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대법원 상고율 49.7%
- 연도별 분석결과 대법원 상고율 증가 추세
- 2020년 대법원 상고율 54.8%, 전년 대비 상고율 유사

## 22. 2020년 상고사건 처리 결과

구분	합계	판 결					상고취하	기타	2심 판결 파기율
		파 기				상고기각			
		소계	파기환송	파기이송	공소기각 (파기자판)				
명 (비율)	176 (100)	7 (3.8)	7 (3.8)	0 (0)	0 (0)	160 (90.9)	9 (5.1)	0 (0)	4.2

\* 2심 판결 파기율=파기인원/판결인원×100[상고취하, 기타 제외]

### 22-1. 최근 5년간 상고사건 처리 현황

구분	합계	판 결					상고취하	기타	2심 판결 파기율
		파 기				상고기각			
		소계	파기환송	파기이송	공소기각 (파기자판)				
5년 평균율	866 (100)	21 (2.4)	20 (2.3)	0 (0)	1 (0.1)	764 (88.2)	81 (9.4)	0 (0)	2.7
2016년	158 (100)	4 (2.5)	4 (2.5)	0 (0)	0 (0)	134 (84.8)	20 (12.7)	0 (0)	2.9
2017년	168 (100)	1 (0.6)	1 (0.6)	0 (0)	0 (0)	139 (82.7)	28 (16.7)	0 (0)	0.7
2018년	166 (100)	4 (2.4)	4 (2.4)	0 (0)	0 (0)	147 (88.6)	15 (9)	0 (0)	2.6
2019년	198 (100)	5 (2.5)	4 (2)	0 (0)	1 (0.5)	184 (93)	9 (4.5)	0 (0)	2.6
2020년	176 (100)	7 (3.8)	7 (3.8)	0 (0)	0 (0)	160 (90.9)	9 (5.1)	0 (0)	4.2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상고기각 88.2%, 파기 3.8%, 상고취하 5.1%
- 연도별 분석결과 대법원 상고파기율 2017년 이후 증가 추세
- 2020년 2심 판결 파기율 4.2%, 전년 대비 증가
- 2020년 대법원 선고 전 상고취하 5.1%, 전년 대비 증가

### 23. 2020년 상고심 파기 환송 등 현황

사건번호	계급	죄 명	처 분 결 과	파 기 사유
2018노9	육군 중사	정보통신망 보호법위반 (명예훼손)	- 1심: 벌금 100만 원 - 2심: 항소기각 - 3심: 파기환송 - 환송후: '20. 8. 20. 무죄	이 사건 댓글은 총학생회장 입후보와 관련한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19노384	해군 소위	성폭력 처벌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강간)등	- 1심: 징역 13년, 성폭법위반(친족강간)-공소기각 취업제한 10년 - 2심: 징역 10년,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무죄 취업제한 10년 - 3심: 파기환송 - 환송후: '21. 2. 9. 징역 10년, 취업제한 10년 - '21. 2. 10. 피고인 상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하므로 특수상해죄에 있어서 상해가 인정됨
2019노359	육군 소령	아청법위반 (성매수등)등	- 1심: 징역 1년 3월 - 2심: 징역 1년 3월, 집유 3년 - 3심: 파기환송 - 환송후: '20. 11. 27. 서울고법 이송	성행위를 결심할 중요한 동기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립함
2018노146	육군 상병	강제추행	- 1심: 징역 4년, 아동복지법위반 무죄 - 2심: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아동복지법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무죄 - 3심: 파기환송 - 환송후: '20. 11. 20. 부산고법 이송	아동복지법위반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청소년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협박으로 이○○에게 연락을 취한 이상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원심이 들고 있는 시간적 간격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정은 고의 및 협박이 간음행위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보이지 않음
2020노20	육군 하사	아청법위반 (준강간등)	- 1심: 무죄 - 2심: 항소기각 - 3심: 파기환송 - 환송후: 진행 중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할 당시 이미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직전에 이루어진 피고인 친구의 간음행위로 인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됨. 피해자의 "괜찮다"는 답변은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해 보일 뿐 성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2018노256	육군 상사	군인등 강제추행등	- 1심: 징역 6월, 집유 1년 - 2심: 무죄 - 3심: 파기환송 - 환송후: 진행 중	이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의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임
2019노410	해군 소령	성폭력 처벌법위반 (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 1심: 무죄 - 2심: 항소기각 - 3심: 파기환송 - 환송후: 진행 중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그림을 지우라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성적인 동기가 내포된 행위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이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추행행위라고 판단

\* 법리오해: 7건

## 24. 2020년 신청사건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재정신청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타
명 (비율)	138 (100)	113 (81.9)	9 (6.5)	7 (5)	9 (6.5)

### 24-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재정신청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타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546 (100)	360 (73.3)	44 (9.0)	34 (6.9)	53 (10.8)
2016년	명 (비율)	72 (100)	53 (73.6)	10 (13.9)	2 (2.8)	7 (9.7)
2017년	명 (비율)	101 (100)	87 (86)	4 (4)	5 (5)	5 (5)
2018년	명 (비율)	99 (100)	68 (68.7)	11 (11.1)	7 (7.1)	13 (13.1)
2019년	명 (비율)	136 (100)	97 (71.3)	8 (5.9)	14 (10.3)	17 (12.5)
2020년	명 (비율)	138 (100)	113 (81.9)	9 (6.5)	7 (5)	9 (6.5)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재정신청 73.3%, 보석청구 9%, 형사보상청구 6.9%
- 2020년 재정신청 81.9%, 형사보상청구 5%, 보석청구 6.5%
- 2020년 전년대비 재정신청 및 보석청구 증가, 형사보상청구 감소

## 25. 2020년 신청사건 처리 결과

재정신청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타			
계	공소 제기	기각	이송	계	허가	기각	계	인용	기각	이송	계	인용	기각	이송
113	0	90	23	8	2	6	10	8	2	0	20	5	12	3

### 25-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분	재정신청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타			
	계	공소 제기	기각	이송	계	허가	기각	계	인용	기각	이송	계	인용	기각	이송
5년평균	405	4	345	56	41	5	36	37	31	5	1	60	9	43	8
2016년	61	1	60	0	10	2	8	4	4	0	0	6	0	6	0
2017년	49	0	40	9	4	0	4	5	4	0	1	6	0	5	1
2018년	70	2	64	4	9	1	8	5	4	1	0	12	3	8	1
2019년	112	1	91	20	10	0	10	13	11	2	0	16	1	12	3
2020년	113	0	90	23	8	2	6	10	8	2	0	20	5	12	3

#### ○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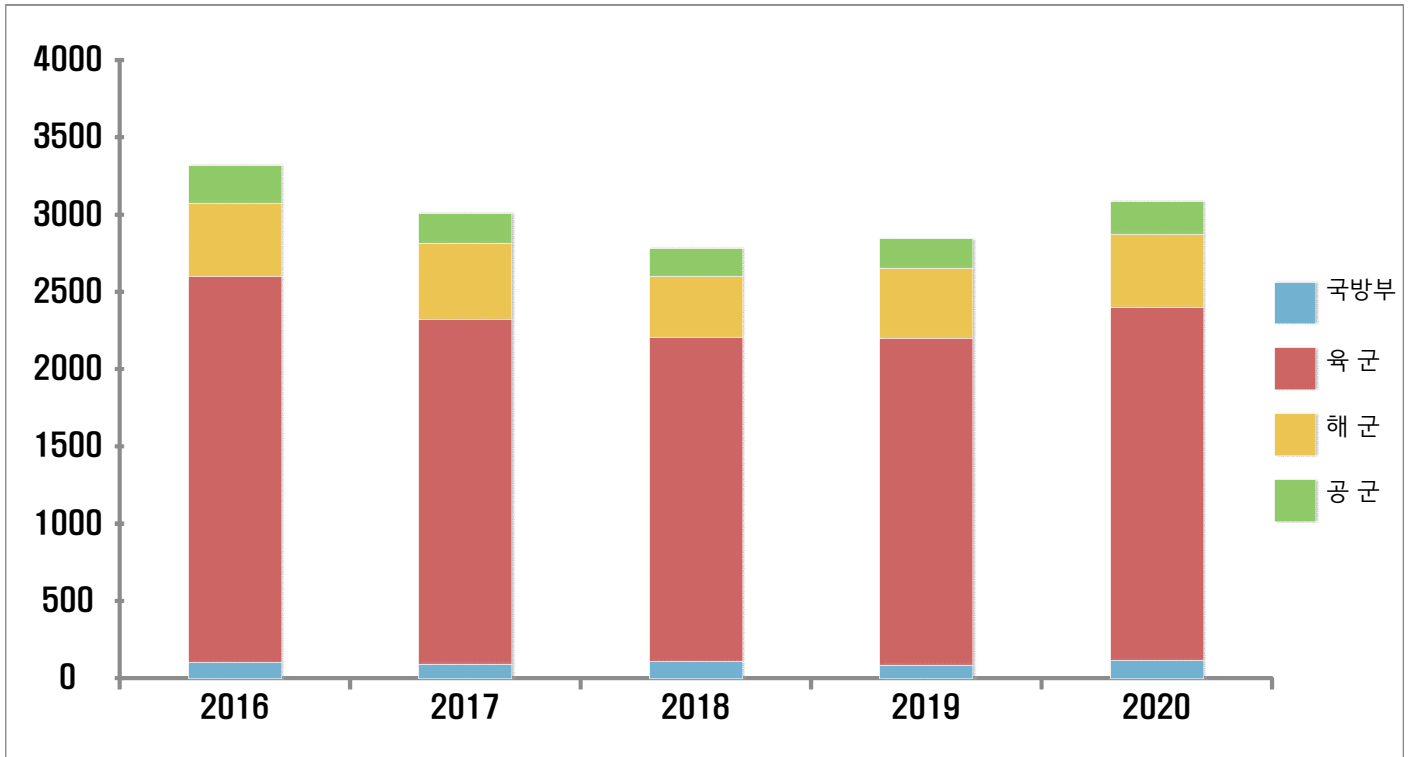
- 최근 5년 평균 재정신청 공소제기율 1%, 보석청구 허가율 12.2%, 형사보상청구 기각률 13.5%
- 2020년 재정신청 공소제기율 0%, 재정신청 이송률 20.4%,  
보석청구 허가율 25%, 형사보상청구 기각률 20%
- 2020년 전년 대비 재정신청 및 보석청구 기각율 감소, 형사보상청구 기각률 증가



< 보통군사법원 종합 >

## □ 국방부/각 군 군사법원

### 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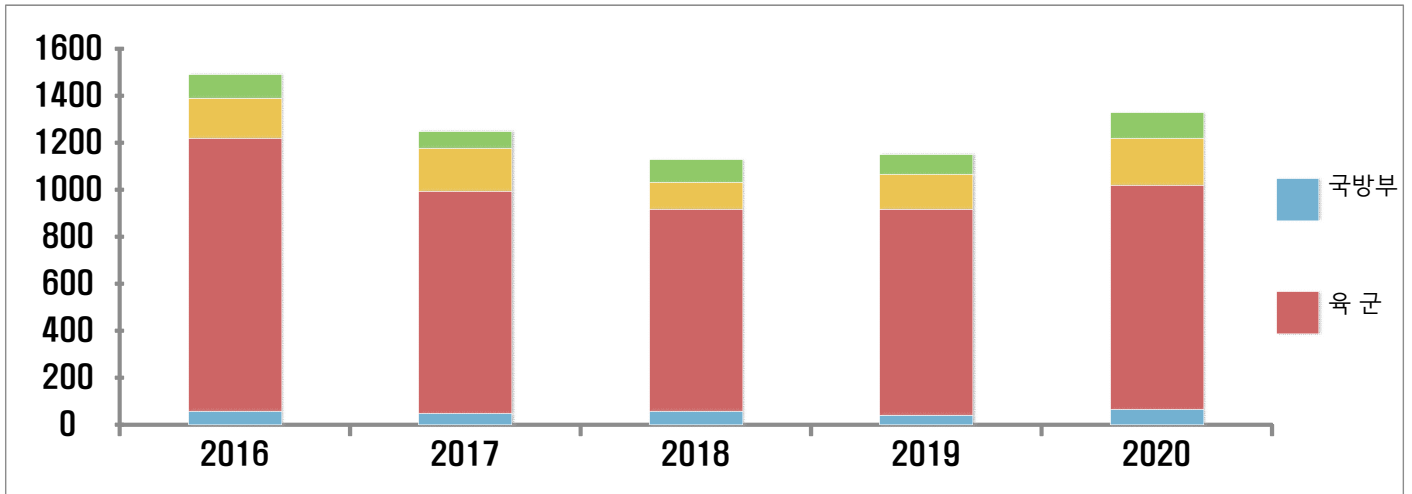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5,028 (100)		484 (3)		11,227 (75)		2,287 (15)		1,030 (7)	
	공판   약식	6,335 (100)	8,693 (100)	253 (4)	231 (3)	4,799 (76)	6,428 (74)	816 (13)	1,471 (17)	467 (7)	563 (6)
2016년	명 (비율)	3,308 (100)		97 (3)		2,499 (76)		474 (14)		247 (7)	
	공판   약식	1,479 (100)	1,829 (100)	54 (4)	43 (2)	1,162 (79)	1,337 (73)	171 (11)	303 (17)	101 (6)	146 (8)
2017년	명 (비율)	3,006 (100)		88 (3)		2,231 (74)		494 (17)		193 (6)	
	공판   약식	1,248 (100)	1,758 (100)	45 (3)	43 (2)	945 (76)	1,286 (73)	184 (15)	310 (18)	74 (6)	119 (7)
2018년	명 (비율)	2,780 (100)		105 (4)		2,096 (75)		393 (14)		186 (7)	
	공판   약식	1,126 (100)	1,654 (100)	55 (5)	50 (3)	859 (77)	1,237 (75)	115 (10)	278 (17)	97 (8)	89 (5)
2019년	명 (비율)	2,840 (100)		82 (3)		2,114 (74)		456 (16)		188 (7)	
	공판   약식	1,148 (100)	1,692 (100)	38 (3)	44 (3)	878 (77)	1,236 (73)	147 (13)	309 (18)	85 (7)	103 (6)
2020년	명 (비율)	3,085 (100)		112 (4)		2,287 (74)		470 (15)		216 (7)	
	공판   약식	1,325 (100)	1,760 (100)	61 (5)	51 (3)	955 (72)	1,332 (76)	199 (15)	271 (15)	110 (8)	106 (6)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형사사건 중 육군 75%, 해군 15%, 공군 7%, 국방부 3%
- 전체 형사사건 감소하던 중 2020년 전년 대비 8.6% 증가



## 2. 최근 5년간 공판사건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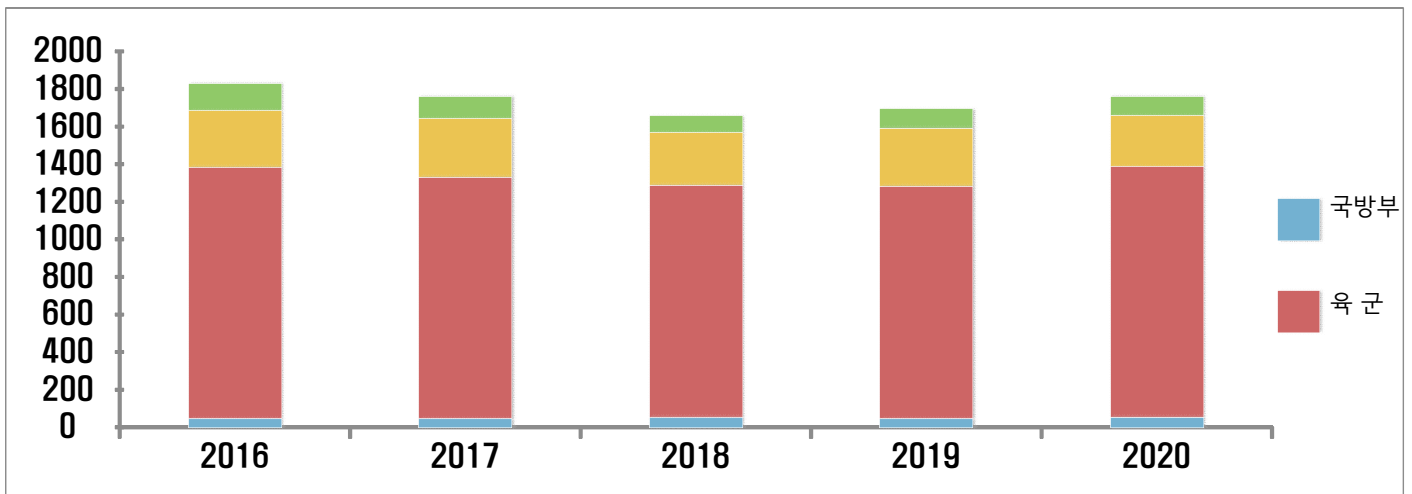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6,335 (100)	253 (4)	4,799 (76)	816 (13)	467 (7)
2016년	명 (비율)	1,488 (100)	54 (4)	1,162 (79)	171 (11)	101 (6)
2017년	명 (비율)	1,248 (100)	45 (3)	945 (76)	184 (15)	74 (6)
2018년	명 (비율)	1,126 (100)	55 (5)	859 (77)	115 (10)	97 (8)
2019년	명 (비율)	1,148 (100)	38 (3)	878 (77)	147 (13)	85 (7)
2020년	명 (비율)	1,325 (100)	61 (5)	955 (72)	199 (15)	110 (8)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공판사건 중 육군 76%, 해군 13%, 공군 7%, 국방부 4%
- 전체 공판사건 감소하던 중 2020년 전년 대비 15.4% 증가

## 3. 최근 5년간 약식사건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8,693 (100)	231 (3)	6,428 (74)	1,471 (17)	563 (6)
2016년	명 (비율)	1,829 (100)	43 (2)	1,337 (73)	303 (17)	146 (8)
2017년	명 (비율)	1,758 (100)	43 (2)	1,286 (73)	310 (18)	119 (7)
2018년	명 (비율)	1,654 (100)	50 (3)	1,237 (75)	278 (17)	89 (5)
2019년	명 (비율)	1,692 (100)	44 (3)	1,236 (73)	309 (18)	103 (6)
2020년	명 (비율)	1,760 (100)	51 (3)	1,332 (76)	271 (15)	106 (6)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약식사건 중 육군 74%, 해군 17%, 공군 6%, 국방부 3%
- 전체 약식사건 감소하던 중 2020년 전년 대비 소폭(4%) 증가

#### 4. 2020년 형사사건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비율)	3,085 (100)	282 (9)	847 (27)	1,847 (60)	93 (3)	16 (1)
국방부 (비율)	112 (100)	36 (32.4)	23 (20.5)	27 (24.1)	20 (17.8)	6 (5.3)
육군 (비율)	2,287 (100)	175 (7.7)	557 (24.4)	1,506 (65.9)	45 (2)	4 (0.2)
해군 (비율)	470 (100)	37 (7.9)	182 (38.7)	236 (50.2)	11 (2.3)	4 (0.9)
공군 (비율)	216 (100)	34 (16)	85 (39)	78 (36)	17 (8)	2 (1)

##### ○ 분석

- 2020년 전체 형사사건 신분별 접수 중 병 60%, 준·부사관 27%, 장교 9%, 군무원 3%
- 국방부 장교 32.4%, 육군 병 65.9%, 해군 병 50.2%, 공군 준·부사관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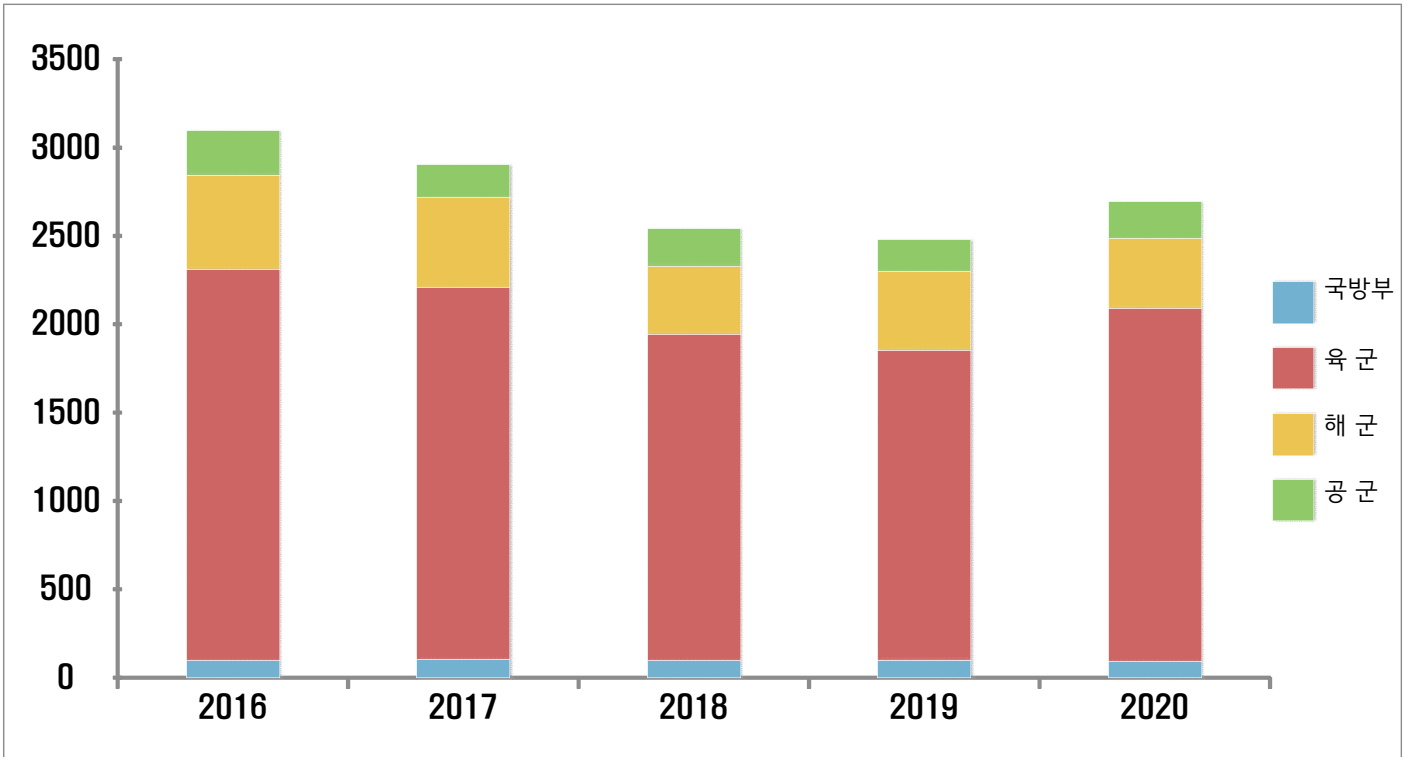
#### 5. 2020년 형사사건 신분별·죄명별 접수 현황

구분	죄명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합계	3,085	282	847	1,847	93	16
	군형법(성범죄 제외)	241	17	61	153	3	7
	주요 형법	420	27	87	298	8	0
	교통범죄	694	109	390	152	43	0
	성범죄(군형법 포함)	523	60	106	342	12	3
	폭력범죄	388	19	80	279	10	0
	군기법/국보법	10	4	1	0	0	5
	기타법률위반	809	46	122	623	17	1
국방부	소계	112	36	23	27	20	6
	군형법(성범죄 제외)	3	0	1	1	0	1
	주요 형법	16	5	4	5	2	0
	교통범죄	30	8	8	2	12	0
	성범죄(군형법 포함)	25	10	3	8	4	0
	폭력범죄	13	1	2	9	1	0
	군기법/국보법	8	3	0	0	0	5
	기타법률위반	17	9	5	2	1	0
육군	소계	2,287	175	557	1,506	45	4
	군형법(성범죄 제외)	167	12	44	108	1	2
	주요 형법	273	9	40	224	0	0
	교통범죄	469	77	248	123	21	0
	성범죄(군형법 포함)	377	34	70	266	6	1
	폭력범죄	279	12	55	210	2	0
	군기법/국보법	2	1	1	0	0	0
	기타법률위반	720	30	99	575	15	1
해군	소계	470	37	182	236	11	4
	군형법(성범죄 제외)	46	2	11	29	0	4
	주요 형법	87	3	28	55	1	0
	교통범죄	138	12	96	22	8	0
	성범죄(군형법 포함)	78	12	20	46	0	0
	폭력범죄	73	3	18	50	2	0
	군기법/국보법	0	0	0	0	0	0
	기타법률위반	48	5	9	34	0	0
공군	소계	216	34	85	78	17	2
	군형법(성범죄 제외)	25	3	5	15	2	0
	주요 형법	44	10	15	14	5	0
	교통범죄	57	12	38	5	2	0
	성범죄(군형법 포함)	43	4	13	22	2	2
	폭력범죄	23	3	5	10	5	0
	군기법/국보법	0	0	0	0	0	0
	기타법률위반	24	2	9	12	1	0

##### ○ 분석

- 2020년 전체 형사사건 죄명별 접수 중 교통범죄 22%, 성범죄(군형법 포함) 17%, 폭력범죄 13%
- 전체 교통범죄 사건 중 국방부 4%, 육군 68%, 해군 20%, 공군 8%
- 전체 성범죄(군형법 포함) 사건 중 국방부 5%, 육군 72%, 해군 15%, 공군 8%
- 전체 폭력범죄 사건 중 국방부 3%, 육군 72%, 해군 19%, 공군 6%

## 6.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처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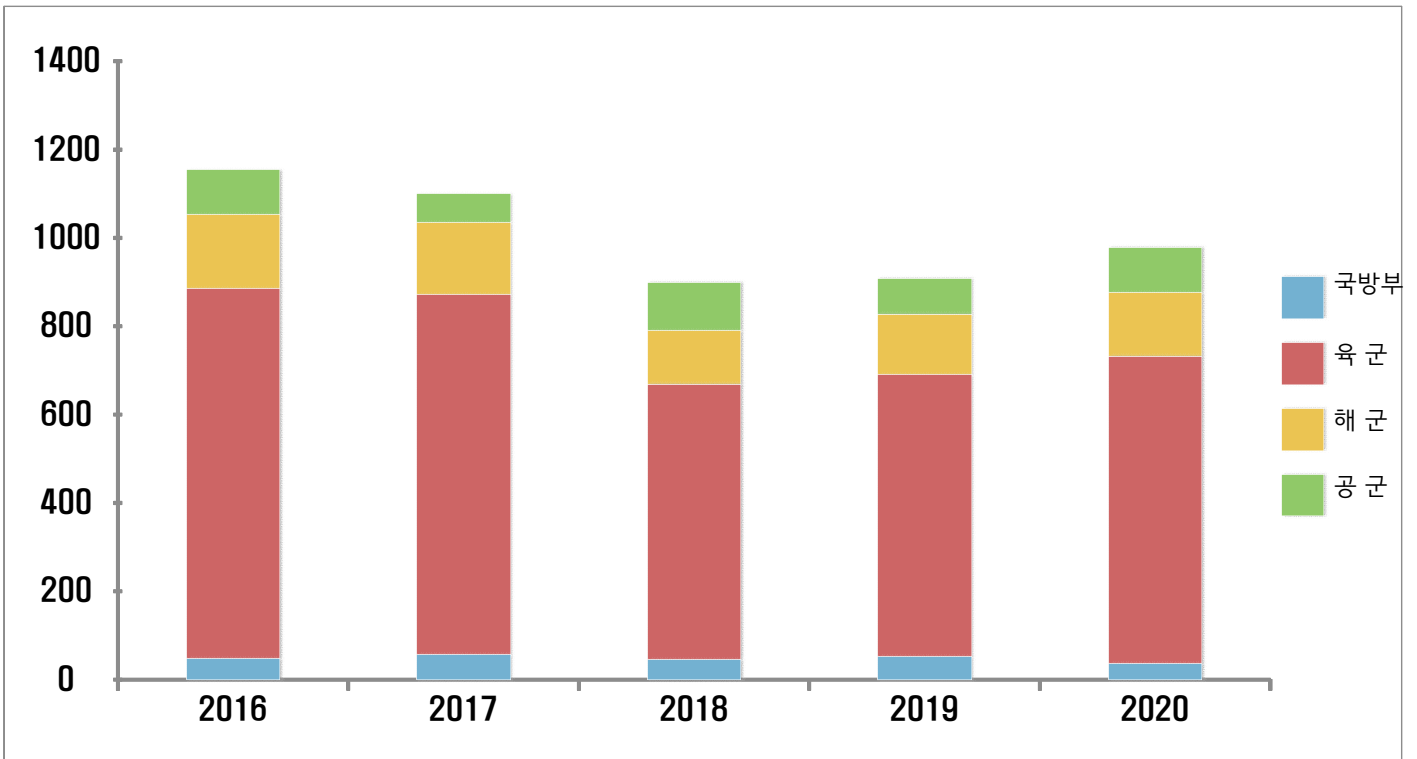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3,704 (100)		466 (3)		9,932 (72)		2,261 (17)		1,045 (8)	
	공판   약식	5,037 (100)	8,665 (100)	231 (5)	235 (3)	3,613 (72)	6,319 (73)	733 (14)	1,528 (17)	460 (9)	583 (7)
2016년	명 (비율)	3,093 (100)		92 (3)		2,220 (72)		530 (17)		251 (8)	
	공판   약식	1,153 (100)	1,940 (100)	46 (4)	46 (2)	838 (73)	1,382 (71)	168 (14)	362 (19)	101 (9)	150 (8)
2017년	명 (비율)	2,901 (100)		98 (3)		2,107 (73)		509 (18)		187 (6)	
	공판   약식	1,099 (100)	1,802 (100)	55 (5)	43 (2)	815 (74)	1,292 (72)	164 (15)	345 (19)	65 (6)	122 (7)
2018년	명 (비율)	2,540 (100)		93 (4)		1,847 (73)		386 (15)		214 (8)	
	공판   약식	899 (100)	1,641 (100)	44 (5)	49 (3)	624 (70)	1,223 (75)	121 (13)	265 (16)	110 (12)	104 (6)
2019년	명 (비율)	2,479 (100)		96 (4)		1,755 (71)		444 (18)		184 (7)	
	공판   약식	908 (100)	1,569 (100)	51 (6)	45 (3)	639 (70)	1,116 (71)	137 (15)	307 (20)	81 (9)	101 (6)
2020년	명 (비율)	2,691 (100)		87 (3)		2,003 (74)		392 (15)		209 (8)	
	공판   약식	978 (100)	1,713 (100)	35 (4)	52 (3)	697 (71)	1,306 (76)	143 (15)	249 (15)	103 (10)	106 (6)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형사사건 중 육군 72%, 해군 17%, 공군 8%, 국방부 3%
- 2020년 전년 대비 육군·공군 사건 증가, 국방부·해군 사건 감소

## 7. 최근 5년간 공판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5,037 (100)	231 (5)	3,613 (72)	733 (14)	460 (9)
2016년	명 (비율)	1,153 (100)	46 (4)	838 (73)	168 (14)	101 (9)
2017년	명 (비율)	1,099 (100)	55 (5)	815 (74)	164 (15)	65 (6)
2018년	명 (비율)	899 (100)	44 (5)	624 (70)	121 (13)	110 (12)
2019년	명 (비율)	908 (100)	51 (6)	639 (70)	137 (15)	81 (9)
2020년	명 (비율)	978 (100)	35 (4)	697 (71)	143 (15)	103 (10)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공판사건 중 육군 72%, 해군 14%, 공군 9%, 국방부 5%
- 2020년 전년 대비 육군·해군·공군 사건 증가, 국방부 사건 감소

## 8. 2020년 공판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비율)	978 (100)	95 (10)	238 (24)	612 (63)	24 (2)	9 (1)
국방부 (비율)	35 (100)	16 (46)	4 (11)	8 (23)	3 (9)	4 (11)
육 군 (비율)	697 (100)	49 (7)	151 (22)	483 (69)	12 (2)	2 (=0)
해 군 (비율)	143 (100)	16 (11)	43 (30)	83 (58)	0 (0)	1 (1)
공 군 (비율)	103 (100)	14 (7)	40 (19)	38 (18)	9 (4)	2 (1)

### ○ 분석

- 2020년 전체 공판사건 신분별 처리 중 병 63%, 준·부사관 24%, 장교 10%, 군무원 2%
- 국방부 장교 46%, 육군 병 69%, 해군 병 58%, 공군 준·부사관 19%

## 9. 2020년 공판사건 죄명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군형법범 (성범죄 제외)	주요형법	교통범죄	성범죄 (군형법 포함)	폭력범죄	군기/국보	기 타
합계 (비율)	978 (100)	143 (15)	143 (15)	96 (10)	295 (30)	126 (13)	5 (=0)	170 (17)
국방부 (비율)	35 (100)	3 (8)	13 (38)	2 (6)	6 (18)	3 (8)	5 (14)	3 (8)
육 군 (비율)	697 (100)	108 (15)	90 (13)	60 (9)	204 (29)	84 (12)	0 (0)	151 (22)
해 군 (비율)	143 (100)	14 (10)	28 (20)	15 (11)	49 (34)	28 (19)	0 (0)	9 (6)
공 군 (비율)	103 (100)	18 (17)	12 (12)	19 (18)	36 (35)	11 (11)	0 (0)	7 (7)

### ○ 분석

- 2020년 전체 공판사건 죄명별 처리 중 성범죄(군형법 포함) 30%,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5%, 폭력범죄 13%
- 전체 성범죄(군형법 포함) 사건 중 국방부 2%, 육군 69%, 해군 17%, 공군 12%
- 전체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사건 중 국방부 2%, 육군 76%, 해군 10%, 공군 12%
- 전체 폭력범죄 사건 중 국방부 2%, 육군 67%, 해군 22%, 공군 9%

## 10. 2020년 공판사건 신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합계	합계	978	0	72	254	326	55	44	19	205	3	
	장교	장성	1	0	0	0	0	0	0	0	0	0
		영관	39	0	6	10	7	2	5	1	3	0
		위관	55	0	4	10	20	6	2	1	0	0
	준·부사관	238	0	17	55	83	9	12	5	13	1	
	병	612	0	26	125	155	29	10	10	172	2	
	군무원	24	0	1	4	14	2	2	0	1	0	
	민간인	9	0	0	3	0	0	1	0	2	0	
국방부	소계	35		6	9	9	2	2		7		
	장교	장성	1			1						
		영관	11		4	2	2		1		2	
		위관	4		1	1	1				1	
	준·부사관	4			1	1	1	1				
	병	8			2	2				4		
	군무원	3				3						
민간인	4		1	2		1						
육 군	소계	697		44	167	230	39	26	16	175		
	장교	장성										
		영관	16		1	5	3	2	4		1	
		위관	33		3	7	15	5	2	1		
	준·부사관	151		15	45	61	5	9	5	11		
	병	483		24	107	146	25	10	10	161		
	군무원	12		1	2	5	2	1		1		
민간인	2			1					1			
해 군	소계	143		17	46	47	6	12	2	13		
	장교	장성										
		영관	5			2	1		2			
		위관	11		2	5	2		1		1	
	준·부사관	43		3	15	14	3	6	1	1		
	병	83		12	23	30	3	3	1	11		
	군무원											
민간인	1			1								
공 군	소계	103		5	32	40	8	4	1	10	3	
	장교	장성										
		영관	7		1	3	2			1		
		위관	7			2	4	1				
	준·부사관	40		2	9	21	3	2		2	1	
	병	38		2	16	7	4			7	2	
	군무원	9			2	6		1				
민간인	2						1		1			

### ○ 분석

- 2020년 전체 공판사건 처분별 처리 중 재산형 33%, 집행유예 26%, 자유형 7%, 선고유예 6%, 무죄 4%, 이송 21%
- 국방부 처분별 재산형 26%, 신분별 장교의 경우 자유형 31%, 집행유예 25%
- 육군 처분별 재산형 33%, 신분별 병의 경우 재산형 30%, 이송 33%
- 해군 처분별 재산형 33%, 신분별 병의 경우 재산형 36%, 이송 13%
- 공군 처분별 재산형 39%, 신분별 준·부사관의 경우 재산형 53%

## 11. 2020년 공판사건 처리일수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90	91~120	121~150	151~180	181~210	211~240	241~270	271~300	301 이상
합계	합계	805	163	208	170	99	74	41	24	7	7	12
	구 속	104	19	34	13	14	14	8	1	0	0	1
	불구속	701	144	174	157	85	60	33	23	7	7	11
국방부	소 계	35	4	7	6		5	3			1	9
	구 속	4		2			1					1
	불구속	31	4	5	6		4	3			1	8
육 군	소 계	524	73	149	119	74	53	25	19	6	4	2
	구 속	75	7	28	10	11	10	8	1			
	불구속	449	66	121	109	63	43	17	18	6	4	2
해 군	소 계	143	42	38	27	16	10	8	1	1		
	구 속	20	8	3	3	3	3					
	불구속	123	34	35	24	13	7	8	1	1		
공 군	소 계	103	44	14	18	9	6	5	4		2	1
	구 속	5	4	1								
	불구속	98	40	13	18	9	6	5	4		2	1

### ○ 분석

- 2020년 전체 공판사건 처리일수 중 120일 이내 처리 67%(구속 63%, 불구속 68%)
- 120일 이내 처리 국방부 49%, 육군 65%, 해군 75%, 공군 74%

## 12. 2020년 공판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합계 (비율)	54 (100)		1 (2)	5 (9)	9 (17)	33 (61)	6 (11)
국방부 (비율)	6 (100)					6 (100)	
육 군 (비율)	39 (100)		1 (3)	5 (13)	8 (20)	20 (51)	5 (13)
해 군 (비율)	4 (100)				1 (25)	3 (75)	
공 군 (비율)	5 (100)					4(80)	1(20)

### ○ 분석

- 2020년 전체 공판사건 자유형 처리 중 1년 이상 3년 미만 61%, 1년 미만 11%, 3년 이상 28%
- 자유형 처리 중 1년 이상 3년 미만 국방부 100%, 육군 51%, 해군 75%, 공군 80%
- 자유형 처리 중 3년 이상 육군 36%, 해군 25%

### 13. 2020년 공판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등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등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등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등	
합계	합계	328	6	17	11	0	4	1	0	12	29	19	1	9	6	8	18	36	58	6	2	3	76	0	3	2	1	0	0	0
	군형법위반	118	2	12	0	0	0	0	0	6	20	1	1	5	1	2	3	21	0	6	1	0	34	0	2	0	1	0	0	0
	형법위반	67	2	0	2	0	1	1	0	1	3	6	0	2	1	1	7	8	14	0	1	3	13	0	0	1	0	0	0	0
	성폭법위반	86	1	5	8	0	2	0	0	5	3	8	0	1	3	4	6	4	22	0	0	0	14	0	0	1	0	0	0	0
	아청법위반	54	1	0	1	0	1	0	0	0	3	3	0	0	1	1	2	3	21	0	0	0	15	0	1	0	0	0	0	0
	기타	3	0	0	0	0	0	0	0	0	0	1	0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국방부	소계	6	2	1	1								1									1								
	군형법위반	1											1																	
	형법위반	2	1																			1								
	성폭법위반	3	1	1	1																									
	아청법위반																													
	기타																													
육 군	소계	232	2	8	10		1	1		8	17	15		5	6	6	7	23	44	6		3	66		2	1	1			
	군형법위반	79	1	7						3	12			2	1	1		14		6			30		1		1			
	형법위반	45	1		2			1		1	2	5		1	1	1	4	4	9			3	10							
	성폭법위반	61		1	7		1			4	1	6		1	3	3	2	2	18				11			1				
	아청법위반	45			1						2	3			1	1	1	3	17				15		1					
	기타	2											1	1																
해 군	소계	54	1	5			2			3	4	4		2			9	6	10		2		6							
	군형법위반	20		4						2	3	1		1			3	2			1		3							
	형법위반	14					1					1		1			2	3	4		1		1							
	성폭법위반	14		1			1			1	1	2					3	1	2				2							
	아청법위반	5	1														1		3											
	기타	1																	1											
공 군	소계	36	1	3			1			1	8		1	1		2	2	7	4			3		1	1					
	군형법위반	18	1	1						1	5		1	1		1		5				1		1						
	형법위반	6									1						1	1	1			1			1					
	성폭법위반	8		2							1					1	1	1	2			1								
	아청법위반	4					1				1								1											
	기타																													

#### ○ 분석

- 2020년 전체 성범죄 처리 중 신분별 병 61%, 준·부사관 26%, 장교 12%, 군무원 2%, 처분별 재산형 27%, 집행유예 26%, 자유형 11%, 이송 26%
- 국방부 자유형 33%, 이송 17%,
- 육군 재산형 30%, 집행유예 22%, 이송 31%
- 해군 집행유예 28%, 재산형 26%, 이송 11%
- 공군 집행유예 53%, 재산형 14%, 이송 14%



## 14. 2020년 공판사건 무죄 현황

구 분	범죄유형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합계	43	11	16	13	2	1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3	0	2	1	0	0
	주요 형법범	9	0	3	6	0	0
	교통범죄	5	3	1	1	0	0
	성범죄(군형법 포함)	17	4	8	4	0	1
	폭력범죄	1	0	0	0	1	0
	군기법/국보법	1	1	0	0	0	0
	기타법률위반	7	3	2	1	1	0
국방부	소계	2	1	1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주요 형법범						
	교통범죄						
	성범죄(군형법 포함)	1		1			
	폭력범죄						
	군기법/국보법	1	1				
	기타법률위반						
육 군	소계	26	6	9	10	1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			1		
	주요 형법범	8		2	6		
	교통범죄	3	3				
	성범죄(군형법 포함)	8	1	5	2		
	폭력범죄						
	군기법/국보법						
	기타법률위반	6	2	2	1	1	
해 군	소계	12	4	5	3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2		2			
	주요 형법범	1		1			
	교통범죄	2		1	1		
	성범죄(군형법 포함)	6	3	1	2		
	폭력범죄						
	군기법/국보법						
	기타법률위반	1	1				
공 군	소계	3		1		1	1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주요 형법범						
	교통범죄						
	성범죄(군형법 포함)	2		1			1
	폭력범죄	1				1	
	군기법/국보법						
	기타법률위반						

### ○ 분석

- 2020년 전체 무죄 판결 중 신분별 준·부사관 37%, 병 30%, 장교 26%, 군무원 5%, 죄명별 성범죄(군형법 포함) 40%, 교통범죄 12%
- 전체 성범죄(군형법 포함) 사건 중 육군 47%, 해군 35%, 공군 12%, 국방부 6%

## 15. 2020년 공판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합계 (비율)	978 (100)	293 (30)	480 (49)	205 (21)
국방부 (비율)	35 (100)	19 (54)	9 (26)	7 (20)
육 군 (비율)	697 (100)	182 (26)	340 (49)	175 (25)
해 군 (비율)	143 (100)	60 (42)	70 (49)	13 (9)
공 군 (비율)	103 (100)	32 (31)	61 (59)	10 (10)

### ○ 분석

- 2020년 전체 공판사건 중 1심 확정 49%, 항소 30%(이송 제외한 항소율 39%)
- 이송 제외한 항소율 국방부 68%, 육군 35%, 해군 46%, 공군 34%

## 16. 2020년 공판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합계 (비율)	293 (100)	100 (34)	86 (29)	107 (37)
국방부 (비율)	19 (100)	7 (37)	3 (16)	9 (47)
육 군 (비율)	182 (100)	69 (38)	62 (34)	51 (28)
해 군 (비율)	60 (100)	18 (30)	20 (33)	22 (37)
공 군 (비율)	32 (100)	6 (19)	1 (3)	25 (78)

\* 항소율은 쌍방 항소 포함됨

### ○ 분석

- 2020년 전체 공판사건 항소인 현황 피고인 항소 34%, 군검사 항소 29%, 쌍방 항소 37%
- 피고인의 항소율 국방부 84%, 육군 66%, 해군 67%, 공군 97%

## 17. 2020년 공판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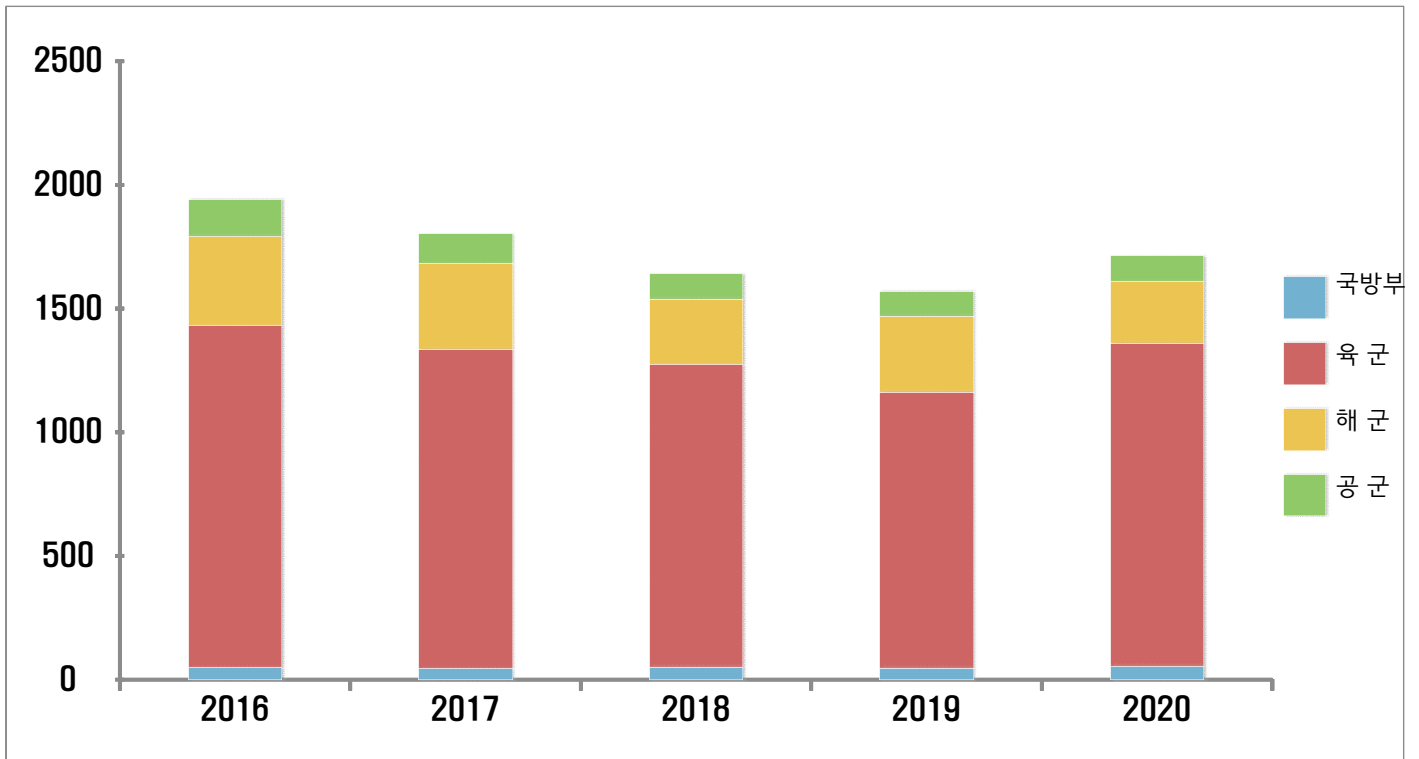
\* 이송사건은 변호인 선임현황에 미포함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합계 (비율)	749 (100)	470 (63)	88 (12)	382 (51)	279 (37)
국방부 (비율)	28 (100)	6 (21)	3 (10.5)	3 (10.5)	22 (79)
육 군 (비율)	506 (100)	346 (68)	68 (13)	278 (55)	160 (32)
해 군 (비율)	130 (100)	74 (57)	13 (10)	61 (47)	56 (43)
공 군 (비율)	85 (100)	44 (52)	4 (5)	40 (47)	41 (48)

### ○ 분석

- 2020년 전체 공판사건 변호인 현황 국선 63%, 사선 37%
- 사선변호인 선임률 국방부 79%, 육군 32%, 해군 43%, 공군 48%
- 국선변호인 중 변호사 선정률 국방부 50%, 육군 20%, 해군 18%, 공군 9%

## 18. 최근 5년간 약식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8,665 (100)	235 (3)	6,319 (73)	1,528 (17)	583 (7)
2016년	명 (비율)	1,940 (100)	46 (2)	1,382 (71)	362 (19)	150 (8)
2017년	명 (비율)	1,802 (100)	43 (2)	1,292 (72)	345 (19)	122 (7)
2018년	명 (비율)	1,641 (100)	49 (3)	1,223 (75)	265 (16)	104 (6)
2019년	명 (비율)	1,569 (100)	45 (3)	1,116 (71)	307 (20)	101 (6)
2020년	명 (비율)	1,713 (100)	52 (3)	1,306 (76)	249 (15)	106 (6)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공판사건 중 육군 73%, 해군 17%, 공군 7%, 국방부 3%
- 2020년 전년 대비 국방부·육군·공군 사건 증가, 해군 사건 감소

## 19. 2020년 약식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비율)	1,713 (100)	131 (8)	504 (29)	1,022 (60)	55 (3)	1 (=0)
국방부 (비율)	52 (100)	11 (21)	15 (29)	15 (29)	11 (21)	0 (0)
육 군 (비율)	1,306 (100)	93 (7)	331 (25)	856 (66)	25 (2)	1 (=0)
해 군 (비율)	249 (100)	10 (4)	111 (44)	117 (47)	11 (5)	0 (0)
공 군 (비율)	106 (100)	17 (8)	47 (23)	34 (16)	8 (4)	0 (0)

### ○ 분석

- 2020년 전체 약식사건 신분별 병 60%, 준·부사관 29%, 장교 8%, 군무원 3%
- 국방부 준·부사관 및 병 29%, 육군 병 66%, 해군 병 47%, 공군 준·부사관 23%

## 20. 2020년 약식사건 죄명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군형법범 (성범죄 제외)	주요 형법	교통범죄	성범죄 (군형법 포함)	폭력범죄	군기/국보	기타 법률
합계 (비율)	1,713 (100)	43 (2)	229 (13)	550 (32)	98 (6)	216 (13)	0 (0)	577 (34)
국방부 (비율)	52 (100)	0 (0)	6 (12)	25 (48)	5 (10)	8 (15)	0 (0)	8 (15)
육 군 (비율)	1,306 (100)	17 (1)	148 (11)	380 (30)	83 (6)	159 (12)	0 (0)	519 (40)
해 군 (비율)	249 (100)	18 (7)	51 (21)	106 (43)	5 (2)	36 (14)	0 (0)	33 (13)
공 군 (비율)	106 (100)	8 (7)	24 (23)	39 (38)	5 (4)	13 (12)	0 (0)	17 (16)

### ○ 분석

- 2020년 전체 약식사건 죄명별 교통범죄 32%, 폭력범죄 13%
- 전체 교통범죄 사건 중 국방부 5%, 육군 69%, 해군 19%, 공군 7%

## 21. 2020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합계 (비율)	1,907 (100)	1,669 (88)	194 (10)	44 (2)
국방부 (비율)	52 (100)	42 (81)	10 (19)	0 (0)
육 군 (비율)	1,476 (100)	1,266 (86)	170 (11)	40 (3)
해 군 (비율)	273 (100)	259 (95)	12 (4)	2 (1)
공 군 (비율)	106 (100)	102 (96)	2 (2)	2 (2)

### ○ 분석

- 2020년 전체 약식사건 중 약식명령 88%, 공판절차 회부 10%, 이송 2%
- 2020년 이송 제외한 공판절차 회부를 국방부 19%, 육군 12%, 해군 4%, 공군 2%

## 22. 2020년 영장사건 처리 현황

### ■ 구속영장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합계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10	8 (80)	133	99 (74)	30	24 (80)	10	10 (100)	183	141 (77)

#### ○ 분석

- 2020년 전체 구속영장 발부율 77%
- 구속영장 발부율 국방부 80%, 육군 74%, 해군 80%, 공군 100%

### ■ 체포영장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합계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0	0 (0)	17	13 (77)	5	5 (100)	7	7 (100)	29	25 (86)

#### ○ 분석

- 2020년 전체 체포영장 발부율 86%
- 체포영장 발부율 육군 77%, 해군 100%, 공군 100%

### ■ 압수·수색영장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합계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70	62 (89)	368	335 (91)	101	92 (91)	119	116 (97)	658	605 (92)

#### ○ 분석

- 2020년 전체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92%
-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국방부 89%, 육군 91%, 해군 91%, 공군 97%

## 23. 2020년 구속 관련 신청사건 처리 현황

### ■ 보석허가청구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합계	
청 구	허 가 (허가율)	청 구	허 가 (허가율)	청 구	허 가 (허가율)	청 구	허 가 (허가율)	청 구	허 가 (허가율)
1	0 (0)	6	2 (33)	0	0 (0)	2	0 (0)	9	2 (22)

#### ○ 분석

- 2020년 전체 보석허가청구 허가율 22%
- 보석허가청구 허가율 육군 33%

### ■ 구속적부심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합계	
청 구	인 용 (인용률)	청 구	인 용 (인용률)	청 구	인 용 (인용률)	청 구	인 용 (인용률)	청 구	인 용 (인용률)
1	0 (0)	8	0 (0)	2	1 (50)	1	0 (0)	12	1 (8)

#### ○ 분석

- 2020년 전체 구속적부심청구 인용률 8%

### ■ 형사보상청구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합계	
청 구	허 가 (허가율)	청 구	허 가 (허가율)	청 구	허 가 (허가율)	청 구	허 가 (허가율)	청 구	허 가 (허가율)
1	1 (100)	7	7 (100)	0	0 (0)	2	2 (100)	10	10 (100)

#### ○ 분석

- 2020년 전체 형사보상청구 허가율 100%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1. 2020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명 (비율)	112 (100)	61 (54.4)	51 (45.5)

### 1-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5년 평균을	484 (100)	253 (51.6)	231 (48.4)
2016년	97 (100)	54 (55.7)	43 (44.3)
2017년	88 (100)	45 (51.1)	43 (48.8)
2018년	105 (100)	55 (52.3)	50 (47.6)
2019년	82 (100)	38 (46.3)	44 (53.6)
2020년	112 (100)	61 (54.4)	51 (45.5)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51.6%, 약식 사건 48.4%
- 전년 대비 공판 사건 비율 대폭 증가

## 2. 2020년 형사사건 죄명별·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합계	61	51	26	10	8	15	12	15	9	11	6	0
일반포로인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2				1		1				
	군용물에관한죄											
	초병에관한죄	1									1	
	성범죄(군인등)	6		2		2				2		
기타												
주요포로인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2		1		1						
	문서인장죄	5		2		1			2			
	살인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등의죄											
	사기공갈죄											
	횡령배임죄	2	1	2			1					
성폭속에관한죄												
기타	2	4				1	2	3				
일반포로인	교통법위반	2	10		4		2	1		1	4	
	도교법위반		2		1						1	
	도교법위반(음주)	2	13	1	2			1	1	1	4	
	특가법위반(도주)	1								1		
	특가법위반(치사상)											
중포로인	형법위반	7	1	3		1		1	1	2		
	성폭법위반	4	1	3	1			1				
	아청법위반	3	3	1				2	3			
	성매매특별법위반											
기타												
특별포로인	상해, 폭행죄		5				2		2		1	
	상해등치사죄											
	폭처법위반	5	3	1				4	3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8		3								5	
기타법률위반	9	8	7	2	2	3		2		1		

#### ○ 분석

- 2020년 접수 중 교통범죄 26.7%, 성범죄(군형법 포함) 22.3%, 주요 형법범 14.2%, 폭력범죄 11.6%,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2.6%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22.3%



### 3. 2020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112 (100)	36 (32.4)	23 (20.5)	27 (24.1)	20 (17.8)	6 (5.3)

#### 3-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483 (100)	210 (43.4)	93 (19.2)	81 (16.7)	91 (18.8)	8 (1.6)
2016년	명 (비율)	97 (100)	47 (48.4)	19 (19.5)	11 (11.3)	19 (19.5)	1 (1)
2017년	명 (비율)	88 (100)	38 (43.1)	15 (17)	13 (14.7)	21 (23.8)	1 (1.1)
2018년	명 (비율)	105 (100)	57 (54.2)	18 (17.1)	12 (11.4)	18 (17.1)	0 (0)
2019년	명 (비율)	81 (100)	32 (40.2)	18 (21.9)	18 (21.9)	13 (15.8)	0 (0)
2020년	명 (비율)	112 (100)	36 (32.4)	23 (20.5)	27 (24.1)	20 (17.8)	6 (5.3)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현황은 장교 43.4%, 준·부사관 19.2%, 군무원 18.8%, 병 16.7%
- 2020년 전년 대비 민간인 사건 증가
- 2020년 접수 중 장교 32.1%, 병 24.1%, 준·부사관 20.5%, 군무원 17.8%, 민간인 5.3%
- 2020년 전년 대비 접수사건 38.2% 증가

### 4. 2020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61 (100)	26 (42.6)	8 (13.1)	12 (19.6)	9 (14.7)	6 (9.8)

#### 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53 (100)	129 (50.9)	39 (15.4)	36 (14.2)	41 (16.2)	8 (3.1)
2016년	명 (비율)	54 (100)	27 (50)	9 (16.6)	8 (14.8)	9 (16.6)	1 (1.8)
2017년	명 (비율)	45 (100)	20 (44.4)	7 (15.5)	7 (15.5)	10 (22.2)	1 (2.2)
2018년	명 (비율)	55 (100)	36 (65.4)	8 (14.5)	3 (5.4)	8 (14.5)	0 (0)
2019년	명 (비율)	38 (100)	20 (52.6)	7 (18.4)	6 (15.7)	5 (13.1)	0 (0)
2020년	명 (비율)	61 (100)	26 (42.6)	8 (13.1)	12 (19.6)	9 (14.7)	6 (9.8)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현황은 장교 50.9%, 준·부사관 15.4%, 병 14.2%, 군무원 16.2%, 민간인 3.1%
- 연도별 각 신분별 접수 현황은 계속 변동
- 2020년 접수 중 장교 42.6%, 준·부사관 13.1%, 병 19.6%, 군무원 14.7%
- 2020년 전년 대비 접수사건 60.5% 상승

## 5. 2020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87	35	16	4	8	3	4	52	11	15	15	11	0
(비율)	(100)	(40.2)	(18.4)	(4.6)	(9.2)	(3.4)	(4.6)	(59.8)	(12.6)	(17.2)	(17.2)	(12.6)	(0)

### 5-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	466	231	120	36	34	35	6	235	83	55	45	52	0
(비율)	(100)	(49.6)	(25.8)	(7.7)	(7.3)	(7.5)	(1.3)	(50.4)	(17.8)	(11.8)	(9.6)	(11.1)	(0)
2016년	92	46	28	3	9	5	1	46	21	11	3	11	0
(비율)	(100)	(50)	(30.4)	(3.2)	(9.7)	(5.4)	(1)	(50)	(22.8)	(11.9)	(3.2)	(11.9)	(0)
2017년	98	55	22	13	9	11	0	43	18	8	5	12	0
(비율)	(100)	(56.1)	(22.4)	(13.2)	(9.1)	(11.2)	(0)	(43.8)	(18.3)	(8.1)	(5.1)	(12.2)	(0)
2018년	93	44	27	6	3	7	1	49	20	10	10	9	0
(비율)	(100)	(47.3)	(29)	(6.4)	(3.2)	(7.5)	(0)	(52.7)	(21.6)	(10.7)	(10.7)	(9.7)	(0)
2019년	96	51	27	10	5	9	0	45	13	11	12	9	0
(비율)	(100)	(53.1)	(28.1)	(10.4)	(5.2)	(9.3)	(0)	(46.8)	(13.5)	(11.4)	(12.5)	(9.3)	(0)
2020년	87	35	16	4	8	3	4	52	11	15	15	11	0
(비율)	(100)	(40.2)	(18.4)	(4.6)	(9.2)	(3.4)	(4.6)	(59.8)	(12.6)	(17.2)	(17.2)	(12.6)	(0)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처리 비율은 접수 비율과 유사
- 2020년 처리 사건 중 장교 31%, 준·부사관 21.8%, 군무원 16%, 병 26.4%
- 2020년 전년 대비 장교 사건처리 비율 67.5% 감소

## 6. 2020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명	87	35	0	6	9	9	2	2	0	7	0	52	42	10
(비율)	(100)	(40.2)	(0)	(6.8)	(10.3)	(10.3)	(2.2)	(2.2)	(0)	(8)	(0)	(59.8)	(48.3)	(11.5)

\* 약식사건의 공판절차 회부 및 이송 '기타', 정식재판청구 '벌금'에 기재

### 6-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5년 평균	466	231	0	49	46	65	7	27	1	36	0	235	207	28
(비율)	(100)	(49.6)	(0)	(10.5)	(9.9)	(13.9)	(1.5)	(5.8)	(0.2)	(7.7)	(0)	(50.4)	(44.4)	(6)
2016년	92	46	0	14	12	11	3	1	1	4	0	46	43	3
(비율)	(100)	(50)	(0)	(15.3)	(13.1)	(11.9)	(3.3)	(1)	(1)	(4.4)	(0)	(50)	(46.8)	(3.2)
2017년	98	55	0	11	11	15	1	8	0	9	0	43	41	2
(비율)	(100)	(56.1)	(0)	(11.2)	(11.2)	(15.3)	(1)	(8.1)	(0)	(9.1)	(0)	(43.8)	(41.8)	(2)
2018년	93	44	0	13	5	9	0	7	0	10	0	49	46	3
(비율)	(100)	(47.3)	(0)	(13.9)	(5.3)	(9.6)	(0)	(7.5)	(0)	(10.7)	(0)	(52.7)	(49.5)	(3.2)
2019년	96	51	0	5	9	21	1	9	0	6	0	45	35	10
(비율)	(100)	(53.1)	(0)	(5.2)	(9.3)	(21.8)	(1)	(9.3)	(0)	(6.2)	(0)	(46.8)	(36.4)	(10.4)
2020년	87	35	0	6	9	9	2	2	0	7	0	52	42	10
(비율)	(100)	(40.2)	(0)	(6.8)	(10.3)	(10.3)	(2.2)	(2.2)	(0)	(8)	(0)	(59.8)	(48.3)	(11.5)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처리 비율과 유사  
공판 사건 중 재산형 28.1%, 자유형 21.2%, 집행유예 19.9%, 무죄 11.6%
- 연도별 분석결과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의 처리 비율 계속 변동,  
공판 사건 중 무죄 5.7%, 선고유예 1.5%
- 2020년 공판 사건 중 집행유예 및 재산형 각 25.7%, 자유형 17.1%, 무죄 및 선고유예 각 5.7%
- 2020년 전년 대비 공판 사건 중 재산형 대폭 감소, 실형 소폭 증가

## 7. 2020년 형사사건 죄명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87	35	0	6	9	9	2	2	0	7	0	52	42	10
군형법범	간첩이적죄	0												
	군무이탈죄	0												
	상관에관한죄	2	2		1		1							
	군용물에관한죄	0												
	초병에관한죄	1	1				1							
	성범죄(군인등)	1	1					1						
	기타	0												
주요형법범	내란소요죄	0												
	뇌물에관한죄	4	4		3					1				
	문서인장죄	2	1			1						1	1	
	살인죄	0												
	과실치사상죄	0												
	절도강도죄	0												
	사기공갈죄	1	1		1									
	횡령배임죄	1											1	1
	성폭속에관한죄	0												
	기타	11	7		2	1	4					4	2	2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10										10	9	1
	도교법위반	2										2	2	
	도교법위반(음주)	14	1							1		13	13	
	특가법위반(도주)	1	1				1							
	특가법위반(치사상)	0												
성범죄	형법위반	3	2		1					1		1	1	
	성폭법위반	3	3		1	1	1							
	아청법위반	4										4	2	2
	성매매특별법위반	0												
	기타	0												
폭력범죄	상해, 폭행죄	5										5	5	
	상해등치사	0												
	폭처법위반	6	3							3		3		3
국가보안법위반	0													
군사기밀보호법위반	5	5		2	2			1						
기타 법률위반	11	3				2				1		8	6	2

### ○ 분석

- 교통범죄 31%, 주요형법범 22.8%, 폭력범죄 각 12.6%, 성범죄(군형법 포함) 11.4%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92.5%

## 8. 2020년 형사사건 신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87	35	0	6	9	9	2	2	0	7	0	52	51	1
장 교	장성	1	1		1							0		
	영관	18	11		4	2	2		1		2	7	6	1
	위관	8	4		1	1	1				1	4	4	
준·부사관	19	4			1	1	1	1				15	15	
병	23	8			2	2				4		15	15	
군무원	14	3				3						11	11	
민간인	4	4		1	2		1					0		

### ○ 분석

-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및 재산형 각 25.7%, 자유형 17.1%, 선고유예 및 무죄 5.7%
- 장교 공판 사건의 경우 자유형 31.2%, 무죄 6.2%
- 준·부사관 공판 사건의 경우 자유형 25%
- 군무원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100%

## 9. 2020년 형사공판 사건 처리일수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90	91~120	121~150	151~180	181~210	211~240	241~270	271~300	301 이상
합계	35	4	7	6	0	5	3	0	0	1	9
구 속	4		2			1					1
불구속	31	4	5	6		4	3			1	8

### ○ 분석

- 공판 사건 중 구속 사건 11.4%, 불구속 사건 88.5%
- 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50%, 151일 이상 180일 이내 25% 처리, 301일 이상 25% 처리
- 불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48.3%, 121일 이상 300일 이내 25.8%, 201일 이상 25.8% 처리

## 10. 2020년 형사공판(정식) 사건 재판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 계		35	16	4	8	3	4
확 정	소계	9	1	2	4	0	2
	유죄	9	1	2	4		2
	무죄	0					
	면소	0					
	공소기각판결	0					
	공소기각결정	0					
상 소	소계	19	12	2	0	3	2
	쌍방항소	7	6	1			
	피고인항소	9	4			3	2
	군검사항소	3	2	1			
이송		7	3		4		

### ○ 분석

- 공판 사건 중 1심 확정 25.7%, 상소율 54.2%
- 공판 확정사건 중 유죄 100%
- 신분별 상소율 장교 63.1%, 병 15.7%, 준·부사관 및 군무원 각 10.5%

## 11. 2020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6 (100)	0 (0)	0 (0)	0 (0)	0 (0)	6 (100)	0 (0)

### 11-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49 (100)	0 (0)	0 (0)	5 (10.2)	6 (12.2)	32 (65.4)	6 (12.2)
2016년	명 (비율)	14 (100)	0 (0)	0 (0)	1 (7.1)	2 (14.3)	10 (71.5)	1 (7.1)
2017년	명 (비율)	11 (100)	0 (0)	0 (0)	2 (18.1)	0 (0)	6 (54.5)	3 (27.2)
2018년	명 (비율)	13 (100)	0 (0)	0 (0)	2 (15.4)	1 (7.7)	8 (61.5)	2 (15.4)
2019년	명 (비율)	5 (100)	0 (0)	0 (0)	0 (0)	3 (60)	2 (40)	0 (0)
2020년	명 (비율)	6 (100)	0 (0)	0 (0)	0 (0)	0 (0)	6 (100)	0 (0)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3년 이상 22.4%, 1년 이상 3년 미만 65.3%, 1년 미만 12.2%
- 2020년 자유형 처리 중 1년 이상 3년 미만 100%

## 12. 2020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28 (100)	6 (21.4)	3 (10.7)	3 (10.7)	22 (78.6)

\* 이송 및 정식재판취하 사건 미포함

### 12-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92 (100)	38 (19.7)	9 (4.6)	29 (15.1)	154 (80.3)
2016년	명 (비율)	40 (100)	9 (22.5)	0 (0)	9 (22.5)	31 (77.5)
2017년	명 (비율)	46 (100)	6 (13.1)	1 (2.2)	5 (10.9)	40 (86.9)
2018년	명 (비율)	34 (100)	6 (17.6)	2 (5.9)	4 (11.7)	28 (82.4)
2019년	명 (비율)	44 (100)	11 (25)	3 (6.8)	8 (18.1)	33 (75)
2020년	명 (비율)	28 (100)	6 (21.4)	3 (10.7)	3 (10.7)	22 (78.6)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80.2%, 국선변호인의 민간변호사 선정률 4.6%
- 2020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78.6%, 국선변호인의 군법무관 선정률 10.7%
- 2020년 전년 대비 사선변호인 선임률 소폭 증가

### 13. 2020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합계	6	2	1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군형법위반	1												1															
형법위반	2	1																				1						
성폭법위반	3	1	1	1																								
아청법위반	0																											
기타	0																											

### 13-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5년 평균	합계	26	2	1	3	0	0	0	1	3	1	0	2	0	0	0	1	3	1	0	0	3	3	2	0	0	0	0	0
	군형법위반	8	0	0	0	0	0	0	1	1	0	0	2	0	0	0	1	0	0	0	0	2	1	0	0	0	0	0	0
	형법위반	5	1	0	1	0	0	0	0	0	0	0	0	0	0	1	0	1	0	0	0	1	0	0	0	0	0	0	0
	성폭법위반	8	1	1	2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0	0	2	0	0	0	0	0
	아청법위반	4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6년	소계	8	0	0	1	0	0	0	0	2	0	0	0	0	0	0	1	1	1	0	0	0	2	0	0	0	0	0	
	군형법위반	4								1							1					2							
	형법위반	2			1											1													
	성폭법위반	0																											
	아청법위반	2								1								1											
	기타	0																											
2017년	소계	6	0	0	1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1	1	1	0	0	0	0	0
	군형법위반	1																					1						
	형법위반	0																											
	성폭법위반	4			1						1							1						1					
	아청법위반	1																				1							
	기타	0																											
2018년	소계	5	0	0	0	0	0	0	1	1	0	0	1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0
	군형법위반	2							1				1																
	형법위반	1																1											
	성폭법위반	1																						1					
	아청법위반	1								1																			
	기타	0																											
2019년	소계	6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1	0	0	2	0	1	0	0
	군형법위반	1																				1							
	형법위반	2																							1	1			
	성폭법위반	3									1							1							1				
	아청법위반	0																											
	기타	0																											
2020년	소계	6	2	1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군형법위반	1											1																
	형법위반	2	1																			1							
	성폭법위반	3	1	1	1																								
	아청법위반	0																											
	기타	0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성범죄 중 군형법위반 및 성폭법위반 각 30.7%, 형법위반 19.2%, 병 30.7%, 준·부사관 26.9%, 장교 23%, 군무원 19.2% 집행유예 및 재산형 26.9%, 자유형 23%, 무죄 7.6%
- 연도별 분석결과 신분별 처리 비율 계속 변동
- 2020년 성폭법위반 50%, 형법위반 33.3%, 군형법위반 16.6%
- 2020년 장교 66.6%, 준·부사관 및 병 각 16.6%
- 2020년 자유형 33.3%, 집행유예, 재산형 및 무죄 각 16.6%

#### 14. 2020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재산형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4 (100)	1 (25)	2 (50)	1 (25)	0 (0)	0 (0)	0 (0)

#### 1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재산형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6 (100)	2 (33.3)	3 (50)	1 (16.7)	0 (0)	0 (0)	0 (0)
2016년	명 (비율)	1 (100)	1 (100)	0 (0)	0 (0)	0 (0)	0 (0)	0 (0)
2017년	명 (비율)	0 (100)	0 (0)	0 (0)	0 (0)	0 (0)	0 (0)	0 (0)
2018년	명 (비율)	1 (100)	0 (0)	1 (100)	0 (0)	0 (0)	0 (0)	0 (0)
2019년	명 (비율)	0 (100)	0 (0)	0 (0)	0 (0)	0 (0)	0 (0)	0 (0)
2020년	명 (비율)	4 (100)	1 (25)	2 (50)	1 (25)	0 (0)	0 (0)	0 (0)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민간인 처리 중 집행유예 50%, 자유형 33.3%



## 15. 2020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명 (비율)	35 (100)	19 (54.2)	9 (25.8)	7 (20)

### 15-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31 (100)	155 (67.1)	39 (16.8)	37 (16.1)
2016년	명 (비율)	46 (100)	31 (67.3)	10 (21.7)	5 (11)
2017년	명 (비율)	55 (100)	36 (65.5)	10 (18.2)	9 (16.3)
2018년	명 (비율)	44 (100)	31 (70.5)	3 (6.8)	10 (22.7)
2019년	명 (비율)	51 (100)	38 (74.5)	7 (13.7)	6 (11.7)
2020년	명 (비율)	35 (100)	19 (54.2)	9 (25.8)	7 (20)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항소 67%, 확정 16.8%, 이송 16%
- 연도별 분석결과 항소 비율 계속 변동
- 2020년 항소 54.2%, 확정 25.7%, 이송 20%
- 2020년 전년 대비 항소비율 하락

## 16. 2020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19 (100)	7 (36.8)	3 (15.7)	9 (47.3)

### 16-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55 (100)	45 (29)	27 (17.4)	83 (53.6)
2016년	명 (비율)	31 (100)	14 (45.2)	0 (0)	17 (54.8)
2017년	명 (비율)	36 (100)	10 (27.7)	9 (25)	17 (47.2)
2018년	명 (비율)	31 (100)	2 (6.4)	7 (22.5)	22 (70.9)
2019년	명 (비율)	38 (100)	12 (31.5)	8 (21)	18 (47.3)
2020년	명 (비율)	19 (100)	7 (36.8)	3 (15.7)	9 (47.3)

\* 항소율은 쌍방 항소 포함됨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피고인의 항소율 29%, 군검사의 항소율 17.4%
- 2020년 피고인의 항소율 36.8%, 군검사의 항소율 15.7%
- 2020년 전년 대비 피고인의 항소율 상승, 군검사의 항소율 하락

## 17. 2020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명 (비율)	52 (100)	42 (80.8)	10 (19.2)	0 (0)

### 17-1. 최근 5년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35 (100)	207 (88)	25 (10.7)	3 (1.3)
2016년	명 (비율)	46 (100)	43 (93.5)	2 (4.3)	1 (2.2)
2017년	명 (비율)	43 (100)	41 (95.3)	2 (4.7)	0 (0)
2018년	명 (비율)	49 (100)	46 (93.9)	3 (6.1)	0 (0)
2019년	명 (비율)	45 (100)	35 (77.7)	8 (17.7)	2 (4.4)
2020년	명 (비율)	52 (100)	42 (80.8)	10 (19.2)	0 (0)

#### ○ 분석

- 최근 5년 약식 사건 중 약식명령 88%, 공판절차 회부 10.6%
- 연도별 분석결과 약식명령 연도별 계속 변동
- 2020년 약식명령 80.7%, 공판절차 회부 19.2%, 전년 대비 공판절차 회부 건수 소폭 상승

## 18. 2020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구속영장	10	8	2	80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70	62	8	88.5

### 18-1. 최근 5년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5년 평균율	구속영장	74	59	15	79.7
	체포영장	10	9	1	90
	압수·수색영장	780	729	51	93.4
2016년	구속영장	28	23	5	82
	체포영장	9	9		100
	압수·수색영장	184	180	4	97.8
2017년	구속영장	8	8		100
	체포영장				0
	압수·수색영장	189	180	9	95.2
2018년	구속영장	16	14	2	87.5
	체포영장	1		1	0
	압수·수색영장	196	178	18	90.8
2019년	구속영장	12	6	6	50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141	129	12	91.4
2020년	구속영장	10	8	2	80
	체포영장	0			
	압수·수색영장	70	62	8	88.5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79.7%, 체포영장 90%, 압수·수색영장 93.4%
- 연도별 분석결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 매년 증가하다 2018년 이후 감소 추세
- 2020년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80%, 압수·수색영장 88.5%,  
전년 대비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 대폭 감소(코로나 19 영향)

## 19. 2020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합계	10	6	2	2	8	2
장 교	6	3	2	1	5	1
준·부사관						
병						
군무원	3	3			2	1
기 타	1			1	1	

### 19-1. 최근 5년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5년 평균을	합계	74	20	54	10	63	23
	장 교	40	7	30	3	34	6
	준·부사관	12	2	8	2	9	3
	병	8	6	1	1	3	5
	군무원	13	5	7	1	10	3
	민간인	1	0	8	3	7	6
2016년	소계	28	9	16	3	21	7
	장 교	12	4	7	1	10	2
	준·부사관	4		4		4	
	병	6	4	1	1	3	3
	군무원	6	1	4	1	4	2
	민간인						
2017년	소계	8	0	8	0	8	0
	장 교	4		4		4	
	준·부사관	1		1		1	
	병						
	군무원	3		3		3	
	민간인						
2018년	소계	16	3	20	3	20	8
	장 교	12		11	1	11	1
	준·부사관	3	2	1		2	1
	병						
	군무원	1	1			1	
	민간인			8	2	6	6
2019년	소계	12	2	8	2	6	6
	장 교	6		6		4	2
	준·부사관	4		2	2	2	2
	병	2	2			0	2
	군무원						
	민간인						
2020년	소계	10	6	2	2	8	2
	장 교	6	3	2	1	5	1
	준·부사관						
	병						
	군무원	3	3			2	1
	민간인	1			1	1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청구율 중 장교 54%, 군무원 17.5%, 준·부사관 16.2%, 병 10.8%, 민간인 1.3%  
발부율 장교 85%, 준·부사관 75%, 병 37.5%, 군무원 76.9%
- 2020년 전년 대비 구속 사건 소폭 하락

## 20. 2020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허가/인용	기각	인용률
보석허가청구	1		1	0
구속적부심	1		1	0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1		1	0

\* 기타: 구속집행정지, 접견금지청구, 열람등사청구, 증거보전 및 상소권 회복 청구, 형의실효신청

### 20-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5년 평균율	보석청구	18	5	13	27.8
	구속적부심	9	0	9	0
	형사보상청구	8	7	1	87.5
	기 타	30	21	9	70
2016년	보석청구	6	1	5	16.7
	구속적부심	3		3	0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11	6	5	54.5
2017년	보석청구	3	1	2	33.3
	구속적부심	1		1	100
	형사보상청구	3	3		100
	기 타	9	7	2	77.7
2018년	보석청구	6	2	4	33.3
	구속적부심	2		2	0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7	7		100
2019년	보석청구	2	1	1	50
	구속적부심	2		2	0
	형사보상청구	2	1	1	50
	기 타	2	1	1	50
2020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1		1	0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1		1	0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보석청구 허가율 27.7%, 구속적부심 인용률 0%, 형사보상청구 인용률 87.5%
- 연도별 분석결과 보석청구 허가율 계속 변동
- 2020년 기타 신청사건 계속 변동

## 21. 2020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약식사건 포함)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61	20	17	9	14	1
원판결확인	61	20	17	9	14	1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 21-1.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약식사건 포함)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325	136	71	48	68	2
	원판결확인	325	136	71	48	68	2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6년	소계	68	35	12	7	13	1
	원판결확인	68	35	12	7	13	1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7년	소계	67	29	15	8	15	0
	원판결확인	67	29	15	8	15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8년	소계	68	32	12	11	13	0
	원판결확인	68	32	12	11	13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9년	소계	61	20	15	13	13	0
	원판결확인	61	20	15	13	13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20년	소계	61	20	17	9	14	1
	원판결확인	61	20	17	9	14	1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 ○ 분석

- 최근 5년 관할관 확인조치 원판결확인 100%

## 22. 2020년 무죄 선고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0	1	1	0	0	0
근형범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군용물에관한죄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등)			1			
	기타						
주요형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살인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죄						
	사기공갈죄						
	횡령배임죄						
	성폭속에관한죄						
	기타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도교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						
	특가법위반(도주)						
	특가법위반(치사상)						
성범죄	형법위반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						
	성매매특별법위반						
	기타						
폭력범죄	상해,폭행죄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기타법률위반							

## 23. 2020년 즉결심판 현황

사건번호	계급	죄명	결과
2020조1	육군대령	장물취득	벌금 50,000원
2020조2	육군중령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100,000원



육군 군사법원

# □ 육군 군사법원

## 1. 2020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명 (비율)	2,287 (100)	955 (42)	1,332 (58)

### 1-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5년 평균을	11,227 (100)	4,799 (43)	6,428 (57)
2016년	2,499 (100)	1,162 (46.4)	1,337 (53.6)
2017년	2,231 (100)	945 (42.4)	1,286 (57.6)
2018년	2,096 (100)	859 (41)	1,237 (59)
2019년	2,114 (100)	878 (42)	1,236 (58)
2020년	2,287 (100)	955 (42)	1,332 (58)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사건 43%, 약식사건 57%
- 2020년 접수 중 공판사건 42%, 전년 대비 공판사건 비율 유사

## 2. 2020년 형사사건 죄명별·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합계	955	1,332	78	97	222	335	632	874	20	25	3	1
간행요죄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30			4		26					
	상관에관한죄	80		4		14	61		1			
	군용물에관한죄	13	1	2		9	1	2				
	초병에관한죄	15	4	1	1	3	1	9	2			2
	성범죄(군인등)	106		12		28		63		3		
기타	12	12	2	2	6	6	4	4				
주요형법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2		1		1						
	문서인장죄	8	4			2	2	6	2			
	살인죄	2				1		1				
	과실치사상죄	5	3	3		1	2	1	1			
	절도강도의죄	28	22	2		6	7	20	15			
	사기공갈죄	66	106	1		7	5	58	101			
	횡령배임죄	9	11	2		2	2	5	9			
	성폭속에관한죄	3	4			1	1	2	3			
기타												
특별법위반	교통법위반	24	62	3	12	13	34	8	12		4	
	도교법위반	11	36	2	4	5	14	4	16		2	
	도교법위반(음주)	28	275	5	45	9	159	11	60	3	11	
	특가법위반(도주)	20	13	2	4	10	4	7	5	1		
	특가법위반(치사상)											
중형법위반	형법위반	71	11	10		10	3	49	8	1		1
	성폭법위반	64	40	6	5	17	2	41	32		1	
	아청법위반	49	32		1	6	1	42	30	1		
	성매매특별법위반	3	1			2	1	1				
기타												
법정법위반	상해, 폭행죄	88	142	6	6	24	29	57	106	1	1	
	상해등치사죄											
	폭처법위반	26	23			1	1	25	22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2		1		1							
기타 법률위반	190	530	13	17	39	60	129	446	9	6		1

#### ○ 분석

- 2020년 접수 중 교통범죄 21%, 성범죄(군형법 포함) 17%, 폭력범죄 및 주요형법범 12%,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7%
- 교통범죄 중 약식사건 82%



### 3. 2020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2,287 (100)	175 (7.7)	557 (24.4)	1,506 (65.9)	45 (2)	4 (0.2)

#### 3-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1,234 (100)	1,066 (9.4)	3,005 (26.8)	6,908 (61.5)	222 (2)	33 (0.3)
2016년	명 (비율)	2,506 (100)	252 (10.1)	664 (26.5)	1,528 (61)	54 (2.2)	8 (0.3)
2017년	명 (비율)	2,231 (100)	213 (9.5)	644 (28.8)	1,327 (59.4)	39 (1.7)	8 (0.3)
2018년	명 (비율)	2,096 (100)	205 (9.8)	585 (27.9)	1,246 (59.4)	53 (2.5)	7 (0.3)
2019년	명 (비율)	2,114 (100)	221 (10.4)	555 (26.2)	1,301 (61.5)	31 (1.5)	6 (0.3)
2020년	명 (비율)	2,287 (100)	175 (7.7)	557 (24.4)	1,506 (65.9)	45 (2)	4 (0.2)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장교 9.5%, 준·부사관 26.7%, 병 61.5%, 군무원 2%
- 연도별 분석결과 신분별 비율 유사
- 2020년 접수 중 장교 7.7%, 준·부사관 24.4%, 병 65.9%, 군무원 2%

### 4. 2020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955 (100)	78(8.2)	222(23.2)	632(66.2)	20(2.1)	3(0.3)

#### 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4,787 (100)	446 (9.3)	986 (20.6)	3,253 (68)	72 (1.5)	30 (0.6)
2016년	명 (비율)	1,150 (100)	99 (8.6)	201 (17.4)	826 (71.8)	15 (1.3)	9 (0.8)
2017년	명 (비율)	945 (100)	91 (9.6)	187 (19.7)	649 (68.6)	12 (1.2)	6 (0.6)
2018년	명 (비율)	859 (100)	77 (9)	176 (20.5)	586 (68.2)	14 (1.6)	6 (0.7)
2019년	명 (비율)	878 (100)	101 (11.5)	200 (22.8)	560 (63.8)	11 (1.3)	6 (0.7)
2020년	명 (비율)	955 (100)	78 (8.2)	222 (23.2)	632 (66.2)	20 (2.1)	3 (0.3)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장교 9.3%, 준·부사관 20.6%, 병 68%, 군무원 1.5%, 민간인 0.6%
- 2020년 접수 중 장교 8.2%, 준·부사관 23.2%, 병 66.2%, 군무원 2.1%, 민간인 0.3%
- 2020년 전년 대비 장교 사건 감소, 준·부사관·병·군무원 사건 증가

## 5. 2020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2,003 (100)	697 (34.8)	49 (2.5)	151 (7.5)	483 (24.1)	12 (0.6)	2 (0.1)	1,306 (65.2)	93 (4.7)	331 (16.5)	856 (42.7)	25 (1.3)	1 (≒0)

### 5-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9,932 (100)	3,613 (36.4)	309 (3.1)	710 (7.2)	2,524 (25.4)	48 (0.5)	22 (0.2)	6,319 (63.6)	610 (6.2)	1,934 (19.5)	3,629 (36.5)	142 (1.4)	4 (≒0)
2016년	명 (비율)	2,220 (100)	838 (37.7)	63 (2.8)	148 (6.7)	609 (27.4)	12 (0.5)	6 (0.3)	1,382 (62.3)	151 (6.8)	458 (20.7)	735 (33.1)	37 (1.7)	1 (≒0)
2017년	명 (비율)	2,107 (100)	815 (38.7)	76 (3.6)	155 (7.4)	569 (27)	10 (0.5)	5 (0.2)	1,292 (61.3)	134 (6.4)	435 (20.6)	696 (33)	25 (1.3)	2 (≒0)
2018년	명 (비율)	1,847 (100)	624 (33.8)	53 (2.9)	119 (6.5)	442 (23.9)	6 (0.3)	4 (0.2)	1,223 (66.2)	127 (6.9)	393 (21.3)	666 (36)	37 (2)	0 (0)
2019년	명 (비율)	1,755 (100)	639 (36.4)	68 (3.9)	137 (7.8)	421 (24)	8 (0.4)	5 (0.3)	1,116 (63.6)	105 (6)	317 (18.1)	676 (38.5)	18 (1)	0 (0)
2020년	명 (비율)	2,003 (100)	697 (34.8)	49 (2.5)	151 (7.5)	483 (24.1)	12 (0.6)	2 (0.1)	1,306 (65.2)	93 (4.7)	331 (16.5)	856 (42.7)	25 (1.3)	1 (≒0)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처리 비율은 접수 비율과 유사
- 2020년 처리 사건 중 장교 7.2%, 준·부사관 24%, 병 66.8%, 군무원 1.9%, 민간인 0.1%

## 6. 2020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명 (비율)	2003 (100)	697 (34.8)	0 (0)	44 (2.2)	167 (8.3)	230 (11.5)	39 (2)	26 (1.3)	16 (0.8)	175 (8.7)	0 (0)	1,306 (65.2)	1,266 (63.2)	40 (2)

\* 약식 기타: 공판절차 회부 및 이송 등

### 6-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9,932 (100)	3,613 (36.4)	0 (0)	291 (3)	1,127 (11.3)	1,107 (11.1)	204 (2.1)	210 (2.1)	60 (0.6)	614 (6.2)	0 (0)	6,319 (63.6)	5,882 (59.2)	437 (4.4)
2016년	명 (비율)	2,220 (100)	838 (37.7)	0 (0)	76 (3.4)	295 (13.3)	263 (11.8)	37 (1.7)	53 (2.4)	13 (0.6)	101 (4.5)	0 (0)	1,382 (62.3)	1,248 (56.2)	134 (6.1)
2017년	명 (비율)	2,107 (100)	815 (38.7)	0 (0)	83 (3.9)	282 (13.4)	221 (10.5)	57 (2.7)	54 (2.6)	7 (0.3)	111 (5.3)	0 (0)	1,292 (61.3)	1,169 (55.5)	123 (5.8)
2018년	명 (비율)	1,847 (100)	624 (33.8)	0 (0)	39 (2.1)	205 (11.1)	208 (11.3)	36 (1.9)	26 (1.4)	12 (0.7)	98 (5.3)	0 (0)	1,223 (66.2)	1,119 (60.6)	104 (5.6)
2019년	명 (비율)	1,755 (100)	639 (36.4)	0 (0)	49 (2.8)	178 (10.1)	185 (10.5)	35 (2)	51 (2.9)	12 (0.7)	129 (7.4)	0 (0)	1,116 (63.6)	1,080 (61.5)	36 (2.1)
2020년	명 (비율)	2,003 (100)	697 (34.8)	0 (0)	44 (2.2)	167 (8.3)	230 (11.5)	39 (2)	26 (1.3)	16 (0.8)	175 (8.7)	0 (0)	1,306 (65.2)	1,266 (63.2)	40 (2)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사건 처리비율 36.4%, 약식사건 처리 비율 63.6%  
공판사건 중 집행유예 31.2%, 재산형 30.6%, 자유형 8.1%, 무죄 5.9%
- 연도별 분석결과 공판사건과 약식사건의 처리 비율 및 처분 유형 비율 유사
- 2020년 공판사건 중 재산형 33%, 집행유예 24%, 무죄 3.7%, 자유형 6.3%, 선고유예 5.6%
- 2020년 전년 대비 공판사건 중 자유형·집행유예·무죄 감소, 재산형 증가

## 7. 2020년 형사사건 죄명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2,003	697		44	167	230	39	26	175	16		1,306	1,266	40
면역면죄	간첩이적죄	0	0									0		
	군무이탈죄	21	21		4	13		1	3			0		
	상관에관한죄	57	57		1	22		9	1	24		0		
	군용물에관한죄	11	10			7		2	1			1	1	
	초병에관한죄	17	13			9	1	1	2			4	4	
	성범죄(군인등)	79	79		4	34		7	2	31	1	0		
	기타	19	7			3	2	1	1			12	11	1
주요형면죄	내란소요죄	0	0									0		
	뇌물에관한죄	2	2			1			1			0		
	문서인장죄	9	6			3	1		2			3	3	
	살인죄	2	2		1				1			0		
	과실치사상죄	4	1				1					3	2	1
	절도강도죄	42	20		1	5	7	2	3	2		22	21	1
	사기공갈죄	156	51		7	9	18	1	4	11	1	105	100	5
	횡령배임죄	16	5		1		2		1	1		11	10	1
	성폭속에관한죄	7	3				3					4	4	
	기타	0	0									0		
교통면죄	교통법위반	79	18			12	2		1	3		61	61	
	도교법위반	46	10			6	1	2	1			36	35	1
	도교법위반(음주)	292	21			4	13		1	3		271	268	3
	특가법위반(도주)	23	11				7			4		12	12	
	특가법위반(치사상)	0	0									0		
성면죄	형법위반	59	48		8	10	14		2	14		11	11	
	성폭법위반	81	41		7	7	17		2	8		40	39	1
	아청법위반	66	35		5	12	4		1	13		31	29	2
	성매매특별법위반	2	1						1			1	1	
	기타	0	0									0		
폭력면죄	상해,폭행죄	207	70		1	9	33	4		18	5	137	128	9
	상해등치사	0	0									0		
	폭처법위반	36	14			3	8			3		22	21	1
국가보안법위반	0	0									0			
군사기밀보호법위반	0	0									0			
기타 법률위반	670	151		4	16	81	8	6	30	6		519	505	14

### ○ 분석

- 교통범죄 22%, 성범죄(군형법 포함) 14.3%, 주요형법범 11.9%,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6.2%
- 군형법범 중 성범죄 38.7%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86.4%
- 군형법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43%

## 8. 2020년 형사사건 신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2,003	697		44	167	230	39	26	16	175		1,306	1,266	40
장 교	장성	0	0									0		
	영관	32	16		1	5	3	2	4		1	16	16	
	위관	110	33		3	7	15	5	2	1		77	77	
준·부사관	482	151		15	45	61	5	9	5	11		331	326	5
병	1,339	483		24	107	146	25	10	10	161		856	821	35
군무원	37	12		1	2	5	2	1		1		25	25	
민간인	3	2			1					1		1	1	

### ○ 분석

- 장교 공판사건 재산형 37%, 집행유예 25%, 무죄 12%, 선고유예 14%
- 준·부사관 공판사건 재산형 40%, 집행유예 30%, 무죄 6%, 선고유예 3%
- 병 공판사건 집행유예 22%, 재산형 30%, 자유형 5%, 무죄 2%
- 군무원 공판사건 재산형 42%, 집행유예 17%, 무죄 8%
- 민간인 공판사건 집행유예 50%, 이송 50%

## 9. 2020년 형사공판 사건 처리일수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합계	524	73	149	119	74	53	25	19	6	4	2
구 속	75	7	28	10	11	10	8	1	0	0	0
불구속	449	66	121	109	63	43	17	18	6	4	2

### ○ 분석

- 공판 사건 중 구속 사건 14.3%, 불구속 사건 85.7%
- 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60%, 121일 이상 210일 이내 38.7% 차지
- 불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65.9%, 121일 이상 34.1% 차지

## 10. 2020년 형사공판(정식) 사건 재판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 계		697	49	151	483	12	2
확 정	소계	340	17	69	246	7	1
	유죄	318	14	63	233	7	1
	무죄	6	2	1	3		0
	면소				0		0
	공소기각판결	12	1	3	8		0
	공소기각결정	4		2	2		0
상 소	소계	182	31	71	76	4	0
	쌍방향소	51	11	25	14	1	0
	피고인항소	69	9	32	27	1	0
	군검사항소	62	11	14	35	2	0
이송		175	1	11	161	1	1

### ○ 분석

- 공판 사건 중 1심 확정 48.8%, 상소율 26.1%
- 공판 확정사건 중 유죄 93.5%
- 신분별 상소율 장교 17%, 준·부사관 39%, 병 41.8%, 군무원 2.2%

## 11. 2020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39 (100)	0 (0)	1 (2.6)	5 (12.8)	8 (20.5)	20 (51.3)	5 (12.8)

### 11-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86 (100)	0 (0)	3 (1)	20 (7)	52 ( 18.2)	129 ( 45.1)	82 (28.7)
2016년	명 (비율)	76 (100)	0 (0)	0 (0)	5 (6.6)	15 (19.7)	34 (44.7)	22 (28.9)
2017년	명 (비율)	83 (100)	0 (0)	1 (1.2)	4 (4.8)	16 (19.3)	40 (48.2)	22 (26.5)
2018년	명 (비율)	39 (100)	0 (0)	0 (0)	2 (5.1)	5 (12.8)	20 (51.3)	12 (30.8)
2019년	명 (비율)	49 (100)	0 (0)	1 (2)	4 (8.2)	8 (16.3)	15 (30.6)	21 (42.9)
2020년	명 (비율)	39 (100)	0 (0)	1 (2.6)	5 (12.8)	8 (20.5)	20 (51.3)	5 (12.8)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3년 이상 26.2%, 1년 이상 3년 미만 45.1%, 1년 미만 28.7%
- 2020년 3년 이상 35.9%, 1년 이상 3년 미만 51.3%, 1년 미만 12.8%

## 12. 2020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506 (100)	346 (68.4)	68 (13.4)	278 (55)	160 (31.6)

\* 이송 및 정식재판취하 사건 미포함

### 12-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835 (100)	2,066 (72.8)	375 (13.2)	1,691 (59.6)	768 (27.1)
2016년	명 (비율)	678 (100)	530 (78.2)	73 (10.8)	457 (67.4)	148 (21.8)
2017년	명 (비율)	655 (100)	479 (73.1)	64 (9.8)	415 (63.4)	175 (26.7)
2018년	명 (비율)	511 (100)	384 (75.1)	87 (17)	297 (58.1)	127 (24.9)
2019년	명 (비율)	485 (100)	327 (67.4)	83 (17.1)	244 (50.3)	158 (32.6)
2020년	명 (비율)	506 (100)	346 (68.4)	68 (13.4)	278 (55)	160 (31.6)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27.1%, 국선변호인의 민간변호사 선정률 18.2%
- 연도별 분석결과 사선변호인 선임률 2019년까지 증가하다 2020년 소폭감소
- 2020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31.6%, 국선변호인의 군법무관 선정률 80.3%
- 2020년 전년 대비 군법무관 국선변호인 선정률 증가



## 14. 2020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재산형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2 (100)	0 (0)	1 (50)	0 (0)	0 (0)	0 (0)	1 (50)

### 1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재산형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2 (100)	1 (4.5)	14 (63.6)	1 (4.5)	2 (9.1)	2 (9.1)	2 (9.1)
2016년	명 (비율)	6 (100)	1 (16.7)	3 (50)	0 (0)	0 (0)	2 (33.3)	0 (0)
2017년	명 (비율)	5 (100)	0 (0)	5 (100)	0 (0)	0 (0)	0 (0)	0 (0)
2018년	명 (비율)	4 (100)	0 (0)	2 (50)	0 (0)	1 (25)	0 (0)	1 (25)
2019년	명 (비율)	5 (100)	0 (0)	3 (60)	1 (20)	1 (20)	0 (0)	0 (0)
2020년	명 (비율)	2 (100)	0 (0)	1 (50)	0 (0)	0 (0)	0 (0)	1 (50)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민간인 처리 중 집행유예 63.6%, 자유형 4.5%
- 2020년 민간인 처리 2명(집행유예 1명, 이송 1명)



## 15. 2020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명 (비율)	697 (100)	182 (26.1)	340 (48.8)	175 (25.1)

### 15-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3,553 (100)	967 (27.2)	1,972 (55.5)	614 ( 17.3)
2016년	명 (비율)	819 (100)	223 (27.2)	495 (60.4)	101 (12.3)
2017년	명 (비율)	785 (100)	205 (26.1)	469 (59.7)	111 (14.1)
2018년	명 (비율)	624 (100)	163 (26.1)	363 (58.2)	98 (15.7)
2019년	명 (비율)	628 (100)	194 (30.9)	305 (48.6)	129 (20.5)
2020년	명 (비율)	697 (100)	182 (26.1)	340 (48.8)	175 (25.1)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사건 중 항소 27.2%, 확정 55.5%, 이송 17.3%
- 2020년 항소 26.1%, 확정 48.8%, 이송 25.1%
- 2020년 전년 대비 항소 비율 소폭 감소, 확정 및 이송 비율 소폭 증가

## 16. 2020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182 (100)	69 (37.9)	62 (34.1)	51 (28)

### 16-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967 (100)	455 (47.1)	243 (25.1)	269 (27.8)
2016년	명 (비율)	223 (100)	110 (49.3)	51 (22.9)	62 (27.8)
2017년	명 (비율)	205 (100)	119 (58)	34 (16.6)	52 (25.4)
2018년	명 (비율)	163 (100)	78 (47.9)	37 (22.7)	48 (29.4)
2019년	명 (비율)	194 (100)	79 (40.7)	59 (30.4)	56 (28.9)
2020년	명 (비율)	182 (100)	69 (37.9)	62 (34.1)	51 (28)

\* 항소율은 쌍방 항소 포함됨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사건 중 피고인의 항소율 47.1%, 군검사의 항소율 25.1%
- 2020년 피고인의 항소율 37.9%, 군검사의 항소율 34.1%
- 2020년 전년 대비 피고인의 항소율 감소, 군검사의 항소율 증가

## 17. 2020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명 (비율)	1,476 (100)	1,266 (85.8)	170 (11.5)	40 (2.7)

### 17-1. 최근 5년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6,489 (100)	5,791 (89.2)	505 (7.8)	193 (3)
2016년	명 (비율)	1,382 (100)	1,248 (90.3)	100 (7.2)	34 (2.5)
2017년	명 (비율)	1,292 (100)	1,169 (90.5)	83 (6.4)	40 (3.1)
2018년	명 (비율)	1,223 (100)	1,119 (91.5)	63 (5.1)	41 (3.4)
2019년	명 (비율)	1,116 (100)	989 (88.6)	89 (8)	38 (3.4)
2020년	명 (비율)	1,476 (100)	1,266 (85.8)	170 (11.5)	40 (2.7)

#### ○ 분석

- 최근 5년 약식사건 중 약식명령 89.2%, 공판절차 회부 7.8%
- 2020년 약식명령 85.8%, 공판절차 회부 11.5%

## 18. 2020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구속영장	133	99	34	74.4
체포영장	17	13	4	76.5
압수·수색영장	368	335	33	91

### 18-1. 최근 5년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5년 평균율	구속영장	1,120	838	245	74.8
	체포영장	177	152	25	85.9
	압수·수색영장	1,743	1,603	140	92
2016년	구속영장	375	297	78	79.2
	체포영장	64	57	7	89.1
	압수·수색영장	432	397	35	91.9
2017년	구속영장	272	213	50	78.3
	체포영장	43	37	6	86
	압수·수색영장	291	264	27	90.7
2018년	구속영장	164	114	38	69.5
	체포영장	27	24	3	88.9
	압수·수색영장	283	267	16	94.3
2019년	구속영장	176	115	45	65.3
	체포영장	26	21	5	80.8
	압수·수색영장	369	340	29	92.1
2020년	구속영장	133	99	34	74.4
	체포영장	17	13	4	76.5
	압수·수색영장	368	335	33	91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74.8%, 체포영장 85.9%, 압수·수색영장 92%
- 2020년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74.4%, 체포영장 76.5%, 압수·수색영장 91%
- 2020년 전년 대비 구속영장 발부율 증가,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감소

## 19. 2020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합계	133	95	8	30	99	34
장교	10	6	2	2	9	1
준·부사관	35	27	1	7	25	10
병	86	62	4	20	64	22
군무원	2		1	1	1	1
민간인	0	0	0	0	0	0

### 19-1. 최근 5년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5년 평균율	합계	1,133	895	84	154	838	245
	장교	106	83	12	11	81	22
	준·부사관	208	168	20	20	131	70
	병	810	641	50	119	620	151
	군무원	8	3	2	3	5	2
	민간인	1	0	0	1	1	0
2016년	소계	388	315	37	36	297	78
	장교	38	32	3	3	31	6
	준·부사관	61	49	9	3	43	16
	병	287	234	24	29	221	56
	군무원	2		1	1	2	
	민간인						
2017년	소계	272	213	25	34	213	50
	장교	28	22	3	3	21	7
	준·부사관	49	39	7	3	31	15
	병	193	150	15	28	160	27
	군무원	2	2			1	1
	민간인						
2018년	소계	164	131	9	24	114	38
	장교	14	11	2	1	8	5
	준·부사관	30	24	2	4	13	16
	병	119	95	5	19	92	17
	군무원	1	1			1	
	민간인						
2019년	소계	176	141	5	30	115	45
	장교	16	12	2	2	12	3
	준·부사관	33	29	1	3	19	13
	병	125	100	2	23	83	29
	군무원	1			1		
	민간인	1			1	1	
2020년	소계	133	95	8	30	99	34
	장교	10	6	2	2	9	1
	준·부사관	35	27	1	7	25	10
	병	86	62	4	20	64	22
	군무원	2		1	1	1	1
	민간인	0	0	0	0	0	0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청구율 중 장교 9.4%, 준·부사관 18.4%, 병 71.5%, 군무원 0.7%  
발부율 장교 76.4%, 준·부사관 63%, 병 76.5%, 군무원 62.5%, 민간인 100%
- 2020년 구속영장 발부율 74.4%, 전년 대비 발부율 증가

## 20. 2020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허가/인용	기각	인용률
보석허가청구	6	2	4	33.3
구속적부심	8	0	8	0
형사보상청구	7	7	0	100
기 타	14	4	10	28.6

\* 기타: 구속집행정지, 접견금지청구, 열람등사청구, 증거보전 및 상소권 회복 청구

### 20-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5년 평균율	보석청구	63	31	32	49.2
	구속적부심	90	11	79	12.2
	형사보상청구	20	15	5	75
	기 타	130	45	74	34.6
2016년	보석청구	21	12	9	57.1
	구속적부심	34	6	28	17.6
	형사보상청구	4	1	3	25
	기 타	40	27	13	67.5
2017년	보석청구	20	11	9	55
	구속적부심	23	2	21	8.7
	형사보상청구	3	2	1	66.7
	기 타	20	6	14	30
2018년	보석청구	5	1	4	20
	구속적부심	11	1	10	9
	형사보상청구	2	1	1	50
	기 타	22	4	18	18.2
2019년	보석청구	11	5	6	45.5
	구속적부심	14	2	12	14.3
	형사보상청구	4	4		100
	기 타	34	4	19	11.8
2020년	보석청구	6	2	4	33.3
	구속적부심	8	0	8	0
	형사보상청구	7	7	0	100
	기 타	14	4	10	28.6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보석청구 허가율 49.2%, 구속적부심 인용률 12.2%
- 2020년 보석청구 허가율 33.3%, 전년 대비 보석청구 허가율 감소

## 21. 2020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약식사건 포함)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1,541	115	403	991	31	1
원판결확인	1,541	115	403	991	31	1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 21-1.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약식사건 포함)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8,117	811	2,450	4,670	157	9
	원판결확인	8,117	811	2,450	4,670	157	9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6년	소계	1807	195	552	1015	43	2
	원판결확인	1807	195	552	1015	43	2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7년	소계	1674	174	561	902	35	2
	원판결확인	1674	174	561	902	35	2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8년	소계	1552	167	486	852	44	3
	원판결확인	1552	167	486	852	44	3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9년	소계	1543	160	448	910	4	1
	원판결확인	1543	160	448	910	4	1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20년	소계	1,541	115	403	991	31	1
	원판결확인	1,541	115	403	991	31	1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 ○ 분석

- 최근 5년 관할관 확인조치 원판결확인 100%

## 22. 2020년 무죄 선고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26	6	9	10	1	0
군형법 범 죄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1		
	군용물에관한죄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등)			2		
	기타					
주요형법 범 죄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살인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죄			1	2	
	사기공갈죄				4	
	횡령배임죄			1		
	성폭속에관한죄					
	기타					
교통 범 죄	교통법위반					
	도교법위반		2			
	도교법위반(음주)		1			
	특가법위반(도주)					
	특가법위반(치사상)					
성범죄	형법위반			1	1	
	성폭법위반		1	1		
	아청법위반				1	
	성매매특별법위반			1		
	기타					
폭력 범 죄	상해, 폭행죄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기타 법률위반		2	2	1	1	

## 23. 2020년 즉결심판 현황

사건번호	계급	죄명	결과
2020-001	일병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벌금 100,000원
2020-002	상병	재물손괴	벌금 200,000원
2020-001	중위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100,000원
2020-001	상병	절도	벌금 50,000원
2020-002	이병	점유이탈물횡령	벌금 50,000원
2020-002	병장(상근)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50,000원
2020-003	일병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100,000원



해군 군사법원

# □ 해군 군사법원

## 1. 2020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 분	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명 (비율)	470 (100)	199(42.3)	271(57.7)

### 1-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 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288 (100)	816 (35.7)	1,472 (64.3)
2016년	명 (비율)	474 (100)	171 (36.1)	303 (63.9)
2017년	명 (비율)	494 (100)	184 (37)	310 (63)
2018년	명 (비율)	393 (100)	115 (29.3)	278 (70.7)
2019년	명 (비율)	457 (100)	147 (32.2)	310 (67.8)
2020년	명 (비율)	470 (100)	199 (42.3)	271 (57.7)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35.7%, 약식 사건 64.3%
- 2020년 전년 대비 사건 수 3% 증가

## 2. 2020년 형사사건 죄명별·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합계	470		37		182		236		11		4	
	199	271	25	12	55	127	115	121	0	11	4	0
간접표범	간접이적죄											
	군무이탈죄	2			1		1					
	상관에관한죄	6			4		2					
	군용물에관한죄	5		1			4					
	초병에관한죄	5					1				4	
	성범죄(군인등)	27		5		11		11				
기타	8	20		1	2	4	6	15				
주요표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1			1							
	살인죄	1					1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의회	5	2					5	2			
	사기공갈죄	7	9			3	2	4	7			
	횡령배임죄											
성폭속에관한죄												
기타	19	43	3		8	14	8	28		1		
특별표범	교통법위반	8	25	1		4	18	3	4		3	
	도교법위반	1	3			1	3					
	도교법위반(음주)	8	88	3	8	4	63	1	12		5	
	특가법위반(도주)	2	3			1	2	1	1			
	특가법위반(치사상)											
정표범	형법위반	17	3	4		2	1	11	2			
	성폭법위반	18	1	2		4	1	12				
	아청법위반	9	2	1			1	8	1			
	성매매특별법위반											
기타		1						1				
특별표범	상해, 폭행죄	28	32	1	2	7	10	20	18		2	
	상해등치사죄											
	폭처법위반	9	4				1	9	3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기타 법률위반	13	35	4	1	2	7	7	27				

#### ○ 분석

- 2020년 접수 중 교통범죄 29.4%, 폭력범죄 15.5%, 주요형법범 18.5%, 성범죄(군형법 포함) 16.6%,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9.8%
- 교통범죄 중 약식사건 86.2%



### 3. 2020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470 (100)	37 (7.9)	182 (38.7)	236 (50.2)	11 (2.3)	4 (0.9)

#### 3-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288 (100)	224 (9.8)	1,018 (44.5)	977 (42.7)	62 (2.7)	7 (0.3)
2016년	명 (비율)	474 (100)	49 (10.3)	245 (51.7)	163 (34.4)	17 (3.6)	
2017년	명 (비율)	494 (100)	49 (9.9)	259 (52.5)	173 (35.1)	12 (2.4)	1 (0.1)
2018년	명 (비율)	393 (100)	38 (9.7)	173 (44)	170 (43.3)	11 (2.8)	1 (0.2)
2019년	명 (비율)	457 (100)	51 (11)	159 (34.9)	235 (51.5)	11 (2.4)	1 (0.2)
2020년	명 (비율)	470 (100)	37 (7.9)	182 (38.7)	236 (50.2)	11 (2.3)	4 (0.9)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준·부사관 44.5%, 병 42.7%, 장교 9.8%, 군무원 2.7%
- 2020년 접수 중 병 50.2%, 준·부사관 38.7%, 장교 7.9%, 군무원 2.3%

### 4. 2020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계	199 (100)	25 (12.6)	55 (27.6)	115 (57.8)		4 (2)

#### 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816 (100)	85 (10.4)	291 (35.7)	418 (51.2)	15 (1.8)	7 (0.9)
2016년	명 (비율)	171 (100)	15 (8.8)	68 (39.8)	82 (48)	6 (3.4)	0 (0)
2017년	명 (비율)	184 (100)	14 (7.6)	83 (45.1)	82 (44.6)	4 (2.2)	1 (0.5)
2018년	명 (비율)	115 (100)	13 (11.3)	38 (33)	61 (53.1)	2 (1.7)	1 (0.9)
2019년	명 (비율)	147 (100)	18 (12.2)	47 (32)	78 (53.1)	3 (2)	1 (0.7)
2020년	명 (비율)	199 (100)	25 (12.6)	55 (27.6)	115 (57.8)		4 (2)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병 51.2%, 준·부사관 35.7%, 장교 10.4%, 군무원 1.8%
- 2020년 접수 중 병 57.8%, 준·부사관 27.6%, 장교 12.6%, 민간인 2%
- 2020년 전년 대비 준·부사관 및 군무원을 제외한 전 신분별 사건 증가

## 5. 2020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392 (100)	143 (36.5)	16 (4.1)	43 (11)	83 (21.2)		1 (0.2)	249 (63.5)	10 (2.6)	111 (28.3)	117 (29.8)	11 (2.8)	

### 5-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261 (100)	733 (32.4)	74 (3.3)	270 (11.9)	368 (16.3)	17 (0.7)	4 (0.2)	1,528 (67.6)	150 (6.6)	721 (31.9)	605 (26.8)	52 (2.3)	
2016년	명 (비율)	530 (100)	168 (31.7)	14 (2.6)	64 (12.1)	84 (15.9)	6 (1.1)		362 (68.3)	41 (7.7)	194 (36.6)	112 (21.2)	15 (2.8)	
2017년	명 (비율)	509 (100)	164 (32.2)	14 (2.8)	73 (14.3)	72 (14.1)	4 (0.8)	1 (0.2)	345 (67.8)	40 (7.8)	183 (36)	113 (22.2)	9 (1.8)	
2018년	명 (비율)	386 (100)	121 (31.3)	15 (3.9)	41 (10.6)	62 (16.1)	2 (0.5)	1 (0.2)	265 (68.7)	27 (7)	126 (32.7)	103 (26.7)	9 (2.3)	
2019년	명 (비율)	444 (100)	137 (30.9)	15 (3.4)	49 (11.1)	67 (15.1)	5 (1.1)	1 (0.2)	307 (69.1)	32 (7.2)	107 (24.1)	160 (36)	8 (1.8)	
2020년	명 (비율)	392 (100)	143 (36.5)	16 (4.1)	43 (11)	83 (21.2)		1 (0.2)	249 (63.5)	10 (2.6)	111 (28.3)	117 (29.8)	11 (2.8)	

#### ○ 분석

- 2020년 처리 사건 중 병 51%, 준·부사관 39.3%, 장교 6.6%, 군무원 2.8%, 민간인 0.3%

## 6. 2020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명 (비율)	392 (100)	143 (36.5)		17 (4.4)	46 (11.7)	47 (12)	6 (1.5)	12 (3.1)	2 (0.5)	13 (3.3)		249 (63.5)	247 (63)	2 (0.5)

### 6-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261 (100)	733 (32.4)		67 (3)	205 (9)	276 (12.2)	77 (3.4)	43 (1.9)	20 (0.9)	45 (2.0)	1,528 (67.6)	1,402 (62)	126 (5.6)
2016년	명 (비율)	530 (100)	168 (31.7)		18 (3.4)	23 (4.3)	73 (13.8)	28 (5.3)	9 (1.7)	6 (1.1)	11 (2.1)	362 (68.3)	314 (59.2)	48 (9.1)
2017년	명 (비율)	509 (100)	164 (32.2)		8 (1.6)	44 (8.4)	68 (13.4)	20 (3.9)	7 (1.4)	5 (1)	12 (2.3)	345 (67.8)	294 (57.8)	51 (10)
2018년	명 (비율)	386 (100)	121 (31.3)		14 (3.6)	42 (10.9)	47 (12.2)	5 (1.3)	8 (2)	3 (0.8)	2 (0.5)	265 (68.7)	251 (65)	14 (3.7)
2019년	명 (비율)	444 (100)	137 (30.9)		10 (2.2)	50 (11.3)	41 (9.2)	18 (4.1)	7 (1.6)	4 (0.9)	7 (1.6)	307 (69.1)	296 (66.7)	11 (2.4)
2020년	명 (비율)	392 (100)	143 (36.5)		17 (4.4)	46 (11.7)	47 (12)	6 (1.5)	12 (3.1)	2 (0.5)	13 (3.3)	249 (63.5)	247 (63)	2 (0.5)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32.4%, 약식 사건 67.6% 처리
- 최근 5년 공판 사건 중 재산형 12.2%, 집행유예 9%, 자유형 3%, 무죄 1.9%
- 연도별 분석결과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의 처리 비율 계속 변동
- 2020년 공판 사건 중 집행유예 11.7%, 재산형 12%, 선고유예 1.5%, 자유형 4.4%
- 2020년 전년 대비 공판 사건 중 집행유예·선고유예 감소, 자유형·재산형 증가

## 7. 2020년 형사사건 죄명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392	143		17	46	47	6	12	2	13		249	247	2	
군형법 면포면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2	2		2										
	상관에관한죄	3	3	1				2							
	군용물에관한죄	2	2	1	1										
	초병에관한죄	1	1		1										
	성범죄(군인등)	20	20	5	9	1		2		3					
	기타	24	6			4	1			1		18	18		
주요형법 면포면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1	1		1										
	살인죄	1	1		1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죄	6	5	1	2		2					1	1		
	사기공갈죄	15	6		4	1				1		9	9		
	횡령배임죄														
	성풍속에관한죄														
	기타	56	15		7	6		1	1			41	40	1	
교통법 면포면 죄	교통법위반	31	8			4		2	1	1		23	23		
	도교법위반	2										2	2		
	도교법위반(음주)	84	6	1	1	4						78	78		
	특가법위반(도주)														
	특가법위반(치사상)	4	1			1						3	3		
성법 면포면 죄	형법위반	14	11	2	3	2		3		1		3	3		
	성폭법위반	14	13	4	3	3		1		2		1	1		
	아청법위반	5	5	2		3									
	성매매특별법위반														
	기타	1										1	1		
폭력 면포면 죄	상해,폭행죄	58	26		8	11	3			4		32	31	1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6	2			2						4	4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기타 법률위반	42	9		3	5		1				33	33			

### ○ 분석

- 교통범죄 30.9%, 주요형법범 20.2%, 성범죄(군형법 포함) 13.8%,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8.2%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87.6%
- 군형법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45%

## 8. 2020년 형사사건 신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392	143		17	46	47	6	12	2	13		249	247	2
장 교	장성													
	영관	8	5		2	1		2				3	3	
	위관	18	11		2	5	2	1		1		7	7	
준·부사관	154	43		3	15	14	3	6	1	1		111	111	
병	200	83		12	23	30	3	3	1	11		117	115	2
군무원	11											11	11	
민간인	1	1			1									

### ○ 분석

- 장교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18.8%, 집행유예·선고유예 43.8%, 무죄 18.7%, 자유형 12%
- 준·부사관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32.6%, 집행유예 34.9%
- 병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27.7%, 재산형 36.1%

## 9. 2020년 형사공판 사건 처리일수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90	91~120	121~150	151~180	181~210	211~240	241~270	271~300	301 이상
합계	143	42	38	27	16	10	8	1	1		
구 속	20	8	3	3	3	3					
불구속	123	34	35	24	13	7	8	1	1		

### ○ 분석

- 공판 사건 중 구속 사건 14%, 불구속 사건 86%
- 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70%, 121일 이상 30%
- 불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75.6%, 121일 이상 120일 이내 24.4%

## 10. 2020년 형사공판(정식) 사건 재판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 계		203	30	64	106		1
확 정	소계	130	15	41	71		1
	유죄	116	12	35	68		1
	무죄	12	3	6	3		
	면소						
	공소기각판결	1			1		
	공소기각결정	1		1			
상 소	소계	60	14	22	24		
	쌍방향소	22	7	7	8		
	피고인항소	18	4	5	9		
	군검사항소	20	3	10	7		
이송		13	1	1	11		

### ○ 분석

- 공판 사건 중 1심 확정 64%, 상소율 29.6%
- 공판 확정사건 중 유죄 89.2%
- 신분별 상소율 병 40%, 준·부사관 36.7%, 장교 23.3%

## 11. 2020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4 (100)				1 (25)	3 (75)	

### 11-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54 (100)		3 (5.5)	3 (5.5)	7 (13)	29 (53.7)	12 (22.3)
2016년	명 (비율)	18 (100)				2 (15)	10 (55)	6 (30)
2017년	명 (비율)	8 (100)		1 (11.1)		2 (33.3)	3 (33.3)	2 (22.3)
2018년	명 (비율)	14 (100)		1 (7.1)	2 (14.3)	2 (14.3)	6 (42.9)	3 (21.4)
2019년	명 (비율)	10 (100)		1 (10)	1 (10)		7 (70)	1 (10)
2020년	명 (비율)	4 (100)				1 (25)	3 (75)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3년 이상 24.1%, 1년 이상 3년 미만 53.7%, 1년 미만 22.2%
- 2020년 징역 5년 이상 해당사항 없음

## 12. 2020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130 (100)	74 (56.9)	13 (10)	61 (46.9)	56 (43.1)

\* 이송 및 정식재판취하 사건 미포함

### 12-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674 (100)	430 (63.8)	93 (13.8)	337 (50)	244 (36.2)
2016년	명 (비율)	169 (100)	111 (65.7)	25 (14.8)	86 (50.9)	58 (34.3)
2017년	명 (비율)	160 (100)	105 (65.6)	26 (16.3)	79 (49.3)	55 (34.4)
2018년	명 (비율)	85 (100)	58 (68.2)	6 (7)	52 (61.2)	27 (31.8)
2019년	명 (비율)	130 (100)	82 (63.1)	23 (17.7)	59 (45.4)	48 (36.9)
2020년	명 (비율)	130 (100)	74 (56.9)	13 (10)	61 (46.9)	56 (43.1)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36.2%, 민간변호사 선정률 13.8%
- 2020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43.1%, 군법무관 선정률 46.9%
- 2020년 전년 대비 군법무관 및 사선변호인 선임율 증가



## 14. 2020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재산형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1 (100)		1 (100)				

### 1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재산형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 (100)		2 (50)	2 (50)			
2016년	명 (비율)							
2017년	명 (비율)	1 (100)		1 (100)				
2018년	명 (비율)	1 (100)			1 (100)			
2019년	명 (비율)	1 (100)			1 (100)			
2020년	명 (비율)	1 (100)		1 (100)				

#### ○ 분석

- 최근 5년 민간인 처리 4건
  - \* 2017년 초병특수협박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 2년(예비역)
  - \* 2018년 군용물손괴로 선고유예(예비역)
  - \* 2019년 초병특수폭행 등으로 선고유예(예비역)
  - \* 2020년 초병특수폭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 2년(예비역)



## 15. 2020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명 (비율)	143 (100)	60 (42)	70 (49)	13 (9)

### 15-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733 (100)	263 (35.9)	425 (58)	45 (6.1)
2016년	명 (비율)	168 (100)	63 (37.5)	94 (56)	11 (6.5)
2017년	명 (비율)	164 (100)	65 (39.6)	87 (53.1)	12 (7.3)
2018년	명 (비율)	121 (100)	31 (25.6)	88 (72.7)	2 (1.7)
2019년	명 (비율)	137 (100)	44 (32.1)	86 (62.8)	7 (5.1)
2020년	명 (비율)	143 (100)	60 (42)	70 (49)	13 (9)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항소 35.9%, 확정 58%, 이송 6.1%
- 2020년 항소 42%, 확정 48.9%, 이송 9.1%
- 2020년 전년 대비 항소율 증가

## 16. 2020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60 (100)	18 (30)	20 (33.3)	22 (36.7)

### 16-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분		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63 (100)	100 (38)	63 (24)	100 (38)
2016년	명 (비율)	63 (100)	27 (42.9)	14 (22.2)	22 (34.9)
2017년	명 (비율)	65 (100)	33 (50.8)	13 (20)	19 (29.2)
2018년	명 (비율)	31 (100)	14 (45.2)	6 (19.3)	11 (35.5)
2019년	명 (비율)	44 (100)	8 (18.2)	10 (22.7)	26 (59.1)
2020년	명 (비율)	60 (100)	18 (30)	20 (33.3)	22 (36.7)

\* 항소율은 쌍방 항소 포함됨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항소 사건 중 피고인의 항소율 38%, 군검사의 항소율 24%
- 2020년 피고인의 항소율 30%, 군검사의 항소율 33.3%
- 2020년 전년 대비 피고인의 항소율 11.8% 증가, 군검사의 항소율 10.6% 증가

## 17. 2020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명 (비율)	273 (100)	259 (94.9)	12 (4.4)	2 (0.7)

### 17-1. 최근 5년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552 (100)	1,422 (91.6)	91 (5.9)	39 (2.5)
2016년	명 (비율)	362 (100)	314 (86.8)	29 (8)	19 (5.2)
2017년	명 (비율)	345 (100)	294 (85.2)	40 (11.6)	11 (3.2)
2018년	명 (비율)	265 (100)	251 (94.7)	8 (3)	6 (2.3)
2019년	명 (비율)	307 (100)	304 (99)	2 (0.7)	1 (0.3)
2020년	명 (비율)	273 (100)	259 (94.9)	12 (4.4)	2 (0.7)

#### ○ 분석

- 최근 5년 약식 사건 중 약식명령 91.6%, 공판절차 회부 5.9%
- 2020년 약식명령 94.9%, 공판절차 회부 4.4%
- 2020년 전년대비 공판절차 회부, 이송사건 증가

## 18. 2020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구속영장	30	24	6	80
체포영장	5	5		100
압수·수색영장	101	92	9	91.1

### 18-1. 최근 5년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5년 평균을	구속영장	176	140	36	79.5
	체포영장	37	33	4	89.2
	압수·수색영장	479	439	40	91.6
2016년	구속영장	46	38	8	83
	체포영장	10	7	3	70
	압수·수색영장	64	54	10	84
2017년	구속영장	36	31	5	86
	체포영장	5	5		100
	압수·수색영장	97	85	12	87
2018년	구속영장	34	24	10	70.6
	체포영장	5	5		100
	압수·수색영장	102	98	4	96.1
2019년	구속영장	30	23	7	76
	체포영장	12	11	1	91
	압수·수색영장	115	110	5	95
2020년	구속영장	30	24	6	80
	체포영장	5	5		100
	압수·수색영장	101	92	9	91.1

#### ○ 분석

- 연도별 분석결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증가 후 지속 변동, 구속영장 청구 감소 추세
- 2020년 전년 대비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감소

## 19. 2020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합계	30	24	6
장 교	5	4	1
준·부사관	9	6	3
병	16	14	2
군무원			
기 타			

### 19-1. 최근 5년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5년 평균을	합 계	176	140	36
	장 교	24	20	4
	준·부사관	56	44	12
	병	93	73	20
	군무원	3	3	0
	민간인	0	0	0
2016년	소계	46	38	8
	장 교	4	3	1
	준·부사관	13	10	3
	병	26	22	4
	군무원	3	3	
	민간인			
2017년	소계	36	31	5
	장 교	7	5	2
	준·부사관	11	10	1
	병	18	16	2
	군무원			
	민간인			
2018년	소계	34	24	10
	장 교	4	4	
	준·부사관	12	9	3
	병	18	11	7
	군무원			
	민간인			
2019년	소계	30	23	7
	장 교	4	4	
	준·부사관	11	9	2
	병	15	10	5
	군무원			
	민간인			
2020년	소계	30	24	6
	장 교	5	4	1
	준·부사관	9	6	3
	병	16	14	2
	군무원			
	민간인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청구율 중 장교 13.6%, 준·부사관 31.8%, 병 52.9%, 군무원 1.7%, 발부율 장교 83.3%, 준·부사관 78.6%, 병 78.5%, 군무원 100%
- 2020년 전년대비 구속영장 청구건수 및 발부율 유사

## 20. 2020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허가/인용	기각	인용률
보석허가청구				
구속적부심	2	1	1	50
형사보상청구				
기 타				

\* 기타: 구속집행정지, 접견금지청구, 열람등사청구, 증거보전 및 상소권 회복 청구

### 20-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5년 평균율	보석청구	11	8	3	72.7
	구속적부심	11	1	10	9.1
	형사보상청구	7	4	3	57.1
	기 타	9	5	4	55.6
2016년	보석청구	5	5		100
	구속적부심	1		1	0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2017년	보석청구	2	1	1	50
	구속적부심	4		4	0
	형사보상청구	2	1	1	50
	기 타	3	2	1	66
2018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2		2	0
	형사보상청구	3	1	2	33
	기 타	4	1	3	25
2019년	보석청구	3	2	1	67
	구속적부심	2		2	0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2	2		100
2020년	보석청구				
	구속적부심	2	1	1	50
	형사보상청구				
	기 타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보석청구 허가율 72.7%, 구속적부심 인용률 9.1%

## 21. 2020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약식사건 포함)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309	15	128	155	11	
원판결확인	309	15	128	155	11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 21-1.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약식사건 포함)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총계	1,756	165	848	688	55	
	원판결확인	1,756	165	848	688	55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6년	총계	390	38	221	118	13	
	원판결확인	390	38	221	118	13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7년	총계	406	45	230	119	12	
	원판결확인	406	45	230	119	12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8년	총계	305	29	143	124	9	
	원판결확인	305	29	143	124	9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9년	총계	346	38	126	172	10	
	원판결확인	346	38	126	172	1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20년	총계	309	15	128	155	11	
	원판결확인	309	15	128	155	11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 ○ 분석

- 최근 5년 관할관 확인조치 원판결확인 100%

## 22. 2020년 무죄 선고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12	4	5	3		
군형법범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2		2		
	군용물에관한죄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등)	2	1		1	
	기타					
주요형법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살인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죄					
	사기공갈죄					
	횡령배임죄					
	성폭속에관한죄					
	기타	1		1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2		1	1	
	도교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					
	특가법위반(도주)					
	특가법위반(치사상)					
성범죄	형법위반	3	1	1	1	
	성폭법위반	1	1			
	아청법위반					
	성매매특별법위반					
	기타					
폭력범죄	상해, 폭행죄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기타 법률위반	1	1				

## 23. 2020년 즉결심판 현황

사건번호	계급	죄명	결과
20조1	병장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기각



공군 군사법원

# 공군 군사법원

## 1. 2020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분	합계	공판사건	약식사건
명 (비율)	216 (100)	110 (51)	106 (49)

### 1-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분	합계	공판사건	약식사건
5년 평균율	1,030 (100)	467 (45)	563 (55)
2016년	247 (100)	101 (39)	146 (61)
2017년	193 (100)	74 (38)	119 (62)
2018년	186 (100)	97 (52)	89 (48)
2019년	188 (100)	85 (45)	103 (55)
2020년	216 (100)	110 (51)	106 (49)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사건 45%, 약식사건 55%
- 2020년 전년 대비 전체 형사사건 15% 증가
- 2020년 전년 대비 공판사건 29% 증가 및 약식사건 3% 증가

## 2. 2020년 형사사건 죄명별·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합계	110	106	17	17	37	48	44	34	10	7	2	0
민포양대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8	4			1	1	6	3	1		
	상관에관한죄	6		1		1		4				
	군용물에관한죄		1				1					
	초병에관한죄	2						2				
	성범죄(군인등)	16		2		6		7		1		
	기타	1	3	1	1		1				1	
민포양대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3		1		1			1			
	문서인장죄											
	살인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도의죄	2	3				2	2	1			
	사기공갈죄	2	1			1			1	1		
	횡령배임죄											
성폭속에관한죄												
기타	13	20	5	4	5	6	2	8	1	2		
민포양대	교통법위반	1	3				2	1			1	
	도교법위반	1	1			1	1					
	도교법위반(음주)	16	35	2	10	12	22	2	2		1	
	특가법위반(도주)											
	특가법위반(치사상)											
민포양대	형법위반	7	2			1	1	5	1	1		
	성폭법위반	9	3	2		2	1	5	2			
	아청법위반	6				2		2				2
	성매매특별법위반											
	기타											
민포양대	상해, 폭행죄	11	12	2	1	2	3	4	6	3	2	
	상해등치사죄											
	폭처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기타 법률위반	6	18	1	1	2	7	2	10	1			

#### ○ 분석

- 2020년 접수 중 교통범죄 26%, 주요형법범 20%, 성범죄(군형법 포함) 20%,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2%, 폭력범죄 11%, 기타 11%
- 교통범죄 중 약식사건 68%
- 전체 주요사건 중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및 국가보안법위반 0%



### 3. 2020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216 (100)	34 (16)	85 (39)	78 (36)	17 (8)	2 (1)

#### 3-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015 (100)	167 (16)	461 (45)	319 (32)	59 (6)	9 (1)
2016년	명 (비율)	232 (100)	37 (16)	112 (48)	67 (29)	15 (6)	1 (1)
2017년	명 (비율)	193 (100)	28 (15)	96 (50)	58 (30)	9 (4)	2 (1)
2018년	명 (비율)	186 (100)	29 (16)	86 (46)	59 (32)	10 (5)	2 (1)
2019년	명 (비율)	188 (100)	39 (21)	82 (44)	57 (30)	8 (4)	2 (1)
2020년	명 (비율)	216 (100)	34 (16)	85 (39)	78 (36)	17 (8)	2 (1)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준·부사관 45%, 병 32%, 장교 16%, 군무원 6%
- 연도별 분석결과 2020년도는 사건 증가 추세로 전환
- 2020년 접수 중 준·부사관 39%, 병 36%, 장교 16%, 군무원 8%, 민간인 1%
- 2020년 전년 대비 군무원 110% 증가

### 4. 2020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110 (100)	17 (15)	37 (34)	44 (40)	10 (9)	2 (2)

#### 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67 (100)	76 (16)	184 (39)	172 (37)	27 (6)	8 (2)
2016년	명 (비율)	101 (100)	19 (19)	37 (37)	41 (40)	4 (4)	0 (0)
2017년	명 (비율)	74 (100)	7 (9)	35 (47)	25 (34)	5 (7)	2 (3)
2018년	명 (비율)	97 (100)	16 (17)	39 (40)	35 (36)	5 (5)	2 (2)
2019년	명 (비율)	85 (100)	17 (20)	36 (42)	27 (32)	3 (4)	2 (2)
2020년	명 (비율)	110 (100)	17 (15)	37 (44)	44 (40)	10 (9)	2 (2)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준·부사관 39%, 병 37%, 장교 16%, 군무원 6%, 민간인 2%
- 2020년 전년 대비 공판사건 29% 증가
- 2020년 접수 중 준·부사관 44%, 병 40%, 장교 15%, 군무원 9%
- 2020년 전년 대비 군무원 사건 증가 330% 증가

## 5. 2020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209 (100)	103 (49)	14 (7)	40 (19)	38 (18)	9 (4)	2 (1)	106 (51)	17 (8)	47 (23)	34 (16)	8 (4)	

### 5-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043 (100)	444 (43)	72 (6)	184 (17)	173 (17)	25 (2)	6 (1)	583 (57)	97 (9)	292 (29)	158 (15)	35 (3)	1 (1)
2016년	명 (비율)	251 (100)	101 (40)	19 (7)	37 (15)	41 (16)	4 (2)		150 (60)	22 (9)	79 (31)	36 (14)	12 (5)	1 (1)
2017년	명 (비율)	187 (100)	65 (35)	7 (4)	31 (17)	23 (12)	4 (2)		122 (65)	19 (10)	68 (36)	30 (17)	5 (2)	
2018년	명 (비율)	214 (100)	110 (52)	18 (8)	46 (22)	39 (19)	5 (2)	2 (1)	104 (49)	18 (8)	52 (24)	28 (13)	6 (3)	
2019년	명 (비율)	182 (100)	81 (45)	14 (8)	30 (16)	32 (18)	3 (2)	2 (1)	101 (55)	21 (12)	46 (25)	30 (16)	4 (2)	
2020년	명 (비율)	209 (100)	103 (49)	14 (7)	40 (19)	38 (18)	9 (4)	2 (1)	106 (51)	17 (8)	47 (23)	34 (16)	8 (4)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처리 비율은 준·부사관 46%, 병 32%, 장교 15%, 군무원 5%
- 2020년 처리 중 준·부사관 42%, 병 34%, 장교 15%, 군무원 8%, 민간인 1%
- 2020년 전년 대비 공판사건 27%, 약식사건 5% 증가

## 6. 2020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명 (비율)	209 (100)	103 (49)		5 (2)	32 (15)	40 (19)	8 (3.5)	4 (2)	1 (0.5)	10 (5)	3 (2)	106 (51)	93 (45)	13 (6)

\*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및 이송 '기타', 정식재판청구 '벌금'에 기재

### 6-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043 (100)	460 (44)		19 (2)	146 (14)	151 (14)	53 (4.6)	27 (3)	4 (0.4)	42 (4)	18 (2)	583 (56)	530 (51)	53 (5)
2016년	명 (비율)	251 (100)	101 (40)		6 (2)	35 (15)	24 (10)	14 (5)	7 (3)	3 (1)	6 (2)	6 (2)	150 (60)	134 (54)	16 (6)
2017년	명 (비율)	187 (100)	65 (35)		2 (1)	16 (9)	22 (12)	7 (4)	6 (3)		10 (5)	2 (1)	122 (65)	112 (60)	10 (5)
2018년	명 (비율)	214 (100)	110 (51)		4 (2)	41 (19)	37 (17)	11 (5)	5 (2)		6 (3)	6 (3)	104 (49)	99 (47)	5 (2)
2019년	명 (비율)	182 (100)	81 (45)		2 (1)	22 (12)	28 (15)	13 (7)	5 (3)		10 (6)	1 (1)	101 (55)	92 (50)	9 (5)
2020년	명 (비율)	209 (100)	103 (49)		5 (2)	32 (15)	40 (19)	8 (3.5)	4 (2)	1 (0.5)	10 (5)	3 (2)	106 (51)	93 (45)	13 (6)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사건 44%, 약식사건 56% 처리,  
공판사건 중 재산형 14%, 집행유예 14%, 선고유예 4.6%, 무죄 3%, 자유형 2%
- 2020년 공판사건 중 재산형 19%, 집행유예 15%, 선고유예 3.5%, 무죄 2%, 자유형 2%
- 2020년 전년 대비 공판사건 중 재산형 4% 증가, 선고유예 3.5% 감소

## 7. 2020년 형사사건 죄명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209	103	0	5	32	40	8	4	1	10	3	106	93	13	
군형법 범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10	6		6							4	4		
	상관에관한죄	8	8		2		3			3					
	군용물에관한죄	1										1	1		
	초병에관한죄	3	3					3							
	성범죄(군인등)	18	18		2	12		1	1		2				
	기타	4	1				1					3	2	1	
주요 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살인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죄	5	2		1		1					3	2	1	
	사기공갈죄	2	1		1							1	1		
	횡령배임죄	1	1			1									
	성폭속에관한죄														
	기타	28	8		1	5			1		1	20	16	4	
교통 범	교통법위반	4	1		1							3	3		
	도교법위반	2	1			1						1	1		
	도교법위반(음주)	51	16			15					1	35	33	2	
	특가법위반(도주)														
	특가법위반(치사상)	1	1			1									
성 범	형법위반	8	6	1	2	2				1		2	2		
	성폭법위반	11	8	1	4	2				1		3	3		
	아청법위반	4	4		1	1		1		1					
	성매매특별법위반														
	기타														
폭 력 범	상해,폭행죄	24	11		1	7		1		1	1	13	10	3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기타 법률위반	24	7		1	4		1		1		17	15	2		

### ○ 분석

- 교통범죄 29%, 성범죄(군형법 포함) 20%, 주요형법범 17%,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2%, 폭력범죄 11%,
- 군형법범 중 성범죄 41%
- 교통범죄 중 약식사건 60%
- 군형법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67%, 선고유예 6%

## 8. 2020년 형사사건 신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209	103	0	5	32	40	8	4	1	10	3	106	93	13
장교	장성	0	0									0		
	영관	11	7		1	3	2			1		4	3	1
	위관	20	7			2	4	1				13	11	2
준·부사관	87	40		2	9	21	3	2		2	1	47	42	5
병	72	38		2	16	7	4			7	2	34	30	4
군무원	17	9			2	6		1				8	7	1
기타	2	2						1		1				

### ○ 분석

- 장교 공판사건의 경우 재산형 43%, 집행유예 36%, 선고유예 및 자유형 각 7%
- 준·부사관 공판사건의 경우 재산형 53%, 집행유예 23%, 무죄 5%
- 병 공판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42%, 재산형 18%, 선고유예 11%, 자유형 5%
- 군무원 공판사건의 경우 재산형 67%, 집행유예 22%, 무죄 11%

## 9. 2020년 형사공판 사건 처리일수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90	91~120	121~150	151~180	181~210	211~240	241~270	271~300	301 이상
합계	103	44	14	18	9	6	5	4	0	2	1
구속	5	4	1								
불구속	98	40	13	18	9	6	5	4		2	1

### ○ 분석

- 공판사건 중 구속사건 5%, 불구속 사건 95%
- 구속사건 중 120일 이내 100%
- 불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72%, 121일 이상 28%

## 10. 2020년 형사공판(정식) 사건 재판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103	14	40	38	9	2	
확정	소계	61	5	25	24	6	1
	유죄	57	4	24	24	5	
	무죄	3		1		1	1
	면소	0					
	공소기각판결	1	1				
	공소기각결정	0					
상소	소계	32	9	13	7	3	0
	쌍방항소	25	6	10	6	3	
	피고인항소	6	3	3			
	군검사항소	1			1		
이송	10		2	7		1	

### ○ 분석

- 공판 사건 중(이송 제외) 1심 확정 60%, 상소율 30%
- 공판 확정사건 중 유죄 93%
- 신분별 상소율 준·부사관 41%, 장교 28%, 병 22%, 군무원 9%

## 11. 2020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5 (100)	0 (0)	0 (0)	0 (0)	0 (0)	4 (80)	1 (20)

### 11-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9 (100)	0 ( )	0 ( )	2 (10)	3 (16)	11 (58)	3 (16)
2016년	명 (비율)	6 (100)	0 (0)	0 (0)	1 (17)	0 (0)	3 (50)	2 (33)
2017년	명 (비율)	2 (100)	0 (0)	0 (0)	1 (50)	0 (0)	1 (50)	0 (0)
2018년	명 (비율)	4 (100)	0 (0)	0 (0)	0 (0)	3 (75)	1 (25)	0 (0)
2019년	명 (비율)	2 (100)	0 (0)	0 (0)	0 (0)	0 (0)	2 (100)	0 (0)
2020년	명 (비율)	5 (100)	0 (0)	0 (0)	0 (0)	0 (0)	4 (80)	1 (20)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1년 이상 3년 미만 58%, 3년 이상 18%, 1년 미만 18%
- 연도별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계속 변동
- 2020년 1년 이상 3년 미만 80%

## 12. 2020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85 (100)	44 (52)	4 (5)	40 (47)	41 (48)

\* 이송 및 정식재판취하 사건 미포함

### 12-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11 (100)	210 (51)	59 (14)	151 (37)	201 (49)
2016년	명 (비율)	108 (100)	53 (49)	11 (10)	42 (39)	55 (51)
2017년	명 (비율)	56 (100)	32 (57)	16 (28.5)	16 (28.5)	24 (43)
2018년	명 (비율)	91 (100)	44 (48)	18 (20)	26 (28)	47 (52)
2019년	명 (비율)	71 (100)	37 (52)	10 (14)	27 (38)	34 (48)
2020년	명 (비율)	85 (100)	44 (52)	4 (5)	40 (47)	41 (48)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49%, 민간국선변호사 선정률 14%
- 연도별 분석결과 2016년도 이후 군법무관 선정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민간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인 선임률은 계속 변동
- 2020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48%, 군법무관 선정률 44%, 민간국선변호사 선정률 6%,
- 2020년 전년 대비 국선변호인 선정률 및 사선변호인 선임률 증가



## 14. 2020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재산형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2 (100)					1 (50)	1 (50)

### 1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재산형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6 (100)		2 (33)	1 (17)		1 (17)	2 (33)
2016년	명 (비율)	0						
2017년	명 (비율)	0						
2018년	명 (비율)	2 (100)		1 (50)	1 (50)			
2019년	명 (비율)	2 (100)		1 (50)				1 (50)
2020년	명 (비율)	2 (100)					1 (50)	1 (50)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민간인 사건 처리 중 집행유예 22%, 선고유예 17%
- 최근 5년 민간인 사건 처리 총 6건
- 2020년 민간인 재판 2명



## 15. 2020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명 (비율)	103 (100)	32 (31)	61 (59)	10 (10)

### 15-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69 (100)	175 (37)	251 (54)	43 (9)
2016년	명 (비율)	100 (100)	39 (39)	54 (54)	7 (7)
2017년	명 (비율)	75 (100)	27 (36)	38 (51)	10 (13)
2018년	명 (비율)	110 (100)	48 (44)	56 (50)	6 (6)
2019년	명 (비율)	81 (100)	29 (36)	42 (52)	10 (12)
2020년	명 (비율)	103 (100)	32 (31)	61 (59)	10 (10)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확정 54%, 항소 37%, 이송 9%
- 연도별 분석결과 항소, 확정, 이송 사건 수 각 계속 변동
- 2020년 확정 59%, 항소 31%, 이송 10%
- 2020년 전년 대비 항소 감소

## 16. 2020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32 (100)	6 (19)	1 (3)	25 (78)

### 16-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67 (100)	39 (23)	32 (19)	96 (58)
2016년	명 (비율)	39 (100)	9 (23)	10 (26)	20 (51)
2017년	명 (비율)	27 (100)	5 (19)	10 (37)	12 (44)
2018년	명 (비율)	48 (100)	10 (21)	8 (17)	30 (62)
2019년	명 (비율)	21 (100)	9 (43)	3 (14)	9 (43)
2020년	명 (비율)	32 (100)	6 (19)	1 (3)	25 (78)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쌍방 항소 58%, 피고인 23%, 군검사 19%
- 연도별 분석결과 피고인, 군검사, 쌍방 항소 각 계속 변동
- 2020년 전년 대비 쌍방 항소 증가

## 17. 2020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명 (비율)	106 (100)	102 (96)	2 (2)	2 (2)

### 17-1. 최근 5년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분		합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이송
5년 평균	합계 (비율)	583 (100)	539 (92)	39 (7)	5 (1)
2016년	명 (비율)	150 (100)	134 (89)	15 (10)	1 (1)
2017년	명 (비율)	122 (100)	112 (92)	8 (6)	2 (2)
2018년	명 (비율)	104 (100)	99 (95)	5 (5)	0 (0)
2019년	명 (비율)	101 (100)	92 (91)	9 (9)	0 (0)
2020년	명 (비율)	106 (100)	102 (96)	2 (2)	2 (2)

#### ○ 분석

- 최근 5년 약식 사건 중 약식명령 92%, 공판절차 회부 7%
- 2020년 약식명령 96%, 공판절차 회부 2%
- 2020년 전년 대비 약식명령 증가, 공판절차 회부 감소

## 18. 2020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구속영장	10	10		100
체포영장	7	7		100
압수·수색영장	119	116	3	97

### 18-1. 최근 5년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5년 평균	구속영장	72	58	14	81
	체포영장	21	19	2	90
	압수·수색영장	274	259	15	95
2016년	구속영장	23	19	4	83
	체포영장	6	4	2	67
	압수·수색영장	55	51	4	93
2017년	구속영장	11	7	4	64
	체포영장	1	1	0	100
	압수·수색영장	25	24	1	96
2018년	구속영장	15	14	1	93
	체포영장	5	5	0	100
	압수·수색영장	29	27	2	93
2019년	구속영장	13	8	5	62
	체포영장	2	2	0	100
	압수·수색영장	46	41	5	89
2020년	구속영장	10	10	0	100
	체포영장	7	7	0	100
	압수·수색영장	119	116	3	97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81%, 체포영장 90%, 압수·수색영장 95%
- 연도별 분석결과 각종 영장 청구율 및 발부율 계속 변동
- 2020년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100%, 체포영장 100%, 압수·수색영장 97%
- 2020년 전년 대비 구속,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발부 증가

## 19. 2020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합계	10	10	0	0	10	0
장교	2	2			2	
준·부사관						
병	6	6			6	
군무원	2	2			2	
기타						

### 19-1. 최근 5년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5년 평균율	합계	75	65	5	5	61	14
	장교	15	12	2	1	11	4
	준·부사관	23	19	0	4	21	2
	병	33	30	3	0	25	8
	군무원	4	4	0	0	4	0
	민간인	0	0	0	0	0	0
2016년	소계	26	22	1	3	22	4
	장교	4	3		1	3	1
	준·부사관	7	5		2	7	
	병	13	12	1		10	3
	군무원	2	2			2	
	민간인						
2017년	소계	11	10	1	0	7	4
	장교	3	3			2	1
	준·부사관	4	4			3	1
	병	4	3	1		2	2
	군무원						
	민간인						
2018년	소계	15	13	1	1	14	1
	장교	3	2	1		3	
	준·부사관	5	4		1	4	1
	병	7	7			7	
	군무원						
	민간인						
2019년	소계	13	10	2	1	8	5
	장교	3	2	1		1	2
	준·부사관	7	6		1	7	
	병	3	2	1			3
	군무원						
	민간인						
2020년	소계	10	10	0	0	10	0
	장교	2	2			2	
	준·부사관						
	병	6	6			6	
	군무원	2	2			2	
	민간인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청구율 병 44%, 준·부사관 31%, 장교 20%, 군무원 5%, 발부율 병 41%, 준·부사관 34%, 장교 18%, 군무원 7%
- 2020년 청구율 병 60%, 장교 20%, 군무원 20%  
발부율 병 60%, 장교 20%, 군무원 20%

## 20. 2020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허가/인용	기각	인용률
보석허가청구	2		2	
구속적부심	1		1	
형사보상청구	2	2		100
기 타	3		3	

\* 기타: 기피, 위헌법률심판제청, 증거보전

### 20-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5년 평균을	보석청구	8	1	7	13
	구속적부심	9	2	7	22
	형사보상청구	3	3	0	100
	기 타	11	0	11	0
2016년	보석청구	3	1	2	33
	구속적부심	4		4	0
	형사보상청구				
	기 타	2		2	0
2017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1	1		100
	형사보상청구				
	기 타				
2018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1	1		100
	형사보상청구				
	기 타	3		3	0
2019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2		2	0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3		3	0
2020년	보석청구	2		2	0
	구속적부심	1		1	0
	형사보상청구	2	2		100
	기 타	3		3	0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보석청구 허가율 13%, 구속적부심 허가율 22%, 형사보상청구 인용 100%
- 2020년 형사보상청구 인용률 100%

## 21. 2020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약식사건 포함)

구 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141	20	66	43	12	0
원판결확인		141	20	66	43	12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 21-1.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약식사건 포함)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705	116	357	190	41	1	
	원판결확인	705	116	357	190	41	1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6년	소계	162	25	85	39	13	0	
	원판결확인	162	25	85	39	13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7년	소계	136	22	76	32	6	0	
	원판결확인	136	22	76	32	6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8년	소계	140	21	73	40	6	0	
	원판결확인	140	21	73	40	6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9년	소계	126	28	57	36	4	1	
	원판결확인	126	28	57	36	4	1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20년	소계	141	20	66	43	12	0	
	원판결확인	141	20	66	43	12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 ○ 분석

- 최근 5년 관할관 확인조치 원판결확인 100%

## 22. 2020년 무죄 선고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3	0	1	0	1	1
간접표면	간접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군용물에관한죄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등)	1		1		
	기타					
주요행표면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살인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죄					
	사기공갈죄					
	횡령배임죄					
	성폭속에관한죄					
	기타					
교통법위반	교통법위반					
	도교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					
	특가법위반(도주)					
	특가법위반(치사상)					
성범죄	형법위반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	1				1
	성매매특별법위반					
	기타					
폭력범죄	상해,폭행죄	1			1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기타 법률위반						

### 23. 즉결심판 현황

사건번호	계급	죄 명	결 과
기동사 20 조1	상병	절도	벌금 100,000원
전투사 20 조1	중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구기각 결정
기동사 20 조2	병장	범인도피	청구기각 결정
전투사 20 조2	중사	절도	벌금 50,000원
전투사 20 조3	중사	재물손괴, 재물손괴 미수	벌금 200,000원
전투사 20 조4	하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벌금 200,000원
유탄사 20 조1	중사	절도	벌금 200,000원
기동사 20 조3	상병	절도	청구기각 결정
기동사 20 조4	일병	절도	벌금 50,000원

# 2020년 주요 판례

## □ 고등군사법원

○ 2019노2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음화제조교사 [2020. 1. 9. 선고]

### • 공소사실의 요지

#### [음화제조교사]

피고인은 군입대전인 2017. 4. 2.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을 대상으로 음란합성사진 제작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공연히 전시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도록 교사함

####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군입대전인 2017. 5. 21.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음란합성사진 제작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A(여, 22세)의 사진과 이름 등을 보내 음란합성사진 제작을 의뢰하면서, 'A 24살 ㅇㅇ구 ㅇㅇ동 거주 똥굴고 싶어서 일부러 동남아만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군입대전인 2016. 7. 14.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 등을 갖춘 기계장치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 • 주요 쟁점

- [1] 임의제출된 스마트폰으로부터 파생된 전자정보의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소극)
-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여 이러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의 판단기준

### • 원심 및 항소심 판단

- 원심: 제8군단 보통군사법원(2019고3) 2019. 8. 7. **징역 8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선고
- 항소심: **원심파기(징역 8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일부 유죄)**

### • 항소심 판단 이유

[1] 원심의 판단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휴대전화는 그 자체만으로 고소인이 수사를 의뢰하였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탐색과정을 통하여 내부 정보를 지득하는 과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점, ② 경찰이나 군검사의 증거수집 과정이 영장주의에 대한 의도적 회피 시도라고 볼 수 없고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③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의 증거수집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군검사가 위 휴대전화에 대해 2018. 11. 2.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는 절차를 거친 이상 경찰의 압수와는 별개의 새로운 압수절차이고, 독자적인 위법 사유가 없으므로(피고인에게는 포렌식 과정에의 참여권이 보장되었고, 피고인은 압수목록 및 압수전자 목록을 교부받았다) 경찰단계에서의 위법과는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위 휴대전화에서 취득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각 사진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함이 정당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 중 원심 판시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 8, 9 각 사진의 경우, ①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록된 생성 일시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짧은 치마나 교복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전체적으로 사진의 구도상 피해자가 한가운데에 있고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크게 촬영되었으며, 특히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벅지 등 하체 부분이 부각되어 촬영된 점, ③ 가슴이나 허벅지 부위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여성의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 있는 부위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장소, 촬영각도와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피고인의 촬영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위 각 사진은 피사체가 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분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여 이러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사진들을 피고인이 직접 만들어 설정한 '교복젓소녀' 폴더에 저장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스스로도 위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을 촬영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피고인 상고 ⇒ 대법원 **진행 중**(2020도1669)



## ○ 고등군사법원 2019노303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폭행치상) [2020. 1. 22. 선고]

###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근병사로서, 2019. 6. 26. 23:29경 서울 소재 A아파트 후문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여, 56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른 후 담벼락 쪽으로 약 3m 가량을 강제로 끌고 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이로 깨문 뒤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한 후 도망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

### • 주요 쟁점

[1] 강간죄의 고의 인정 여부

[2]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 중이던 여성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른 후 담벼락 쪽으로 약 3m 가량 강제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이로 깨문 뒤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한 후 도망친 사안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본 판례

### • 원심 및 항소심 판단

- 원심: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2019고24) 2019. 9. 10. 징역 2년 6월, 취업제한 3년 선고

- 항소심: 원심파기(벌금 300만 원)

\*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축소사실인 폭행치상죄를 인정함

### • 항소심 판단 이유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당심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고 성폭행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아 강간의 고의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목을 조를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3m 정도 끌고 간 후 스스로 멈췄다.”, “피고인이 멈춰 선 후 저한테 어떤 말도 한 건 없고 제 목을 계속 조르고 있던 상태였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려나 흥기로 찌르려나 이런 끔찍한 생각뿐이 안 들었다.”, “목이 졸린 상태로 소리를 못 지르다가 피고인의 손을 물어버렸고 피고인의 손힘이 느슨해져서 소리를 지르자 자기 핸드폰을 쥐고 있던 주먹으로 제 오른쪽 광대를 세게 한 대 때렸다. 뭐 저한테 조용히 하라거나 그런 말도 없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때 어떤 남자가 뛰어 와줬고 피고인은 바로 도망쳤다.”,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것은 없었다.”, “피고인이 목을 조를 때 제 등에 피고인의 몸이 밀착된 것 이외에는 피고인이 만지거나 그런 건 없다. 한 손은 제 목을 조르고 한 손은 휴대폰을 쥐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필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등 뒤에서 왼손으로 목을 졸라 소리를 치자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목이 팔에 감긴 상태로 약 3미터 끌려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발생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의 공개된 장소로 입주민 등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당시 23:29경으로 어두웠으나 현장 사진을 보면 주변에 가로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장소 근처에 있었던 C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하고 바로 달려가 도망치는 피고인을 제압한 후 산책하던 남성에게 경찰에 신고를 부탁하였다. ④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제가 막 달려가는 장면과 멈춰서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 이후로 기억나는 장면은 제가 앞드려서 제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제가 피해자에게 범행을 가할 때의 기억은 여전히 없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일부 새롭게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C는 “피고인을 잡아 넘어뜨려 누르고 있는데 피고인이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술에 조금 취해 보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붙잡은 남자가 피고인에게 ‘젊은 것이 왜 그랬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나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피고인 부모님의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중 ‘CCTV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 일대를 촬영하는 방범용 카메라에서 피해자의 이동하는 영상이 확인되었으나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피고인의 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범행 장소나 대상을 미리 물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아닌 단순히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장소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정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⑥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 평소 성관계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이혼 남녀가 대화하는 대화방에서 여성과 대화를 한 사실과 이 사건 발생 당일 대화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는 사실 역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정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피고인 상고 ⇒ 대법원 상고기각(2020도1772 판결)

○ 2019노336 **군용물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군용물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 손실), 사기,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2020. 2. 20.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4. 4.경 불상의 물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군납업체 대표 A에게 실제 견적 금액에서 30만 원을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하게 한 후, A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소속대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회계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정부구매카드를 받아 대금을 결제하고 A로부터 30만 원을 돌려받는 등 2018. 4. 25.경까지 총 150회에 걸쳐 합계 135,5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은 소속대 계약담당공무원을 기망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국고를 손실함

**[업무상 군용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2.경 소속대 야적장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군용물인 고철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임의로 반출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군용물을 횡령하고, 그 매각대금 5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201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4,700,000원 상당의 군용물인 고철을 임의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군용물을 횡령함

**[뇌물수수]**

피고인은 군납업체 대표 A로부터 자재납품 계약 체결 및 시설 관련 계약체결 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 등을 받고 2014. 3. 5. 시간 불상경 사례금 명목으로 약 10만 원에 상당하는 향응을 제공받는 등 2018. 3.경까지 군납업체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3,611,412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5.경 소속대에서 필요한 10종의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소속대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복수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였음에도 군납업체 대표 A에게 자신의 업체 견적서 외에 임의로 작성한 다른 업체 명의의 허위의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이 직접 시장조사하여 비교 견적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승인하게 하는 등 2016. 10. 23.경까지 총 278회에 걸쳐 위계로서 소속대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 **주요 쟁점**

- [1] 업무상 군용물 횡령에 있어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의 의미
- [2]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 **원심 및 항소심 판단**

- 원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2019고12) 2019. 10. 18.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 추징 139,161,412원 선고
- 항소심: 항소기각

• **항소심 판단 이유**

[1]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원심의 판단에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전임자였던 B는 "폐기물 처리도 제가 치워왔기 때문에 작업계획담당관의 업무에 속한다. 사실상 필요에 의해 담당했다. 전임자에게 배운 방식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도 당신 업무다, 왜냐면 치울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고철을 매각한 적 없다.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면 고철이나,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부 폐기물로 나갈 수 있다.", "혼합폐기물에 고철이 들어있는 경우, 이를 분류하는 것은 저나 피고인 같은 작업계획담당관이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전 주임원사 C는 "시설과에서 고철이나 이런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저희와는 무관하다. 시설과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건설자재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그것은 시설과에서 처리한다. 시설과에서 피고인이 했던 업무로 알고 있다.", "저는 주임원사 기간에 2번인가 3번인가 했는데 생활관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을 분리해서 매각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전 주임원사 D는 "부대 내 공사 등으로 생긴 폐기물 중에 고철류를 따로 매각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건설 폐기물 중에 고철이 들어있을 수 있지만, 따로 그것을 분류할만한 여유가 없었는데, 피고인이 어떻게 분류해서 팔았는지 모르겠다.", "통상 폐기물은 재정처에 폐기물 의뢰를 하여 계약을 한다고 들었다. 저는 계약을 한 적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작업계획담당관으로서 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고철의 매각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있어 사실상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인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2]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에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는 "처리장에 폐고철이 같이 있는 경우 행보관들이 돌아가며 분리작업을 했다. 폐고철을 골라내서 매각한 것으로 기억한다. 매각대금을 회식에 쓰지 않았다. 소속대 통장으로 들어가면 부대 복지금으로 나눠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부서관단의 경우 부서관 단비가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N분의 1이다.", "혼합 폐기물에서 나온 고철을 함부로 팔면 횡령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D는 "피고인이 준 돈의 출처를 알고 하지 말라고 했다. 폐기물인 고철을 팔았기 때문에 국고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철매각 대금을 국고로 납입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서는 불법영득의사 내지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고철을 매각한 이후 주임원사 등에게 그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고철매각 대금을 사후적으로 소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 상고** ⇒ 대법원 **상고기각**(2020도3685)

○ 2019노35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인정된 죄명 강요미수) [2020. 3. 10.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7. 초 일자불상경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게시된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A(여, 16세)를 고양시 소재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만나 A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A에게 현금 5만 원을 주는 등 같은 달 2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지급한 뒤 성교행위 등을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7. 22.부터 2019. 7. 27. 사이 피해자 A에게 지급한 15만 원에 대가로 성교행위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그렇게 12시간도 안돼서 빠져리게 후회한 사람들이 둘 있어요. 찾아가서 만나지 않도록 약속 지켜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비롯하여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위력을 행사하였고, 2019. 7. 28.경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빌려주고 위 15만 원과 합하여 총 75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변제를 1회 연체할 때마다 이자 명목으로 2회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내용을 잘 모르는 피해자의 부지를 이용하여 이름과 주소 및 서명을 기입하게 하고 위 차용증을 근거로 2019. 7.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성교행위할 것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위력을 행사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기 전인 2019. 7. 30. 17:50경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침

• **주요 쟁점**

-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 위력의 의미
- [2] 위력행사와 간음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간격이 있는 경우, 위력행사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원심 및 항소심 판단**

- 원심: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2019고79) 2019. 10. 29. 징역 1년 3월 선고
- 항소심: 원심파기(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 \* 원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요미수를 유죄로 인정함

• **항소심 판단 이유**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상대방의 자유의사가 제압된다는 것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자유의사가 제압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2] 한편, 위력행사와 간음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장소적 간격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위력행사가 간음행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 행위 자체에 대한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는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간음행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어서)

① 피고인은 군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주된 목적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였다.”, “그 당시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그 압박감에 돈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군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에 대하여 “계속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메시지 내용처럼 성관계도 강요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빨리 돈을 갚고 피고인을 떼어내고 싶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때문에 이를 갚기 위해 다른 채무를 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른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기도 했는데 계속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고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해서 무서웠고 빨리 돈을 갚고 떼어내려고 다른 곳에 돈을 빌리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집 앞에 찾아오고 협박을 하고 성관계도 강요하였기 때문에(피해자의 어머니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제 스스로도 신고를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낼 수 있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계속 집 앞에 찾아와 협박하고 성관계를 강요하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피해자는 2019. 7. 28.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집주소, 빌린 돈 금액을 적고 지장을 찍은 후 돈을 받고 헤어졌고, 이후 돈을 갚기로 정한 날짜에 갚지 못하고 미루자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응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2019. 7. 28. ‘요즘 제가 갈비뼈아파서 못해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2019. 7. 29. ‘그리고 돈만주고갈게요. 저 요즘 ㅅㅅ 안해요’, ‘돈만주면 되는거아니예요? 왜 굳이 해야되요? 9시에 오시면 좀 기다려야될거같애요 가족이랑 어디갔다와야되서’, ‘6은 내일 새벽에 줄게요 오늘은 월요일이닌가요’, ‘21주고갈게용’, ‘혹시 내일 새벽되나요 150빌려주신다는분이 늦게오신다해서 대신 30으로 갚을게요’, 2019. 7. 30. ‘지금깻어요 그 돈빌려준다는사람 이따 10시11시에온데요 그사람한테 돈받고 얼른드릴게요’, ‘저 어디가야되서 돈만주고가야되요’, ‘님 몇시에 오실건데요 돈받으러’, ‘제가 그것보다 가족이랑 더 일찍나가면 저희집 우편함에 돈 넣고갈게요’, ‘그니까요 돈은 줄거고요 ㅅㅅ은 못해드랴요’, ‘제가 얼른시골가야되면 우편함에 넣고갈게요 30 넣고갈게요’라는 것이다. ⑤ 피고인은 2019. 7. 30. 17:50경 경찰에게 체포를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가 30만 원을 먼저 변제한다고 하였고 자기 집 우편함에 30만 원을 넣어놓겠다고 해서 그것을 받으러 가서 우편함에서 돈을 찾다가 체포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체포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지연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없고 더욱이 간음을 위한 구체적인 일시·장소 등을 정하였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일시·장소 등을 정하는데 응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 간음행위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쌍방 상고 ⇒ 대법원 **파기환송**(2020도4015 판결) ⇒ 서울고등법원 **이송**

\* 파기사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결심할 **중요한 동기**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성립 인정

- 참고 판례: 기존 대법원 판례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위계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위계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위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으나, 변경된 판례는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함(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 2019노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2020. 4. 2. 선고]

### • 공소사실의 요지

####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6. 07:50경 군용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 우측에 있는 소속대 위병소 입구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그곳은 아래로 약 10° 기울어진 도로 굴곡이 심한 경사로로써 전날 비가 온 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히 감속한 후 우회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대진입 전 약 250m 지점부터 약 16m 지점까지 시속 약 76km로 진행하다 속도를 급하게 줄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군용차 좌측 앞 범퍼로 소속대 위병소 입구 경계석과 석축을 충돌한 업무상 과실로 군용물인 군용차의 앞 범퍼 커버, 앞바퀴 휠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3,613,982원이 들도록 손괴함

#### [교특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군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병장 A(23세)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상병 B(23세)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척추 분리증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

### • 주요 쟁점

- [1] 현 육군의 지침이 일부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 불입건 처리하고 있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군검사의 공소제기 혹은 기소의 유지가 자의적인 것이고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의 남용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판시

### • 원심 및 항소심 판단

- 원심: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2018고70) 2019. 9. 23. **선고유예(벌금 200만 원)**, 교특법위반(치상) **공소기각** 선고
- 항소심: **원심파기(선고유예(벌금 200만 원))**, 공소기각 부분 항소기각

### • 항소심 판단 이유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군용차량이 손괴된 것으로서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② 국방부 조사본부는 피고인의 민원요청에 대하여 "군용차량 교통사고 차량손괴 및 인명사고 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의 유무 및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③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과실에 의한 손괴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의 행위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군용물손괴죄는 전투력의 기초가 되는 군의 물적요소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바 이는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⑤ 현 육군의 지침이 일부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 불입건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지침이 국가가 당해 행위를 묵시적 승낙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8. 1. 29. '군차량 사고 및 정비 확인서'에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을 한 상태에서 속도를 완전히 줄이지 않은 채 우회전을 하여 파손된 사고"라고 기재하고, 2018. 10. 5. 군검찰에서의 조사 시 "당시 차량 속도는 내리막길에서 시속 72km정도 되었다.",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인 것은 사고 난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포함되어 과속으로 인한 반의사불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되었다가, 원심 재판과정에서 2019. 2. 27.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회보 이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부분이 삭제되었던 점, ③ 「육고검 교통사고사범 처리지침」 제2조 제2항은 '교통사고에 의한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죄의 경우 중과실 사고, 공무수행 외의 운행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경우 외에는 형사입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범죄사실은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군검사의 공소제기 혹은 기소의 유지가 자의적인 것이고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의 남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 • 쌍방 상고 ⇒ 대법원 **상고기각**(2020도4424)

○ 2019노375 준강제추행, 명예훼손 [2020. 4. 28.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군입대전인 2017. 6. 30. 04:00경 대학교 신입생 MT 장소인 경기 가평군 소재 펜션에서 피해자 A(여, 20세)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짐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이후 밖으로 나가 대학 동기인 B에게 “안에 A가 옷을 안 입고 있다. 미친 것 아니냐. 빨리 들어가 봐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주요 쟁점**

- [1]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
- [2]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기억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

● **원심 및 항소심 판단**

- 원심: 육군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2019고18) 2019. 10. 30. 징역 6월 선고
- 항소심: 항소기각

● **항소심 판단 이유**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추행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보니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상태여서 이에 놀라 밖으로 나왔을 뿐 상식적으로 추행을 한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바비큐장에 혈레벌떡 나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B의 진술이 일견 이에 부합하나, 위 정황만으로 이 사건 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는 바비큐장과 거실을 연결하는 통로로 이용되어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으로 범행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B, C, D는 당시 위 장소를 지나다닐 때 이 사건 추행과 관련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불 속에서 10분 정도 판시 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는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여 제3자가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B는 E와 바비큐장으로 나갈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에 대해 “그때는 그냥 누워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때 따로 신경을 못 쓰고 바로 나와서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나갈 때 그렇게 유심히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B는 친구와 산책을 갔다가 거실로 들어가면서 위 장소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장난치려고 사진을 찍었는데 촬영 당시 시각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을 찍을 때에는 (술에)취해 있어서 어두웠던 것만 기억나요”, 이 장소에 머문 시간에 대해서는 “아마 사진 찍고 바로 나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그때 저는 피해자가 출입구 방에 있는 걸 몰랐습니다. 피고인이 누운 이후 다른 동기가 바비큐장에 토하느라 제가 나가서 챙겨주러 나갔다가 온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바 위 장소를 지나다닐 사람들이 술에 취하였거나 각자의 사정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을 사정이 있는 점, 위 장소에서 범행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주장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사과를 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내가 옷 벗은 게 아니라 네가 벗긴 거야’, ‘내가 나 만졌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내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100프로는 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대부분은 기억나는 거 같아, 미안’이라고 사과를 하며 ‘그건 너도 기억 안나지 했는지 안했는지 나는 그게 기억이 안나거든’이라고 말하고, 원심 법정에서 이는 성관계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가 사과를 하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나아가 성관계 여부를 질문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가 며칠간의 피고인과의 대화만으로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 정도에 미치는 상황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추행 방법, 순서, 당시 정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 고소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2]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만지는 느낌에 처음에는 눈을 못 떴으나 시간이 지나 눈이 떠져서 확인해보니 피고인이었으며 술에 너무 취한 상태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잠이 들었고 다시 의식이 잠깐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고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겨우 몸을 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심 법정에서 A는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서 이 사건 방에서 두 번 정도 토하고 잠들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방에 들어가니 당시 피해자가 윗옷은 벗겨져 옆에 있었고 브래지어는 후크가 풀려서 걸치고 있었으며 잠결이었는지 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식이 뚜렷해 보이지 않아 자신이 피해자의 옷을 입혀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도 잠에서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드는 과정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거나 잠에서 깨어날 무렵으로서 심신상실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상고** ⇒ 대법원 **상고기각**(2020도5492)

○ 2019노424 군인등강제추행[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추행)], 직권남용가혹행위 [2020. 4. 29.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직권남용가혹행위]**

피고인은 2019. 7. 11. 22:00 ~ 23:00 사이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이병 A(19세)에게 옷을 전부 벗으라고 지시하여 알몸으로 만든 상태에서 팔굽혀펴기 20회 가량,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가량을 시키고, 이후 피해자를 침상 위에 앉도록 지시한 후 앞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왜 그랬어? 왜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0대 가량, 명치를 3~5대 가량 때리는 등 다음 날까지 총 2회에 걸쳐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한 행위함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알몸인 상태로 침상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배 부위를 차례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손바닥으로 1회 스치듯 만지는 등 다음 날까지 총 2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 **주요 쟁점**

[1] 직권남용 해당여부 판단기준(실질적인 분대장)

[2] 피고인은 잠정 분대장으로서 일반적인 직무권한의 행사에 가탁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판시

• **원심 및 항소심 판단**

- 원심: 육군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2019고109) 2019. 12. 5. 징역 1년, 취업제한 2년 선고

- 항소심: 원심파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2년) 확정

• **항소심 판단 이유**

[1]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법령상의 근거는 반드시 명문상의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2]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보충병으로 대기하는 동안에 보충중대에 근무중인 분대장으로 어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분대장이고 저는 대기 중인 보충병이어서 얼차려를 주고 폭행하는 것에 반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분대장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조교로서 신병을 관리, 보호한다.”, “따로 임명장을 주지는 않지만 잠정 분대장으로 임무를 소속대 중대장(행정보급관)이 부여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사실상 신병교육기관이나 후반기 교육기관에서의 분대장이나 조교의 임무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관리, 지도, 교육 중 얼차려를 부여할 권한도 있다.”, “제가 관리하는 입장이어서 신병들이 저의 통제에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지도·관리하는 입장이며 당시 분대장의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소속부대의 행정보급관인 상사 B는 “피고인은 편성보급병으로 행정병의 임무를 수행하고 보충병들이 들어오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행정병의 임무에서 보충병들을 관리 및 통제하는 잠정 분대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마치 신병교육기관의 조교와 같은 역할 수행한다. 보충병들의 교육과 안내를 시킨다.”, “청소지도, 저녁 점호 전 준비교육, 아침점호에도 당직사관을 보조하여 점호실시, 식사 인술을 실시하고, 보충병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매주 보충병들이 들어오다 보니 임명장을 수여하지는 않는다. 다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분대장 견장을 수여하여 잠정분대장으로 임무수행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실질적 분대장으로서 일반적인 직무권한의 행사에 가탁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20노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인정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2020. 6. 4.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1. 19:04경 소속대 영내 독신간부숙소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데스크탑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접속하여 음란물 동영상 8개를 다운로드하고, 2019. 3. 12. 03:12경부터 2019. 3. 12. 20:45경까지 같은 프로그램으로 위 동영상을 자동으로 공유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함으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함

• **주요 쟁점**

- [1] 인터넷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다운로드를 받은 후 해당 동영상 파일이 자동으로 다른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공유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음란물유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사용자들 간에 공유하는 방식인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피고인이 토렌트 시드파일(공유 파일의 모든 조각을 가지고 있는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고 다운로드를 마치면 자동으로 음란물 동영상 파일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유되는 경우, 음란물배포의 점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본 판례

• **원심 및 항소심 판단**

- 원심: 육군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2019고65) 2019. 12. 17. **벌금 100만 원** 선고
- 항소심: **항소기각**
  - \* 원심은 피고인에게 음란물배포의 고의를 인정하였고, 항소심은 원심과 같이 음란물배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을 입증한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시함

• **항소심 판단 이유**

[1] 음란물배포의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을 2009년경부터 사용한 점, 헌병 조사 시 토렌트가 파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유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알았으나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된 후 파일 공유창에 '배포중'이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파일을 직접 업로드 한 적은 없으나 토렌트가 검색어를 통해 타인의 PC에 있는 파일 등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임을 알고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음란물배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토렌트' 기능상 다른 사용자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 함과 동시에 또 다른 사용자들에게 그 파일이 공유된다는 사실과 다운로드를 완료하면 '배포중'이라는 문구가 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2쪽, 소송기록 제42쪽),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배포중'이라는 문구가 뜬 것도 알고 있었고 이것이 공유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어렵잖이나마 인식하고 있었지만,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 다운로드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았다는 취지인지 묻는 군판사의 물음에 "예"라고 진술한 점(소송기록 제5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음란물 동영상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그리고 다운로드가 완료된 경우에 자동으로 공유되어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토렌트 시드 파일(공유 파일의 모든 조각을 가지고 있는 파일)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동영상 파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9. 3. 12. 03:23:20 위 시드 파일을 100%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의 데스크탑 PC를 통하여 2019. 3. 11. 19:04:30부터 같은 달 12. 20:45:29까지 위 시드 파일이 토렌트 이용자들에게 배포된 점, ③ 위 8개의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더라도 이 사건 동영상들이 음란물에 해당함에 의문이 없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위 동영상들을 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음란물배포의 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피고인 상고** ⇒ 대법원 **상고기각**(2020도8243)



○ 2019노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2020. 6. 11.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군인등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8. 26. 02:01~09:54경 사이 모텔에서 군인인 피해자 A(여)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으나 피해자는 사실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여 미수에 그침

[준강간미수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친구인 B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야 존나 맛있어. 너도 해볼거면 해봐”라고 속삭여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종용하였고, B는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으나 피해자는 사실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교사하였으나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여 미수에 그침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회 사진촬영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함

• **주요 쟁점**

- [1] 현장에서 순차적인 공모와 시간·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합동성 인정
- [2]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

• **원심 및 항소심 판단**

- 원심: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2019고11) 2019. 11. 8. 징역 2년 6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선고
- 항소심: 원심파기(징역 5년, 취업제한 5년)

• **항소심 판단 이유**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인정한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적절히 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범 B가 사전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불렀다거나 모텔에 입실할 당시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를 암묵리에 상통한 정황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적어도 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착각하고 준강간을 한 후 공범 B에게 피해자를 준강간할 것을 권유한 때 피고인과 B가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가 피고인의 간음범행으로 인해서 형성된 피해자의 심리적 제약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①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간음을 하였는데, 그 모습을 공범인 B가 보았고, 피고인이 B에게 “야, 존나 맛있어. 너도 해봐”라고 간음할 것을 권유하였다. ② 이어서 B는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이미 하의가 벗겨져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는 실행에 나아갔다. 피고인과 B의 간음행위 사이에 약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B 중 한 명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심리적 제약이 계속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 B의 간음행위의 합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해자는 “방에 남자 둘이서 같이 있다는 것도 무서웠는데, 제가 뉴스 같은 것을 봤을 때, 성폭행을 하고 나서 살인했다는 기사도 많이 봐서 혹시라도 해코지할까봐 무서워서 잠든 척을 했다”고 진술하거나, “저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했다는 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잠에서 깬 것을 알면 두 사람이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눈을 계속 감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간음할 당시부터 공범인 B가 이어서 피해자를 간음할 때까지 피해자의 심리적 제약 상태가 지속 되었다. ⑤ 피고인은 B가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며, B 또한 피고인의 카메라 촬영음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가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다시 입혀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들키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이후부터 정신적인 장애 증상을 보였고 자살 시도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의사 C가 작성한 진단서 및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병명은 ‘우울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우울기분, 불안, 악몽, 불면, 자살시도, 스트레스의 반복적 회상에 대한 공포감 등의 증상으로 상기 병명 하에 향후 부정 기간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C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사실이라면 우울장애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른 업무적 스트레스는 직장생활 과정에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판시 범행의 발생일인 2017. 8. 26.부터 의사 C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기 전인 2019. 4. 9.까지 어떠한 정신과 치료도 받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진술 및 의사 C의 소견서를 토대로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부터 계속하여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 증상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⑤ 비록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진단이 있는 사이에 동료 간부들과의 마찰 및 부대적응의 어려움 등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 역시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실은 피해자의 증상을 악화시킨 요인일 뿐 주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키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 상고** ⇒ 대법원 **상고기각**(2020도7872)

- 2020노5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0감노1(병합) 치료감호, 2020전노1(병합) 부작명령, 2020처노1(병합) 치료명령 [2020. 7. 2.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말 일자불상 새벽시간경 피고인의 자가에서 친딸인 피해자 A(여, 당시 13세)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며 접근하여, 피해자 위에 올라타거나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쓰다듬는 등 2017. 8. 5.까지 한달 평균 20여회 가량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혀로 음부를 핥고,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빔으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청소년성보호법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말 일자불상경 04:00~06:00 어간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방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큰 사이즈 딱풀과 비슷한 크기의 로션 통 등을 넣음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함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01:00~03:00 어간 피고인의 자가에서 당시 안방에 2인용 침대에서는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고, 1인용 침대 위에는 밖에서 내부가 들여 보이지 않는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텐트 안에 피해자가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은 텐트를 열고 들어온 후 텐트 문을 다시 닫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장난을 치다가 완력을 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범행을 계속하면 같은 방에 있는 자신의 처에게 발각당할까 두려워 멈춤으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청소년성보호법위반(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6. 5.~6. 어간 피고인의 자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여, 당시 14세)를 1회 간음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6.~8. 어간 피고인의 자가에서 자신의 침대에 엎드려 누워 휴대전화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위 피해자(여, 당시 15세)의 옆에 누운 후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음부 부위를 만지며 추행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는 등 위 일시 이후 1~2달이 경과한 시점 일자불상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8. 6. 어간 피고인의 자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여, 당시 14세)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 부위를 노출시킨 후 노출된 성기 부위와 피고인의 손가락 내지 도구를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 삽입한 모습을 휴대전화로 수십여 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성기 부위를 사진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8. 5. 피고인의 자가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17세)가 생리 중이었던 관계로 평소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내지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경 피고인의 자가에서 둘째 처제인 피해자 B(여, 37세)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휴대폰을 넣고, 무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2017. 9. ~ 1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의 치마 속, 엉덩이, 음부 등을 촬영함으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 **주요 쟁점**

- [1] 치료감호와 함께 부작명령을 선고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 판단기준
- [2]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부작명령 사건에 대하여도 군법 적용대상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없으므로 보호관찰의 부과를 전제로 한 전자장치의 부작명령 역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

• **원심 및 항소심 판단**

- 원심: 육군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2019고70) 2020. 1. 8. 징역 12년, 취업제한 5년, 치료감호처분 선고
- 항소심: 항소기각

• **항소심 판단 이유**

- [1]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작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작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가능성, 피부작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하여 부작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 [2]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부작명령 사건에 대하여도 군법 적용대상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없으므로 보호관찰의 부과를 전제로 한 전자장치의 부작명령 역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판결 참조). 비록,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자장치의 부작명령은 허용된다고 본 항소심 판결도 있으나(2012. 5. 8. 선고 2011노282, 2011전노4 판결), 군인 신분의 상실을 전제로 전자장치 부작명령을 허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입법론으로는 별론으로 하고 해석상은 불가하다고 보인다.

• **쌍방 상고** ⇒ 대법원 **상고기각**(2020도9323)

## ○ 2020노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0. 7. 23. 선고]

###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 19:2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소재 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 야간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도로 바닥에 횡단보도 예고 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 도로의 가로등이 작동하지 않아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에 있는 신호등의 신호 변경에 대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A(8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범퍼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 • 주요 쟁점

[1]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

[2]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

### • 원심 및 항소심 판단

- 원심: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2019고41) 2020. 1. 21. **금고 4월** 선고

- 항소심: **원심파기(무죄)**

### • 항소심 판단 이유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Y자 형태의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써 피고인은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정차함이 없이 그대로 양 갈래 길의 좌측으로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당시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고장소 부근 인도 쪽에 가로등이 없었다. 전방 신호등 쪽에는 가로등이 있었는데 고장이었다. 피해자가 갑자기 나온 지점은 가로수가 있었고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이 나오리라 예상치 못하였다. 충격 이후까지도 식별할 수 없었다. 가로수 두 번째에서 갑자기 검은 것이 달려드는 게 보이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후 맞은편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려줄 정도로 현장에서 바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밝기가 어두웠다."고 진술한 점, 조사경찰관 경위 장00은 "가로등의 끝부분이 고장이 났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장소가 많이 어두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당시 어두운 현장에서 갑자기 차로에 나타난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Y자 형태 교차로의 우측에 위치한 대향차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운전자로서는 전방의 장애물을 미리 발견하기 상당한 애로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부득이 하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사고는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은 야간에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안인바,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보행자가 무단으로 횡단하리라고는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으로서 보행자들이 교통법규를 지켜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할 것으로 믿고 정상 속도로 운행하면 족할 것이며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③ 피고인은 "진골교차로는 커브가 꺾이는 도로라서 과속한 적 없다."고 진술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 점, 주변 CCTV 영상자료 및 현장측정 자료를 통해 감정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에 따르면 분석 구간 전체에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60.68km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교통사고분석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의 추정 속도는 제동시점 시속 59.1km, 충격시점 시속 34.6km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주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군검사 상고 ⇒ 대법원 **상고기각**(2020노67)

## ○ 2020노50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2020. 7. 30. 선고]

###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입대전인 2019. 6. 5.경 모바일 게임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여, 12세)가 피고인에게 '집을 나오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버스 승차권을 보내주어 인천으로 오게 한 다음, 2019. 6. 6. 13:00경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2019. 6. 8. 11:53경 경찰관에 의해 발견되기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르바이트 장소인 인천 소재 편의점 등에서 잠을 자게 하는 등 약 46시간 동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무런 신고 없이 보호함

### • 주요 쟁점

- [1] 가출을 하려는 아동에게 버스 승차권을 보내 주어 보호자로부터 이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 가출 아동과 함께 지낸 경우, 피고인에게 그 가출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자로부터 이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경우 사회 통념상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가출 아동임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항소심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의 목적과 규정 내용 등과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자로부터 이탈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 • 원심 및 항소심 판단

- 원심: 육군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2019고53) 2020. 1. 9. 무죄 선고
- 항소심: 원심파기(선고유예(벌금 300만 원)) 확정

### • 항소심 판단 이유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실종아동 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의 목적과 규정 내용 및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9. 6. 6. 13:00경부터 2019. 6. 8. 11:53경까지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 관한법률위반죄 및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군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친하게 지냈으나 서로 이성으로 사귀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2세인 초등학생이었고 피고인은 20세인 대학생으로 나이 차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가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감독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PC방과 찜질방 등지를 출입한 점, 피해자는 가출하여 피고인을 만난 때부터 경찰관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계속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를 '보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정폭력 또는 학대를 당하여 지켜주려고 하였고 집으로 돌려보내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 돌려보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부모님이 걱정할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피해자를 진심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게 맞다 생각했어요. 솔직히 가출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장난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나 알바도 뛰는데 데리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3일 동안 놀다가 집에 보내려고 했어요.", "(피해자를) 보자마자 어려서 바로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개한테 성격이 많이 늘리고 개가 너무 싫다고 투정을 부려서... 보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가출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을 때 피고인의 부모님 으로부터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말을 듣고 알겠다고 대답하고 돌려보내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친언니는 "피해자가 가정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 "어린 동생을 성인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보호했다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역시 가출한 이유에 대하여 가정폭력 또는 학대를 받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보호자로부터 이탈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2019노388 군사기밀보호법위반 [2020. 8. 20. 선고]

###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속부서에서 잠수함 및 지원함사업 담당장교로 복무하던 중, 군사Ⅲ급 비밀을 자신의 비밀관리기록부와 비밀이력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 16. 공소외 소령 A에게 잠수함 관련 업무를 넘겨 주면서 위 비밀의 관리도 함께 인계하여 더 이상 위 비밀을 업무상 취급하지 않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5. 11. 16. 14:08경 평소 친분이 있던 B 회사에 근무하는 공소외 C로부터 전화통화로 "D사업 추진 기본전략(안)"을 구할 수 없느냐?"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날인 2015. 11. 17. 08:28경에도 재차 같은 부탁을 받게 되자 "확인해보겠다."라고 이를 승낙하고, 2015. 11. 18. 오전경 우연히 이 사건 비밀을 보고 있던 소령 A에게 위 비밀을 열람하겠다고 말한 뒤 비밀이력카드에 기록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함이 없이 위 비밀을 가져가 1부를 복사함으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였고, 피고인은 2015. 11. 19. 15:35경 B 회사 건물 우측에 있는 흡연장에서 C에게 보고 파기해 달라."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탐지하거나 수집한 비밀의 복사본 1부를 건네줌으로써 피고인은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여 이를 타인에게 누설함

### • 주요 쟁점

업무상군사기밀누설죄에서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 및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의 판단기준

### • 원심 및 항소심 판단

- 원심: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2019고3) 2019. 11. 19. 선고유예(징역 1년) 선고
- 항소심: 원심파기(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 항소심 판단 이유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직무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정한 사무를 통칭하고 그 직업, 직무는 법령에 의하든, 관례에 의하든, 계약에 의하든 관계없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득하는 사람'이라 함은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보조업무상 필요로 당해 군사기밀을 열람하고 참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의 의미는 업무에 기인하여 당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유가 반드시 군사기밀인 사항을 주재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 일에 참여하고 또는 상관의 명령에 의해 조사에 종사하는 등으로 인해 알게 된 것도 모두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로 인하여 점유한'의 의미는 업무에 기인하여 입수하고 있는 것으로, 군사상의 비밀인 물건의 보관을 직무 또는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또 반드시 주재할 필요도 없으며, 단지 그 일에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 4022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64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67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3. 12. 31.부터 2015. 12. 27.까지 잠수함/지원함사업 담당으로 근무한 점, ② 피고인은 2014. 9. 25.부터 군사Ⅲ급 비밀을 자신의 비밀관리기록부와 비밀이력카드에 등재하여 열쇠를 보관하는 등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③ 피고인은 2015. 1. 16. 잠수함 관련 담당자로 새로 전입 온 A에게 이 사건 비밀의 관리도 함께 인계한 점, ④ 피고인은 2015. 11. 18. 오전 경 사무실에서 A에게 이 사건 비밀을 열람하겠다고 말한 후 복사하여 가져간 뒤 2015. 11. 19. C에게 위 복사본 1부를 건네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편제상 직위와는 달리 주로 수상함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잠수함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 실제 업무와 관련 없이 이 사건 비밀을 단순 보관했을 뿐이고, A에게 인계한 후에는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비밀의 존재나 내용에 대하여 몰랐다고 주장하나, ① A는 "피고인이 저에게 인계해 줄 당시 사업과 관련하여 누설된 문건에 대해 'D 사업 추진 전략이 확정되었다'라거나 '사업에 들어가는 관련 문제만 해결되면 사업이 착수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는데, 문건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는 점, ② C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D 사업 추진 기본전략이 있다던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위해 받은 군사Ⅲ급 비밀이 배부되어 접수되어 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C로부터 부탁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비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비밀을 입수할 당시에도 잠수함/지원함사업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A에게 부탁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비밀을 입수한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직책, 계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업무상 필요로 당해 군사기밀을 열람하고 참고할 수 있는 지위에서 이 사건 비밀을 관례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에게 이 사건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피고인 상고 ⇒ 대법원 진행 중(2020도11949)

○ 2020노1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0. 8. 27.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A(여, 당시 11세)와 채팅을 해오다가 군입대전인 2018. 1.경 서울에서 만난 뒤로 서로 사귀면서 성관계를 하였고, 같은 해 3. 14. 23:00경 대전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 가슴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영상통화 화면에 피해자의 가슴을 보이도록 하고 이를 보면서 자신이 자위 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등 같은 해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함

• **주요 쟁점**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판단

[2]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행위가 피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성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원심 및 항소심 판단**

- 원심: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66) 2019. 3. 29. 무죄 선고

- 항소심: 항소기각

• **항소심 판단 이유**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해자가 아직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 완전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중학생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피임도구를 가져오라고 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미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어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을 스스럼없이 대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나 영상통화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나 영상통화 당시 보여준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어머니가 작성한 고소장과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사실 관련 메모의 각 기재,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성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특히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 하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5초 간지럼을 받기로 하다가 우연히 '성감대'를 찾아서(피해자는 옆구리, 피고인은 귀) 분위기를 타서 성관계를 하게 되어 3월 중순까지 3, 4번 성관계를 합의하에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보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대학생이고 알바를 해야 해서 볼 시간이 많지 않아 자주 영상통화를 하였는데 가끔 통화 도중에 피고인이 요청하여 자신의 가슴을 보여주고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달리 이 사건 영상통화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한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판결에 군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군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군검사 상고 ⇒ 대법원 진행 중(2020도12419)**

○ 2020노1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20. 9. 24.]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3. 17: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로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불륜관계를 지속해온 피해자 A에게 '너 같음 풀겠니, 야 너 같으면 믿겠냐. 죽어버려, 죽으라고.'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9. 5. 15.경까지 총 34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

• **주요 쟁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처벌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여부 판단

• **원심 및 항소심 판단**

- 원심: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2019고64) 2020. 3. 26. **벌금 600만 원** 선고
- 항소심: **항소기각**

• **항소심 판단 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바434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특히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대부분이 피고인이 자신을 자학하는 내용이라 할 지라도 "죽어버려 개같은 걸레년 지새끼 죽인 더러운 년", "더러운 걸레 000, 더러운 창녀 000 더러운 갈보 000"이라는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수초 단위로 반복하여 보내어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이 피고인과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문자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관계를 회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 상고** ⇒ 대법원 **상고기각**(2020도14141)

## ○ 2020노88 상판모욕 [2020. 10. 8. 선고]

###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1.은 2019. 7. 29. 08: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속대 여군 75명이 함께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인 중사 A(여)가 과실을 과도하게 지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저거 시발 감봉이랑 퇴직금 감봉깎 시켜버릴까 ㄷ갈네 진짜"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피고인2.는 2019. 7. 29. 08: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위 피해자가 목욕탕 청소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함

### • 주요 쟁점

- [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2]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사례

### • 원심 및 항소심 판단

- 원심: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2019고14) 2020. 2. 13. 피고인들 각 무죄 선고
- 항소심: 원심파기(피고인들 각 선고유예(징역 4월), 피고인1. 확정)

### • 항소심 판단 이유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상관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비록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포함한 목욕탕 청소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을 과도하게 지적하자 피고인들이 격앙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소 언어습관에 따라 게시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군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동기와 목적은 피해자로부터 목욕탕 청소 불량률 이유로 과실을 과도하게 지적받자 격앙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를 동기들에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유리한 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을 뿐 정당행위의 요건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②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과실을 과도하게 지적받은 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명하려는 시도 없이 동기 여군 75명이 함께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B로부터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에 대한 음해성 발언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자기를 포함한 몇몇 동기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상관모욕죄는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기분에 관하여 "건들이지 말아야 하는 부분까지 건들여서 인격적으로도 모독을 느꼈고, 학생지도관으로서 점호 때마다 70명 교육생들의 눈을 봐야하는데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애들이 무서워졌다. 과연 이 정도까지 내가 욕을 먹을 만큼 과실을 준 것이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경위 및 당시의 구체적 상황, ② 피고인들의 게시글 중 '저거'는 '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삼인칭 대명사이고, '도라이'는 '생각이 모자라고 행동이 어리석은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모두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점, ③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지칭하여 '저거 시발', '도라이'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1.은 이 사건 게시글에 이어 '아니 그리곡ㅋㅋㅋ외박을 받았으니까 나가지 연등한다고 지랄을 왜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⑤ 피고인들의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 ⑥ 당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있었던 동기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의 게시글로 인해 불편함을 느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자신들의 상관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게시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당시 피고인들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 피고인2. 상고 ⇒ 대법원 진행 중(20도14576)



○ 2020노130 모욕 [2020. 10. 15.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0. 14: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소령 A(여, 40세)가 피고인과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피해자의 배우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2015. 4. 21.경 카카오토티어 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한 글에 "언니 참 불쌍해.. 바람나서 딴 살림살고 있는 남편 아직도 기다려요? 바람난 남편 안돌아가요..쫓쫓"이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2019. 5. 14.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

• **주요 쟁점**

[1]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 여부

[2]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들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형법상 모욕죄가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고, 댓글을 바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 **원심 및 항소심 판단**

- 원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2019고29) 2020. 3. 24. 벌금 100만 원 선고

- 항소심: 항소기각

• **항소심 판단 이유**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3438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B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2016. 6월경 알게 되었으나 B와는 내연관계가 아닌 단순한 친구관계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당심에서 'B가 과거 이혼한 것으로 알고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8. 6월경에 비로소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B와 함께 찍은 사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B가 내연관계가 아닌 단순한 친구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자 당심에서 일부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일 뿐, 2019. 5.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쌍하고 구질구질 해보여요. 의미 없는데 아직도 프사 걸어놓고 자존심도 없이(이하 생략)"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을 통해 B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순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피해자의 글에 "ㅋㅋㅋㅋㅋ 소원도 ㅋㅋ 우리 기념일도 축하해주세요~ 언니 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한 후 위 글이 피해자에 의해 바로 삭제되어 제3자에게 장시간 노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 내용 및 표현 수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댓글이 게시되어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이상 이후 위 글이 삭제되었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며,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 상고 ⇒ 대법원 상고기각(2020도14660)**

○ 2020노149 무고 [2020. 11. 12.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7. 09:10경 소속대 군사경찰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하사 A에 대한 군인등간간 등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A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군사법경찰관에게 A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고, 그 자리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고소의 내용은 "2018. 2. 5.(월) 22:00경 B시 소재 아파트 내 안방 침실에서 피고소인(A)이 저를 강간한 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원한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A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함

• **주요 쟁점**

- [1]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 정도(적극적인 증명)
- [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 시 고려할 사항
- [3] 원심이 유죄 인정의 근거로 밝힌 사정들은 피고인이 강간을 당하였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지 성관계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므로, 가사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무고자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원심 및 항소심 판단**

- 원심: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2019고19) 2020. 3. 2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항소심: 원심파기(무죄)

• **항소심 판단 이유**

-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는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920 판결 등 참조).
- [2]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 [3]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유죄 인정의 근거로 밝힌 사정들은 피고인이 강간을 당하였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지 성관계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므로, 가사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무고자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 이유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2. 5. 피고인의 집 안방 침실에서 피무고자에게 강간의 피해를 당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② ① 피고인은 "2017. 9. 처음 전입 와서 알게 되었고 피무고자와는 연인관계가 아니다. 피무고자 말고 다른 남군 동료들과 단둘이서 음식점을 가거나 카페를 가거나 술집을 간 적도 종종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무고자는 "2월~3월 사이 피고인의 집에 가면서 2~3회 정도 성관계를 했었다. 그런데 일자나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 집의 구조를 대부분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이 좀 좁은 구조여서 한 번 들어온 사람은 구조를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피무고자와 길게 통화한 이유에 대하여 "우선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따로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고 불만을 표시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피무고자는 제 말을 무시하거나 다른 말로 대화를 시도하고 그랬다."라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강간피해 다음날 함께 출근한 점에 대하여 "2018. 2. 6.에 피무고자가 데리러 오겠다고 카톡이 와서 무시했다. 출근을 하려는데 피무고자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군대 내 분위기가 저는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쉽게 밝힐 수 없는 분위기였고 그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피무고자가 그렇게 하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 제가 초임하사 때 성군기 사고를 겪은 여군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군을 보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만약 신고하게 되면 그렇게 낙인이 찍히고 저한테 피해가 올까 봐 그런 걱정을 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해 이후에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통화를 자주 했거나 같이 출근한 정황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고소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무고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겠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는 따로 없다. 피고인과 관련된 통화, 문자 내용을 다 지워서 지금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늦게 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진급도 있고 장기도 있고 커리어가 있으니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저만 참고 넘어가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를 못 하였다. 저랑 친한 수병이 피무고자가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말해줬고 남편까지 알게 되어 이제는 참기가 너무 힘들고 트라우마가 남을 거 같아서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피무고자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 위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 **군검사 상고 ⇒ 대법원 상고기각(2020도16379)**

## ○ 2020노21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0. 12. 10. 선고]

###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방헬프콜에 자신의 비위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한 자가 조리직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2019. 4. 30.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소속함 사관실에서 '19년 전반기 부사관 근무평정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소령 A, 위원인 피해자 대위 B에게 "조리장과 행정장은 잘 줄 마음이 없다. 낮게 줘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들은 2019. 5. 2. 09:00경 소속함 사관실에서 개최된 '19년 전반기 부사관 근무평정 심의위원회 중 조리장 중사 C에게 근무평정 등급을 낮게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중사 C를 낮은 등급으로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 대위 D, 위원 대위 E, 위원 원사 F에게 '조리장은 낮게 줘라'라고 전달하였으며, 결국 피해자 소령 A 외 4명은 '19년 전반기 부사관 근무평정 심의위원회에서 조리장 중사 C에 대한 평정등급을 'D등급'으로 의결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 • 주요 쟁점

- [1]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누락하여 직권파기
-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의 의미

### • 원심 및 항소심 판단

- 원심: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2019고17) 2020. 6. 23. 무죄 선고
- 항소심: 원심파기(무죄)

### • 항소심 판단 이유

[1] 형법 제58조 제2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이를 공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데,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선고 당시 '공시여부는 나중에 의견제시 하겠다'고 진술하였을 뿐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심에서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고 있는바, 당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2]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 및 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조리장과 행정장은 잘 줄 마음이 없다. 낮게 줘라."라고 말한 사실 및 이것이 지시나 지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직무행위가 위법에 이르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의 이 사건 근무평정 관련 지시가 조리장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2018. 2월경 전입온 조리장이 전입 후 몇 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재고관리를 잘못해 남는 부식을 야간에 몰래 버리는 일을 거듭하여 주임원사와 부장으로부터 주의를 몇 차례 받았던 사실, 조리장이 전입되기 직전에 000함에서 화재가 한 차례 발생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평소 손상통제를 강조하며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방지에 힘써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장에서 전기플레이트 전원을 끄지 않아 확산형 소화기가 작동한 사고가 2018. 10. 13.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조리장을 당직근무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조리장을 24시간 대기조로 생각하여 아침, 점심, 저녁 조리 시간 전후로 조리병들을 관리·감독하라는 취지였으나 조리장이 출근 전 아침식사 또는 퇴근 후 저녁 식사 조리과정에 주로 참여하지 않았던 사실 역시 모두 인정된다. ② 조리장에 대한 근무평정을 낮게 주라는 피고인의 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가 헬프콜 신고 및 감찰조사에 따른 서면경고 처분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a)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근무평정에 관한 지침으로 "업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잘 받았으면 좋겠고 업무를 잘한다는 것은 자기 업무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팀워크가 좋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다. 조리장과 행정장은 잘 줄 마음이 없다. 조리장은 근무를 태만히 하고 인원관리를 소홀히 했다. 행정장은 함장 방에 조직도를 3개월째 게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낮게 줘라."라는 말을 한 사실은 지휘관이 강조한 손상통제에 대한 조리장의 임무수행 실패와 평상시 조리장과 행정장의 복무태도를 지적함으로써, 지휘권을 확립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b) '19년 전반기 해군 부사관 근무평정 작성 지침에 의하면, 근무평정이 부사관의 교육, 보직, 진급, 전역, 상벌의 결정 및 직무부여 등 인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평소 피평정자의 업무실적 및 과실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조리장과 행정장의 과실을 언급하며 두 사람의 근무평정을 낮게 주라고 한 행위는, 업무를 잘하는 사람에게 평정을 높게 부여하고 업무를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평정을 낮게 부여하라는 공정성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행위로서, 인사공정의 목적과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허용된 직권행사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c) 더욱이 특정인에게 특정 등급을 지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단순히 평정을 낮게 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방법으로 지시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있다. ③ 그렇다면,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지시가 군인사법 제2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군 근무성적평정 규정과 국방 인사관리 훈령, 해군 근무평정 규정, '19년 전반기 해군 부사관 근무평정 작성지침 등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고,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며,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입증에 이르지 않았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위 판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지시는 피고인이 지휘관인 함장으로서 소속함 인원의 근무평정 시 피평정자의 업무실적 및 과실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무평정 결과에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할 목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는 일부 인원의 업무과실을 지적하면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심의 판단에 군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군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군검사 상고취하 확정

## ○ 2020노5 군인등강제추행, 상관폭행 [2020. 12. 17. 선고]

### ● 공소사실의 요지

#### [상관폭행]

피고인은 2019. 2. 19. 10:00경 소속대 연병장에서 제설작업 도중 삼으로 눈을 퍼서 상관인 피해자 중위 A(여, 23세)의 머리 위에 1회 쏟고, 재차 빗자루로 눈을 묻혀 위 피해자에게 1회 뿌렸으며, 이후 다시 눈덩이를 뭉친 후 위 피해자의 뒤통수에 1회 던지는 등 같은 해 4. 1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를 각 폭행함

####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 08:30경 소속대 소대장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등의 없이 주무르는 등 같은 해 4. 18.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 ● 주요 쟁점

상관에 대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폭행 및 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 및 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대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관에 대한 폭행 및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의율하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원심 및 항소심 판단

- 원심: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2019고97) 2019. 12. 19. 무죄 선고

- 항소심: 원심파기(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 항소심 판단 이유

상관폭행죄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인바, 폭행의 불법성의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상관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폭행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군검사의 주장은 이유있다.

① 2019. 2. 19. 10:00경 상관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법정에서, “저는 눈싸움하는 연병장에서부터 떨어져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삼으로 눈을 제 머리 위에 쏟아서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눈을 뿌리거나 눈덩이를 뭉쳐 제 뒤통수에 때렸으며, 그로 인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누군가 저에게 눈덩이를 던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기에 강도는 1-10 중에 당연히 10이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2019. 4. 초순 13:30경 폭행과 2019. 4. 19. 17:00경 폭행 피해에 대하여도 유사한바,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럼에도 반복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느꼈고, 특히, 병사들 앞에서 자꾸 그러니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 피해자에 대한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폭행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인다. ③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장난을 친 행위와 피해자에 대한 행위를 분리하여 유독 피해자에 대하여만 죄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와 관련해, “그것이 한 번에서 끝났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하지 말아라, 기분이 나쁘다고 그렇게 의사표현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똑같이 여러 방법으로 저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장난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상관인 피해자에게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행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수단의 적법성, 법익의 균형성,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않고,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통상 상호 간에 할 수 있는 장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 ④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장난을 치더라도 소대장으로서 전혀 제지하거나 통제하지 아니한 점을 정당행위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하는 피고인의 장난과 피해자가 입을 피해 사실을 동일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장난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은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피해자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거나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도95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당시 법정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피고인도 보이는데 안마를 해드리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거의 동시에 주무른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동의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는 점, ③ 피해자는 어깨나 종아리를 안마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분명하게 느꼈고, 즉각하여 거부의사를 밝힌 점, ④ 원심이 실시한 것과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밀폐된 장소가 아니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감기약을 받거나 포단을 덮기도 한 사정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소대장실이나 상담실은 폐쇄적인 공간이며, 용무가 있는 사람 외에는 드나들지 않는 공간이다”라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감기약을 받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설령 원심이 실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추행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감기약이나 포단을 받았다는 사정이 추행행위를 용인하는 의사로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습추행 내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군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 ● 피고인 상고 ⇒ 대법원 상고기각(2020도18311)

○ 2020노2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2020. 12. 17.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입대전(당시 17세)인 2017. 10. 7. 18: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여, 15세)와 술을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20:30경 강원 영월군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안방에 가서 쉬면 어떻겠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눕자 피해자와 함께 누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함

• **주요 쟁점**

[1] 피고인이 군입대 전 청소년인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안

[2]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 **원심 및 항소심 판단**

- 원심: 육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2019고65) 2020. 6. 23. **징역 5년** 선고

- 항소심: **항소기각**

• **항소심 판단 이유**

원심은 판결문에 위 항소이유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특히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이후 일부 속옷도 입지 않고 챙기지도 않은 채 급히 피고인의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안방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1회 경찰 조사에서 "술을 다 마신 후 피해자가 화장실 갔다가 와서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누웠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술을 다 마시고 나서 토를 하려 화장실을 갔다 와서 피해자 스스로 침대로 간 것이 아니라 제가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서 쉬었다 가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이 잘못 진술하였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아 이게 취하는 건가'라는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합니다.", "(피해자가 술 마시던 도중) 평소 저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말도 하였고, 허가 꼬부라져서 발음이 세는 것으로 보아 취해 보이긴 했다.",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피고인에게 '이게 꿈이냐'라고 물어 보았다.", "꽤 많이 취했다고 생각을 한 것이 관계를 할 때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보고 많이 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맨 정신이라면 이런 사진을 찍었을 리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술에 취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변호인은 '진실반응'이 나온 피고인의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기초로 피해자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지 않아 심리를 미진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 폴리그래프 검사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몰래 약을 먹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판단불능'으로 판정된바 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판결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상고 ⇒ 대법원 진행 중(2020도18314)**

## ○ 2020노2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 12. 23. 선고]

###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조회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2018. 6. 21. 10:59경 카카오톡으로 대출 문의를 하였고,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맡기면 성명불상자가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하는 형식이라는 안내를 받고, 2018. 6. 22. 12:56경 피고인 명의의 A은행 체크카드의 관련 정보를 알려준 뒤 위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함

### • 주요 쟁점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서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가'의 판단

[2]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원리금 상환 용도로 체크카드를 제공한 것과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 • 원심 및 항소심 판단

- 원심: 육군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2020고4) 2020. 6. 24. 무죄 선고

- 항소심: 원심파기(벌금 50만 원)

### • 항소심 판단 이유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50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군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대출광고문자를 받아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2018. 6. 21.경 카카오톡으로 대출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자는 '우선 개인 돈 자체가 합법이 아닌 건 알고 계셔야 하시고요(11:14)', '대출 진행 순서는 먼저 서류 준비해주시면 심사볼수 있게 도움드리겠구요 심사승인이 나시게 되시면 상환카드 준비해주셔야 하구요 저희 쪽에서 대출금 지급해드리면 사장님 녹취전화통화 가시게 되십니다 녹취전화 후 차용증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11:25)' 라고 절차를 안내하였고, 이후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연락하며 피고인에게 '상환카드'의 일일출금한도를 확인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상환카드를 보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카드를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면서도 '입금은 상환카드가 도착해야되는 건가요(16:45)', '카드가 없어서 지금 다시 만들어야 해서요(16:51)'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성명불상자는 내일 카드를 발급받도록 안내하였다. 다음날인 2018. 6. 22. 피고인은 카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였다가 서류 문제로 발급받지 못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A은행 체크카드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성명불상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같은 날 16:23경 퀵서비스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당시 신용대출액이 1억여원이 있었고, 차후 주택대출을 위해 1, 2금융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신용에 영향이 가거나 차후 대출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원심법정에서 "당시에는 대출을 희망했던 금액이 손에 없어서 급하게 했던 상황이었고 대출을 상담하다 상환방식은 어떻게 하냐고 확인하니깐 본인들이 월 단위로 체크카드에서 원금과 이자를 빼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육군 간부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사건 행위 당시 경우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합법'이 아니라고 표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고, 앞서 살펴본 위 성명불상자의 영업방식에 대한 설명 자체로 피고인이 이로부터 대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위 대출이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며, 이 사건 접근매체의 사용권한을 대출원리금 납부 용도로 한정하였다고는 하나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된 이상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데 별도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식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피고인 상고 ⇒ 대법원 진행 중(2021도661)

## ○ 2019고29 모욕 [2020. 3. 24. 선고]

###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0.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배우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카카오토티에 업로드한 글에 “언니 참 불쌍해.. 바람나서 딴 살림살고 있는 남편 아직도 기다려요? 바람난 남편 안돌아가요... 쫓쫓”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019. 5. 14.경 위 피해자가 피해자의 배우자와 함께 찍은 웨딩 사진을 카카오토티에 업로드한 글에 “ㅋㅋㅋㅋㅋ 쇼윈도 ㅋ 우리 기념일도 축하해주세요~ 언니 ㅋ”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

### • 1심의 판단: 벌금 100만 원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들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상 모욕죄가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배우자와 피고인 자신 사이의 연인관계’를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 이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우 적대적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상태에서 2019. 4. 20.경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외도를 하고 있는 배우자를 계속하여 기다리며 가정을 지키려는 모습이 한심하거나 답답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9. 5. 14.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카오토티 계정에서 “ㅋㅋㅋㅋㅋ 쇼윈도 ㅋ 우리 기념일도 축하해주세요~ 언니 ㅋ”라고 댓글을 남긴 것은 피해자가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것처럼 가장하여 행동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비웃을 만한 일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에 피해자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들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들이 피해자가 단순히 불쌍해서 충고를 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작성한 표현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충분히 침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이 ‘바람난 남편’의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표현을 보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표현을 굴욕적이게도 ‘바람난 남편’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듣는 모습이어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는 더더욱 침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올린 글에 피해자가 바람난 남편을 계속하여 기다린다는 취지의 표현과 피해자가 겉모습으로만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취지의 뜻을 담은 ‘쇼윈도’라는 표현을 각 게시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와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이를 오해하여 부대에 민원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사진들 및 피해자의 배우자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카카오토티 계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목적이나 동기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수단도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되고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하여, 피고인에게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해자의 카카오토티 계정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에 비추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 모욕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다.

## ○ 2019고2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2020. 3. 31. 선고]

###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2. 피고인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음에도, 2015. 7. 23.경 마치 피고인의 장모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아파트 공급계약을 위조하였고, 2015. 7. 24.경 피고인의 장모가 피고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처럼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위조한 다음, 위 각 서류를 2015. 7. 말경 부대 등에 제출하여 부대장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 추천서를 발급받음으로써 부대장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군과 전세자금 대출 협약을 맺은 피해자 A은행으로부터 군 전세자금 대출금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

### • 1심의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피고인의 장모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아파트 공급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음. 그러나 본 재판부는 ① 이 사건 아파트 분양 홍보담당 A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를 상대로 수 회 아파트 분양상담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장모를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부부로부터 피고인의 장모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예정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장모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전부를 피고인이 직접 납부한 점, ③ 피고인의 처가 2015. 5.경 자신의 친구에게 "나 8월 말에 이사해...위례청약 자꾸 떨어져서 녹번에 샀어. 또 내가 이사하고 싶어질지 모르겠지만 2, 3년 뒤에 위례 분양하는거 될 때까지 내집서 살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피고인이 2015. 9. 취득세 등을 직접 신고·납부하였고, 2016. 5.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이름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⑤ 피고인의 장모는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주택에 40여년 간 거주하고 있으며, 갑자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장모가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부대와 은행에 제출한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군 전세자금은 직업군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군 전세자금 대출금을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여도 이는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재판부는 ①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금법 등 군 전세자금 대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군 전세자금 대출금의 용도를 전세금 지급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국방부 훈령, 지침 등 역시 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구입'을 목적 외 용도의 사례로 열거하고 있는 점, ③ 군 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군 전세자금을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부대에서 곧바로 원리금 환수조치 등을 단행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군 전세자금을 주택 구입자금 용도로 지원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부대장이 추천서를 발급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담당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허위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임대차계약을 적극적으로 제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말미암아 부대장이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에게 추천서를 발급해주는 등의 그릇된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

[3]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군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은행을 사기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본 재판부는 ① 군 전세자금 대출금은 전세금 지급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점, ② 군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취급하던 은행은 대출신청인이 전세금반환채권을 갖게 됨을 전제로 하여 그 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대출금의 회수를 담보하고 있었던 점, ③ 따라서 은행로서는 대출 신청인이 군 전세자금 대출금을 수령하여 이를 주택구입 등 타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이와 같은 경우 대출금 회수를 담보할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을 알았다면 군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은행에 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가 아파트 공급계약서, 임대차계약을 모두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위조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재판부는 ① 위 각 서류를 위조하는데 사용한 한글 문서파일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발견되었고, 한글 문서파일의 이름이 '민군관계연구 2015. 7. 23.'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당시 B대학교 안보과정을 이수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수강하던 과목 중의 하나가 '한국의 민군관계'이었으며,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처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점, ③ 위와 같은 한글 문서파일이 생성되었을 무렵 피고인이 장기간 휴가를 내고 노트북이 있던 자택에 머물어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부대 등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C의 인적사항이 임의로 기재되어 있고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는데, 군 전세자금 대출서류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중개사실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은 군인인 피고인만이 알 수 있었던 사정인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군 전세자금 대출금 등을 이용한 분양대금 납부 등의 제반 업무를 직접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위 각 서류 역시 피고인이 직접 부대 등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5] 결국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였고 편취한 대출금의 액수가 2억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대출원금 전액을 상환하고 이자를 일부 상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 ○ 2020고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 5. 19. 선고]

###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체의 직원이라는 사람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위 사람으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은 뒤, 2019. 10. 9.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

### • 1심의 판단: 벌금 10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자가 사기범으로서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대출을 중개하여 줄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일 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른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의 문언, 입법연혁 내지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체크카드 등을 교부한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사람에게 대출을 실행하거나 중개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4,200여 만 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제1, 2금융권으로부터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대출중개업체의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행위와 '대출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경제적 이익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 ○ 2020고13 상습도박(인정된 죄명 도박) [2020. 5. 19. 선고]

###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자신의 대학 기숙사 방실 및 생활관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인 'A'사이트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총 101회에 걸쳐 7,906,25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① 두 쌍의 트럼프 카드 중 카드에 기재된 숫자의 합이 높은 쌍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결과에 따라 배팅액의 약 2배에 달하는 게임머니를 획득하거나 배팅액을 모두 잃는 '바카라' 도박과 ② 6개의 공에 기재된 숫자의 합이 일정한 숫자보다 높은지 여부 또는 위 숫자의 합이 홀수·짝수인지 여부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결과에 따라 배팅액의 약 2배에 달하는 게임머니를 획득하거나 배팅액을 모두 잃는 '파워볼' 도박을 함

### • 1심의 판단: 벌금 400만 원

피고인에게 도박 전력이 없는 점, 도박에 사용된 실제 자금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의 이 사건 도박 범행의 내용,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도박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습도박죄에 포함된 각 도박죄만을 **유죄**로 인정하다.

## ○ 2020고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020. 8. 10. 선고]

###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4. 18: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자,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가오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다가 도로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위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 1심의 판단: 벌금 40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는데 이 사건 사고발생 시각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양방향으로 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등 도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한 다음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던 것이지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장소 주변 CCTV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길 위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와 전혀 무관한 행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부축하여 길 가장자리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도 자신의 승용차에서 하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길 가장자리로 이동함으로써 앞으로 주행하는 것이 가능해지자 곧바로 자신의 승용차를 출발하여 이동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는 차량 여러 대가 불법 주정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차량들 사이로 승용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여러 군데 존재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간에 승용차를 주차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이를 지나쳐 계속 주행한 점, 피고인은 적색신호를 보고 비로소 멈추었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쫓아 온 피해자의 제지를 받고 나서야 우측 길 가장자리에 승용차를 멈춰세운 점, 피고인은 하차 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혼자 넘어졌는데 무슨 뺑소니냐"라고 이야기하였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다.

## ○ 2020고7 군사기밀보호법위반 [2020. 11. 17. 선고]

###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연구센터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구소의 전반적인 업무 관리 및 납품되는 보고서의 최종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2. 5. 위 연구센터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B 성능개량사업 선행연구 용역」을 위탁받아 2013. 5. 6. 「B 성능개량사업 선행연구 용역 결과」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바 있으며, 피고인이 이를 최종 검토하는 등 군사기밀을 업무상 취급하였고, 피고인은 2014. 3. 1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직원 D로부터 "B 성능개량 사업을 했느냐?"며, "우리가 B 성능개량 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RFP(제안요청서)가 나오겠지만 그 전에 자료를 확인해서 준비를 하려고 한다. 자료를 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2014. 3. 28.로 예정되어 있던 C 출장 수일 전 D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A 연구센터에 있는 본인 사무실의 USB에 보관하고 있던 군사 Ⅲ급 비밀인 「B 성능개량사업 선행연구 용역 결과」의 일부 내용에 군사비밀 표지를 제거하는 등 편집을 한 후 이를 인쇄하였고, 피고인은 2014. 3. 28. 08:48경부터 10:21경 사이에 업무협약차 C를 방문하여 D에게 "보고 바로 파기하고, 자료를 잘 관리해 달라."고 말하며 서류봉투에 담아 준비한 「B 성능개량사업 선행연구 용역 결과」(98장)를 제공하였고, D는 같은 날 10:21경 이를 스캔하여 「B 개량사업 선행연구 결과보고서.pdf」라는 제목의 파일로 생성한 후 이를 C의 내부 서버에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이 누설한 군사기밀은 B의 전력화 계획 및 획득방안, 소요량, 작전 운용성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 Ⅲ급 비밀로써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던 피고인은 그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함

### • 1심의 판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군 경력을 통하여 군사기밀의 관리 및 취급업무의 중요성과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미칠 수 있는 현저한 위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에서 B 개량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사업제안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C 직원인 D에게 위 사업제안서 작성에 관련된 군사기밀을 누설하여 방위 사업에 관한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설한 군사기밀이 Ⅲ급 군사기밀인 이 사건 보고서 1건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전에 진행하였던 연구사업에서 D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고마운 마음에 자료를 잘 관리하여 달라는 당부를 하면서 이 사건 기밀을 제공하였을 뿐 이로 인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누설행위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연구소에서 자진 퇴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다.

## □ 육군 군사법원

○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 2019고38 사기, 상해, 강요, 위력행사가혹행위, 재물손괴, 협박, 폭행  
[ 2020. 1. 7. 선고]

###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19. 4. 4. 12:00경 소속부대 막사 1층 다목적홀에서 피해자 A가 교육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관자놀이를 3회 때리는 등 총 6회에 걸쳐 폭행함. ② 2019. 4. 6. 22:00경 B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 대변기에 오줌을 누게 하고 "소변 본 걸로 세수하고 마셔."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줌물을 퍼 올려 세수하듯 얼굴에 바르게 한 다음 "마셔."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 손으로 오줌물을 퍼 올려 약 5초간 입에 머금게 하고, 2019. 5. 중순~6. 초순 사이 03:00경 소속대 행정반 앞 불침번 근무지에서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따라오게 한 후 대변기 안에 있던 대변 일부를 손가락으로 집어 올려 입에 넣게 하고 "씹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 번 정도 씹게 한 후 "삼켜."라고 하여 억지로 그것을 삼키게 함. ③ 2019. 5. 중순 22:00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부고환염을 가하는 등 상해를 가함. ④ 2019. 5. 중순 22:00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때린 거 간부들한테 얘기하면 패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함. ⑤ 2019. 5. 18. 19:00경 소속대 사랑방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탁자 위에 1회 내리쳐 액정이 고장 나게 하여 수리비 52,000원이 들게 함. ⑥ 2019. 6. 3. 07:00경 소속대 지휘통제실 내 무전실에서 피해자에게 "따라해 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때릴 듯이 화나고 짜증나는 표정을 지으며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게 하여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함

### • 1심의 판단 및 쟁점

- 쟁점: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 판단: ① 사건신고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은 피해자의 몸에 있는 상흔을 주변 병사들이 발견하고 피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피해자가 허위 내용을 꾸며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피해자는 다른 부대원들로부터도 일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다른 부대원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피해 사실의 일부를 보고한 적이 있었으나 피고인과 같은 생활관을 계속 쓰고 있는 점,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신고가 늦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는 부족하며, ③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변경되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일부 구체적인 상황에서 부정확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될 수 있으며, ④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어떤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거나 이외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이에 징역 4년을 선고함

○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9고112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2020. 1. 16.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18. 7. 11. 22:00경 피해자 A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자도록 허락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아들을 재움으로써 피고인이 자신의 옆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2. 01:00경 피해자의 아들을 넘어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긴 뒤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에 피해자는 3차례에 걸쳐 '저리 가라,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갖다 대었으며, ② 2018. 7. 12. 06:00경 잠에서 깬 후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 **1심의 판단 및 쟁점**

- 쟁점: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 판단: 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9차례 정도 만났다고 주장 하는데 반해, 피해자는 고소 당시는 2차례 만났다고 진술하였다가 1회 기일에서는 10번도 안 되게 만났다고 진술하고, 3회 기일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5~6번 정도 만났다고 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체크카드 내역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날을 계수하면 한 달여 동안 적어도 9번 가량 만난 것으로 보이며, ② 이 사건 강제추행 이전 피고인과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피해자는 1회 기일에서는 '아니오, 저는 항상 손을 잡아준다거나 스킨십을 해준다거나 제가 스스로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3회 기일에서는 6. 30. 2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트 클럽에 아는 동생과 같이 있는데 올 수 있느냐는 연락을 하여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그곳으로 찾아와 4명이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키스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③ 피해자는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 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려움.
- 이에 무죄를 선고함

○ 수도권단 보통군사법원 2019고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상해, 폭행, 협박 [2020. 1. 7.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18. 4. 3. 18:30경 피해자 A(여, 17세)이 자신과 사귀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하고도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고 이를 숨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약 25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② 2018. 6. 초순 13:00경에서 14:00경 사이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7회 차서 폭행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③ 2019. 3. 28. 19:48경 소속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출산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며, 피해자의 부친이 유전자 검사를 이유로 피고인 부친의 머리카락을 뽑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기죄까지 같이 들어갈래? 어?", "전과자 되는 거야, 한순간에. 너 징역 1년, 2년 살아. 3년도 살 수 있고.", "니네 가족. 어? 니네 친척까지. 한 번에 몰아서 전과자 만들어 버릴꺼야, 우리가 무슨 동원을 다 써서라도." / "여기서 멈추는게 좋을 거야. 우리도 증거, 우리 한두 개가 아니거든 너하고, 니네 아빠, 그리고 니네 엄마, 니네 고모부 이렇게 묶어서 간다. 좋은 생각이지? 전과자 각이지?" 등을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4.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2018. 5.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 판단

. 2018. 4.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2018. 4. 6.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찾아가 발로 약 20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차 상해를 가한 사실, 병원 1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문안을 와달라고 요청하여 병원으로 간 사실, ② 피해자가 허벅지를 약 20회 폭행을 당한 직후 ㅇㅇ홈플러스에 간다는 피고인을 따라 전주에 함께 간 사실, ③ 피고인과 함께 전주에 가기 위해 피해자가 스스로 입고 있던 환자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사실, ④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ㅇㅇ홈플러스에 갔다가 벚꽃 구경을 하기 위해 동물원에 함께 갔던 사실, ⑤ 홈플러스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손등에 뽀뽀를 한 사실, ⑥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에 뽀뽀를 한 행동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심하게 폭행한 후라 다시는 안 때릴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어서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전주에서 돌아온 후 차 안에서 성관계를 제의하자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전에 두 차례나 맞았잖아요. 피고인이 너무 무서웠어요."라고 진술한 바, 다시는 때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여 스스로 피고인의 손등에 뽀뽀까지 한 피해자가 그 이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제의하자 또 맞을까봐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은 일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2018. 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2018. 5. 주말 오후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해자가 당일 술을 마신 경험이 2018. 1.경 처음 맥주를 마셔 만취한 이후 두 번째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B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가끔씩 소주를 마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및 2018. 4. 15. 19:00경에서 21:22경까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문자를 보낸 사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음주 경험 등에 대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축소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②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에게 "오빠, 미안하다. 나 때문에 맞았던 거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며 스스로 피고인에게 안겼다고 진술한 사실, ③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안겼고 피해자가 먼저 뽀뽀를 하여 애무 단계를 거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안긴 뒤 피해자가 먼저 뽀뽀를 한 적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평소처럼 뽀뽀를 하고 애무 단계를 거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바,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안긴 것은 기억하면서도 이후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위와 같이 대답하는 것이 일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 ④ 성관계를 한 당일 헤어진 이후 피고인과 서로 애정을 표시하는 문자나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는 등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이에 **징역 1년 6월, 일부무죄**를 선고함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예산, 경리, 계약, 재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A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군부대에 식자재 등 농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자로서, 2013. 2. 27.경부터 2015. 3.경까지 농수산물 도매업 등을 하는 B가 운영하는 업체의 군납 업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소속대 예산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 6.경 A로부터 "제0군단으로부터 식자재 납품계약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대 숙소에서, A에게 군납 관련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할 것을 요구하여, A는 시가보다 약 2억 원가량 비싼 7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약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제안서 평가기준표 초안을 A에게 미리 제공하고, A는 B 업체의 입찰 제안서를 피고인에게 미리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B 업체가 평가기준표 초안에 미달함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 입찰공고문 1단계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합격점수를 95점에서 90점으로 낮추고, 제안서 평가기준표 '장비/인력' 부분의 '1. 부식추진 차량 보유수준' 세부기준 중 5톤 냉동·냉장 탑차의 배점기준을 '4대이상 3점, 4대미만 0점'에서 '2대이상 3점, 1대 2점'으로 기준을 낮추어 평가기준표를 재작성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공고문과 함께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B 업체의 입찰담당자인 C에게 군납 입찰 관련 군부대 내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기준표 합격점수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입찰 전반에 관한 정보 및 입찰예정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도움으로 B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업체로 선정되어, 위 부대와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 위 숙소에서 자신이 2009. 10. ~ 12.경 매수하여 공무원 재산신고 회피 등 목적으로 소유자를 D 명의로 하고, 피고인의 처 등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설정한 채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B에게 5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3. 4. 위 ○○토지를 7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3. 12. 16. 피고인의 군 선배인 E의 배우자인 F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1.경까지 합계 6억 2,200만 원[F에게 4억 원, G(피고인의 배우자)에게 2억 2,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8. 19.경 사채업자인 H를 통해 1억 1,000만 원, I를 통해 1억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F의 증권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4. 9. 23. 피고인의 처제인 J 명의의 은행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억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F는 A가 이 사건 양구토지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2014. 4. 17. 근저당권자들에게 206,850,000원을 송금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95,150,000원(902,000,000원-206,850,000원)을 지급받고 A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실거래금액으로 신고한 5억 4,000만 원과의 차액인 155,150,000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 12.경 위 숙소에서 향후 계속되는 군납 관련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고 군에서 진행하는 각종 입찰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A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 3곳을 지정하며 "이곳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좀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이 사건 ○○동 아파트를 A가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A는 2014. 1. 2. 이 사건 ○○동 아파트를 전 소유자인 K로부터 A의 처남 L의 명의로 4억 6,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한 후, 2014. 2. 7. L 명의로 생명보험회사로부터 2억 8,3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M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4억 6,8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2014. 2. 7. L 명의로 위 ○○동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A는 2014. 4. 17. 피고인의 배우자인 G에게 위 ○○동 아파트를 4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G가 2014. 4. 18. 매매대금으로 N에게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N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동 아파트의 소유권을 G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2014. 4. 27. 위 아파트를 담보로 생명보험회사로부터 L 명의로 대출받았던 위 2억 8,300만 원을 피고인이 승계하고, 2014. 4. 30. G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A가 위 ○○동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지급한 4억 6,800만 원 보다 적은 4억 1,3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그 차액인 5,500만 원을 A로부터 뇌물로 수수함으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A로부터 합계 210,15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1심의 판단 및 쟁점**

- 쟁점: ① 직무관련성 ② 토지와 아파트 매매는 정당한 거래
  - 판단: ① 피고인은 군단 관리참모처 관리/예산과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군단의 예산운영과 결산에 대한 관리를 기본임무로 하면서, 예산의 편성과 계약체결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군단의 입찰, 계약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부대 계약담당자였던 O는 피고인에게 부대 입찰공고에 대한 결재권한이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위 업무와 관련한 실질적인 검토 및 수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A는 군부대에 식자재 등 농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자로서, 농수산물 도매업 등을 하는 B가 운영하는 업체의 군납 업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최소한 2013. 8.경부터 위 A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증거목록 순번 10, 11 각 녹취록 참조), 피고인이 A의 업무에 대하여 관련된 입찰공고 일정을 알려주거나 필요한 납품실적증명서 구비를 요청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부분 상호 간 직무와 관련된 대상임을 피고인뿐만 아니라 A를 포함하여 서로 인식하였다. 이 사건 군납업무, 부동산 거래행위 이전에 피고인과 A가 특별히 감안할 만한 개인적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합리적인 시세가 5억 4,000만 원임에도 155,150,000원을 시세에 부합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초과이익금으로서 추가적으로 받으며 매도하고, 이 사건 ○○동 아파트의 합리적인 시세가 4억 6,800만 원임에도 5,500만 원을 시세에 부합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할인금으로서 절약하며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고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초과이익금 및 할인금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과 밀접하게 직무 관련성을 가진 A로부터 취득한 것이다. 시장의 합리적인 시세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7억 4,00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액에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매도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A로부터 이 사건 ○○동 아파트를 4억 3,00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시세보다 월등히 낮은 가액에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논리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 이에 징역 8년, 벌금 4억 5,000만 원을 선고함.

-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20고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군용물손괴, 군인등강제추행(일부 공소취소, 인정된 죄명 상관폭행), 상관공동폭행, 폭행 [ 2020. 8. 11.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상관공동폭행]**

- 피해자 중위 E(24세)는 방공소대원인 피고인 A와 B에 대해서는 순정상관에 해당하고, 피고인 C과 D에 대해서는 준상관에 해당되는바, 2020. 3. 29. 03:30경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주특기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항공기식별문제를 내던 중 피해자가 답을 맞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자신의 양팔을 넣어 피해자를 뒤로 눕혀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압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반항하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상박부를 5회 꼬집고 재차 자신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약 10분에 걸쳐 20회 가량 움켜잡았다가 놓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2020. 3. 29. 03:50경 피해자의 위 숙소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 이후 힘을 빼고 있는 사이에 자리에서 일어나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나 이거 보고할 거야!"라고 말하며 빨래 건조대를 2회 휘두르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고인 D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었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자신의 양팔을 넣어 피해자를 뒤로 눕혀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양손으로 5분간 피해자의 배와 겨드랑이를 간지럽혔다. 이어서 피고인 C는 자신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팔을 넣어 둥글게 감싸 누르는 일명 '암바'를 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항공기식별문제를 제출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고인 A의 상관폭행, 폭행, 군용물손괴]**

- 피고인 A는 2020. 1.경에서 같은 해 2.경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의 11:30경부터 13:00경 사이 소속대 병영식당 배식대에서 식판을 들고 서 있는 위 피해자 E를 보고 갑자기 자신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툭 쳐 상관인 피해자 E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A는 2020. 3. 27. 14:00경 소속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보고 갑자기 자신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툭 쳐 상관인 피해자 E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A는 2019. 3. 12. 21:30경 소속대 독신숙소 휴게실에서 피해자 하사 F(23세)에게 "너 사회에서 운동 좀 하다 왔다며", "운동하다 온 거 맞냐고!"라고 말하며, 자신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내려찍듯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숙소로 돌아간 피해자 F를 쫓아가 재차 자신의 오른쪽 팔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감싼 상태(일명 '헤드락')에서 피해자 F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3. 20.부터 같은 해 3. 21. 새벽 무렵 소속대 독신숙소에서 휴게실에 있던 의자를 이용하여 군용에 공하는 물건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독신숙소 외부 창문 유리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 [피고인 D의 군용물손괴]**

- 피고인 D는 2020. 3. 20.부터 같은 해 3. 21. 새벽 무렵 소속대 독신숙소에서 체력단련실에 있던 아령(5kg)을 이용하여 군용에 공하는 물건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독신숙소 출입문을 찌그러뜨리고, 출입문의 문고리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 **1심의 판단 및 쟁점**

- 쟁점: ① 피고인들은 합동의 인식과 의사가 없었고, ② 특히 피고인 B가 피해자 E의 고환을 만진 것은 피해자 E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므로 추행이 아니라 폭행에 불과하였다. ③ 2020. 3. 29. 03:30경 특수강제추행 직후 같은 날 03:50 상관공동폭행은 위 특수강제추행 직후의 접촉범에 불과하여 포괄일죄이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④ 피고인 A와 D가 손괴한 숙소 출입문은 일반 숙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출입문과 다를 바가 없어 군용물로 의율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B가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다급하게 인명을 구조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된다. ⑤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없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이어서)

- 판단: ① 피고인 A는 피고인들 중 최선임으로서 피고인 A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행위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A가 2020. 3. 29.자 범행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되겠네”라고 말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이 피해자 E에게 항공기식별문제를 내어 답을 맞추지 못하면 어떠한 해를 가하자는 의사의 표현을 현장에서 함으로써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한 합동범임이 인정된다. 만약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최소한 피고인 A는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몸에 10여분 이상 달라붙어 억압하고 추행하는 모습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추행 등 파생적인 피해를 예견하고 목격할 수 있는 지위에서 이를 중단하도록 하는 어떠한 태도의 표현도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문제를 내는 등 적어도 최소한의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던 상황에서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이상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직접 추행을 하지 않은 행위자들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사유들과 함께, 공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피해자 한명의 신체를 함께 억압하는 상황이어서 서로의 신체 움직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더구나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신체적 피해행위의 연속적인 발생 시간 길이로서는 비교적 긴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연속하여 피해를 당했다는 명확한 진술에 의할 때 합동범 또는 이에 대한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합리적 증거가 충분하다. 피고인 B는 가해행위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추행이 아닌 폭행만 있었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장하나, 피해자 E는 법정에서 출석하여 피해사실이 지속된 시간과 피해를 당한 신체부위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밖에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특별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C과 D는 피고인 B의 행위를 자세히 보지 못해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는지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주장하나, 피해자 E가 억압되어 있던 시간이 비교적 억압 상태로서는 짧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피해자 E가 큰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호소하여 그 소리와 피해자 E의 몸의 움직임과 흔들림, 현장의 분위기 등을 통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E가 입는 고통의 내용에 대해서 인식과 예측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설령 위 피고인 A가 B를 직접 보지는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억압 시간, 피고인 A가 반복하여 문제를 내고 피해자 E가 그 문제의 정답을 맞추었는지 여부에 맞추어 변태적, 가학적으로 피해를 주던 현장의 모습, 피해자 E가 상당한 고통의 크기를 소리를 통해서 표현하고 호소한 동시에, 서로 매우 밀접한 거리에 있던 위 피고인들 스스로도 피고인 B의 위치와 고통을 받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A 및 B와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의 의사 외에도 피해대상인 신체의 부위, 사건 당시의 정황 등 종합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형법 상 구성요건인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는 개별적인 개인의 특정한 의사라기 보다는 합리적인 일반인의 경우 어떻게 피해를 인식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법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피해대상인 신체 부위는 합리적인 일반인의 경우 대부분 성적으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부위로서, 성적수치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위일뿐더러 피해자 E가 비명소리 또는 거부 의사의 표시 등으로 피고인들에게 거부감을 표시하였으며 피해자가 비록 성적수치심이라고 진술하지는 않으나 고통과 분노 등 중대한 불쾌감에 해당하는 감정을 느낀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와 같은 감정을 피해자가 느꼈다면 합리적인 일반인으로서 성적수치심으로 법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감정이 존재하였다고 추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들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③ 시간적으로 근접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본다. 이 사건 특수강제추행과 상관공동폭행은 그 보호 법익을 달리하고,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리가능하므로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 특수 강제추행되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에, 상관공동폭행되는 신체의 안전과 함께 상관의 지휘권 보호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취지를 달리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상관공동폭행은 특수강제추행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종료된 직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구분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행위이다. ④ 이 사건 숙소 출입문은 군관사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군용물에 해당한다. 군의 용도에 공하는 군용물은 사적인 소유물과 달리 보다 높은 정도의 관리, 사용 상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상황에 대하여 오인이 있었음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직사관이나 관리실 등에서 마스터키 등을 가지고 있어 정당한 권한과 수단에 의하여 문을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숙소 출입문을 손괴한 것은 ‘정당한 사유’ 또는 ‘상당한 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한다거나 책임을 조각하는 ‘예측가능성 또는 비난가능성 없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들은 위 피고인들이 심지어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파손행위 후 피고인 B의 숙소 안으로 들어가지도 아니하였고 그러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하지도 아니하여 위 B의 안전 여부는 확인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아서도 추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군용물에 관한 범죄의 보호법익과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만약 과잉긴급피난 등의 임의적 감면 관련 법조항을 추가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적용을 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⑤ 피고인들이 범행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진술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들의 행동 및 피고인들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에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C, D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육군 2작사 보통군사법원 2020고38, 2020고47(병합) 업무상과실치상 [2020. 12. 28.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중대장으로서 2019. 9. 17. 실시된 예비군 훈련 영점사격의 사격 통제관이었고, 피고인 B는 대대장으로서 예비군 훈련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임무를 책임지는 지휘관이었다. 군에서 실시하는 사격훈련은 사격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람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사격장 내부에서 활동하는 인원들에게 위 사격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는 탄두회수대에 튄 탄두파편이 사로까지 날아오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음에도 피고인 B는 사격중지를 명하지 않고 이후 안전통제를 게을리하였으며, 피고인 A는 보고 이후에도 계속 탄두파편이 날아오고 있음에도 사격중지를 명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부사수 임무를 수행하던 피해자 상병 C가 탄두파편에 다리를 맞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었다.

• 1심의 판단 및 쟁점

- 쟁점: 피고인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 판단: 피고인 B는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하여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사격현장에 대기하며 안전통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당시의 위험 상황을 대대장에게 보고한 이상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고, 가사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대장의 지시 없이 사격을 중지시킬만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①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 ② 관련 규정상 피고인에게 안전통제 의무가 넉넉히 인정된다는 점, ③ 피고인이 사격장 안전통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① 위험상황을 보고한 이후에도 위험이 계속되었으므로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점, ② 사격통제관으로서 사격중지를 하는 것이 기대불가능하지 않다는 점, ③ 관련 규정상 피고인에게도 사격 안전통제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음
- 이에 피고인 B(벌금 700만 원), 피고인 A(벌금 200만 원, 합의)을 선고함.

○ 육군 7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32 살인, 주거침입 [2020. 11. 25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로부터 2020. 4. 20. 이별통보를 받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친구관계로 남기로 하고, 2020. 5. 18. 입대 후 첫 휴가를 나와 피해자를 만나 재회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2020. 5. 20. 02:1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너무 힘들다, 죽고싶다” 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며 출근을 제지하였고, 이에 12:25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퇴거시켰으나 재차 16:36경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화장실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21:04경 퇴근한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얼굴, 목, 팔, 손등 등을 약 60~70회 찔러 살해하였다.

• 1심의 판단 및 쟁점

- 쟁점: 자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피고인은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으므로 자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퇴근 후 직장동료와 통화를 하며 집에 들어가 화장실 문을 열었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의 비명소리와 전화가 끊긴 점, ② 이로부터 2분 후인 21:08경 직장동료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한 점, ③ 직장동료의 신고로 21:12경 도착한 경찰이 문을 두드리며 큰소리로 문을 열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21:24경 112에 전화한 점, ④ 이후에도 21:40경 소방대원에 의하여 피해자의 집 문이 강제 개방될 때까지 피해자의 구조 시간을 지연시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을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징역 30년을 선고함.

## □ 해군 군사법원

### ○ 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9고19 무고 [2020. 3. 24. 선고]

####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하사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군사경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함

#### • 1심의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로부터 강간당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과 B는 코인노래방에서 애정행각을 하다가 코인노래방 업주에 의하여 제지당한 적이 있는 점, ② 피고인과 B는 부산 송도에 가서 연인들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은 점, ③ B는 피고인이 남편의 당직일에 자신을 만나거나 집으로 불렀다고 진술하는바, 실제로 당직표에 의하여 B의 진술이 사실임이 확인된 점, ④ 피고인과 피고인 친구간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과 B가 불륜관계였음을 의심할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 점, ⑤ 피고인이 주장하는 강간피해 일자와 상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⑥ 피고인은 강간피해 이후 B의 얼굴을 보는 것이 괴로웠지만 표면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고 진술하나, 강간 등 피해 이후 B에게 숙취해소 음료를 선물하고,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 등을 주고 받았으며, 때로는 새벽시간에 1시간 넘게 전화통화를 하는 등 표면적으로만 B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점, ⑦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B로부터 불륜사실을 전해 들은 2018. 9. 21.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2018. 9. 27.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결혼생활이 자신의 불륜사실로 위기에 처하자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거짓 고소를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 점 등 피고인 진술 및 B 진술의 신빙성을 고려하여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하다.

### ○ 해병 제2사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2020. 4. 27. 선고]

#### • 공소사실의 요지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01:35경 김포시 소재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9경 같은 동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20. 1. 22. 01:39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소재 3차선 도로를 제한속도인 8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06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장소는 3차로 위에 안전지대가 시작되어 3차로 운전 차량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도로 형태 및 전방 장애물을 잘 살피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안전지대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카고트럭의 왼쪽 후미 및 하단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A(21세)가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개방성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함

#### • 1심의 판단: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부하인 소초 대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엄벌의 필요성이 높아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하다.

○ 제1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0고3 살인음모(인정된 죄명:살인교사미수) [2020. 8.20.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 기숙사 방을 함께 사용한 피해자 A(23세)가 “너가 빨리 기숙사에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며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고, 피고인이 자는 중에 음악을 크게 듣거나 게임을 하고, 수시로 전등을 켜는 등 자신을 괴롭히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 마음을 먹었고, 피고인은 2019. 2. 22. 17:00경 00시 00사 기숙사 내에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모든 업무를 대신해 준다고 게시한 성명불상자 앱을 통하여 문자로 피해자의 성명, 나이, 휴대전화 번호, 거주지, 직장, 업무시간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납치·감금, 중상해 할 것에 관하여 상담하고, 피해자의 납치·감금 대가금을 900만 원으로 정하고, 같은 날 20:22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공소외 B 명의 은행계좌로 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은 회사 근무지를 순찰하던 중 피해자가 고의로 어깨를 치면서 시비가 붙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2019. 2. 25. 20:54경 위와 같은 장소 내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앱을 통하여 문자로 “휘발유랑 성냥을 구해주세요”라고 보내며 피해자에 대한 직접 살해하려는 의사를 표출하고, 성명불상자와 협의 과정을 거쳐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를 납치·감금한 상태에서 살해까지 해줄 것을 의뢰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그 대가금을 1,8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이미 납치·감금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중 600만 원을 선금 명목으로 먼저 송금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를 납치·감금만 할 것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최종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 1심의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하며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실패한 교사는 피고인의 교사행위가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의 구체성과 위험성을 갖춘 것인지에 따라 가별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그 구체성과 위험성은 교사행위의 목적과 의도,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지위 및 관계, 교사행위 당시의 정황, 교사행위의 수단과 방법, 범죄실현에 대한 대가 제시와 그 내용,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요구를 거절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적어도 2019. 2. 25.경에는 피해자를 직접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성명불상자로부터 시체처리 등으로 발각될 가능성 등을 설명받고 나서 이를 우려하여 이 사건 성명불상자에게 납치, 감금에서 나아가 살해까지 의뢰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납치·감금과 관련된 대화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 범행 실행 일자, 장소 등을 특정하였고(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의뢰한 이후에 이를 변경하겠다는 대화가 없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살해방법, 청부살인 대가금 총액과 그 납부방법, 이미 지급한 300만 원의 청부살인 대가금 전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등 살인교사행위에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합의를 완료하였다. 단지 선금 600만 원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어 최종 합의가 결렬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교사행위는 그 구체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참고로 재판부 의견 중 피고인이 살인교사행위에 착수한 것은 인정되나, 스스로 전체 행위를 중단하고 그 의사를 철회하였는바, 이는 이른바 ‘예비의 이탈 또는 중지’에 해당하고, 죄형법정주의가 일부 후퇴된 예비죄가 갖는 비정형성으로 말미암아 가별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막고, 중지미수 등과의 형벌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의 이탈 또는 중지’의 가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를 채택하지 않아 유죄를 선고하다.

## ○ 해병 제2사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9 군인등강제추행 [2020. 9.17. 선고]

###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7. 23:40경 김포시 소재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노래를 부르던 군인인 피해자의 허리를 피고인의 왼쪽 팔로 감싼 뒤 왼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 손목을 잡아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과 소파 사이에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으려고 함으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 • 1심의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①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주요한 범행 사실 및 그에 대한 자신의 대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억을 한다는 진술 및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노래방 일자형 의자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피고인, 증인 A, 증인 B의 각 진술이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함께 노래방에 있던 증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증인 B가 이를 묵인하는 취지의 말을 했고, 피해자는 증인 B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오면서 성 고충 전문상담관에게 전화하였는데, 성 고충 전문상담관이 전화를 받지 않자 성 고충 전문상담관에게 문자를 남긴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와 이 사건 당일 부대 당직사령 C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이는 C을 거쳐 D, 대대장에게까지 보고가 된 점, 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순간의 위치, 방향, 자세, 행동, 대화 내용, 기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

####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① 피고인은 군사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군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 한 진술 반복 경위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먹어 이 사건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 귀가 경위 등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기생이 옆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피고인보다 하급자인 피해자가 옆자리에 앉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탑승한 택시기사 A의 진술서에는 “제가 본 B 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몸은 비틀거렸지만, 정신은 맑아 보였습니다. 택시에 태워서 이동하는 동안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발음은 조금 꼬이는 것 같았지만 제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었고 대답도 잘했습니다.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2019. 11. 8. 21:16경 본인의 휴대전화로 ‘성사고’, 2019. 11. 9. 11:35경 ‘해병대 성추행’ 등에 대해 검색을 하여 네이버 블로그의 ‘해병대 대령, 부하 여군장교 성추행 “혐의인정”이라는 제목의 글에 접속해본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는 보직에 피고인이 지원해서 왔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많이 제시해서”라고 진술하나, 피해자, 증인 A, 증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임관한 초임 장교로 보직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게 고소한 경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증인 A, 증인 B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여 병기 병과 내에서 얻게 되는 이익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국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의 추행행위 자체가 기습추행이 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공군 군사법원

### ○ 기동정찰사령부 2020고6 위력행사가혹행위[2020. 7. 10. 선고]

####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속대 조종교관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7. 25. 15:50경에서 17:10경 사이 소속대 시뮬레이션실에서 피해자 A에게 항공기 시동 전 절차 수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못하겠으면 나가 이새끼야, 하겠다는 사람 너 말고도 많아, 국민혈세가 아깝다, 양심없는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조종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팔굽혀펴기 200회와 옆드러뻗쳐 60분을 시키는 등 2018. 8. 22. 시간미상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함

#### • 1심의 판단 및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여한 열차려가 균형법상 가혹행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교육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균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판결 참조), 나아가 그 행위가 교육 목적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정당한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1개월여의 기간 동안 피교육생이었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준 14회에 달하는 열차려와 욕설을 하였던 것인바, 그 중 일부는 아래 무죄로 판단한 바와 같이 가혹행위죄에 이를 정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열차려와 욕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던 점, 열차려의 정도, 욕설의 성격, 위 범죄사실들이 발생하였던 시기와 그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것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었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교육목적 범위 내에서 정당한 한도를 넘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다(유죄).

한편, 순번 2, 3번 공소사실의 경우 피해자의 항공기 시동절차 수행이 미흡함을 이유로 시행된 것으로 그 동기가 명확하고, 각각 팔굽혀펴기의 횟수가 100회, 옆드러뻗쳐의 시간이 5분에 그쳤으므로 필요한 교습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짧은 시간 열차려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체력 수준에서 팔굽혀펴기 100회와 옆드러뻗쳐 5분이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줄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관으로서 모의비행 절차 수행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지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별다른 욕설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혹행위에 이를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며, 순번 6번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디브리핑에 늦게 온 것을 이유로 부여하였던 열차려로서 그 이유가 명백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만한 언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열차려에 있어 옆드러뻗쳐만 시켰을 뿐 팔굽혀펴기는 별도로 시키지 않았고, 옆드러뻗쳐의 지속 시간도 5분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진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가혹행위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무죄).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일부 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 군사법 관련 법령 현황

## □ 법률

- 군사법원법(2020. 6. 9. 일부개정)
- 군형법(2016. 5. 29. 타법개정)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2016. 1. 6. 타법개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일부개정)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일부개정)

## □ 대통령령

-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2018. 12. 24. 일부개정)
-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2017. 9. 5. 타법개정)
- 군검찰사무 운영 규정(2019. 7. 2. 일부개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2. 4. 타법개정)
- 군법무관 임용법 시행령(2014. 11. 19. 타법개정)
-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2017. 7. 26. 타법개정)
- 군인 징계령(2020. 7. 28. 일부개정)
-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2017. 3. 27. 제정)

## □ 대법원규칙

- 군사법원 사무규칙(2013. 12. 10. 전부개정)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2020. 11. 26. 일부개정)
-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2020. 11. 26. 일부개정)
-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2020. 11. 26. 일부개정)
-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2020. 11. 26. 일부개정)

## □ 국방부령

-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2012. 11. 9. 일부개정)
- 군검찰 사건사무 규칙(2020. 2. 3. 타법개정)
- 군검찰 보존사무 규칙(2020. 2. 3. 타법개정)
- 군검찰 압수물사무 규칙(2017. 8. 1. 타법개정)
-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 규칙(2010. 2. 17. 제정)
-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2020. 2. 3. 타법개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2. 3. 타법개정)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2020. 7. 28. 타법개정)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일부개정)
-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2016. 11. 29. 타법개정)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2018. 1. 22. 타법개정)

## □ 국방부 훈령(군사법원)

- 군사법원 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훈령(2008. 10. 21. 제정)
- 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2009. 8. 14. 제정)
-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2017. 6. 22. 일부개정)
- 군판사·검찰관·국선변호인 임명에 관한 훈령(2017. 6. 22. 일부개정)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검찰단의 조직 및 관할에 관한 훈령(2020. 9. 3. 일부개정)
- 법원정보체계 운영에 관한 훈령(2016. 3. 4. 제정)
- 군사법원 재판사무에 관한 훈령(2020. 7. 2. 일부개정)

## □ 고등군사법원 예규

- 고등군사법원 업무분장 예규(2020. 7. 1.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군사보안업무 예규(2019. 9. 10.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재판사무 예규(2020. 7. 1.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행정사무 예규(2019. 7. 10.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운영 예규(2019. 7. 10.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위기조치 예규(2020. 7. 1. 일부개정)
- 군판사의 면담 등에 관한 예규(2014. 6. 1. 제정)
- 고등군사법원 공보업무 예규(2014. 6. 1. 제정)
- 고등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2020. 7. 1.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2020. 7. 1.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동원소요 심의위원회 운영 예규(2018. 2. 1. 일부개정)

## □ 육군 규정 등

- 규정: 육규181 재판사무 규정(2019. 9. 1. 부분개정)
- 예규
  - 군사법원 재판사무 예규(2019. 4. 17.)
  - 군사법원 업무분장 예규(2020. 12. 9.)
- 지침·지침서
  - 국선변호인 선정 및 감독에 관한 지침(2008년)
  - 부착명령청구사건 처리 지침(2019. 4. 16.)
  - 군사법원 관할 지침(2020. 7. 7.)

## □ 해군 규정 등

- 규정: 해규15-0-1-01 해군 군사법원 규정(2018. 8. 24. 전부개정)
- 지침·지침서
  - 군사법원실무
  - 군사법원 업무처리 지시서

## □ 공군 규정 등

- 규정: 공규10-02 군사법원 운영규정(2017. 7. 7. 일부개정)
- 예규
  - 재판진행절차에 관한 예규(2018. 2. 20.)
  - 국선변호업무에 관한 예규(2018. 2. 20.)
  - 군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예규(2018. 2. 20.)
  - 국선변호인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2018. 2. 20.)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대상 사건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예규(2018. 12. 11.)
  - 관할관 확인조치 업무절차에 관한 예규(2018. 2. 20.)
  - 즉결심판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2018. 2. 20.)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2018. 2. 20.)
  - 재판서 정보 등의 간인에 관한 예규(2018. 2. 20.)
  - 재판서에 기재할 성범죄 피해자 성명의 익명처리에 관한 예규(2018. 2. 20.)
  - 구속의 통지에 관한 예규(2018. 2. 20.)
  - 공군 군사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예규(2018. 2. 20.)
  - 공군 군사법원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에 관한 예규(2018. 12. 11.)
  - 공판절차에서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변호사에 관한 예규(2018. 2. 20.)
  - 전시 군사법원 운영 예규(2019. 5. 1.)
  - 법원정보체계 입력 및 활용 매뉴얼(2019. 6. 1.)
  - 조서작성 편의 등을 위한 속기·녹음 고지 및 공판조서 기재방법에 관한 예규(2019. 9. 10.)



# 2020년 주요 개정 형사법 관계법령

법률호수	법률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포일 (시행일)
<p>법률 제17264호</p>	<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li> <li>-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li> <li>-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li> <li>-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li> <li>-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li> <li>-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li> <li>-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li> </ul>	<p>2020. 5. 19. (2020. 5. 19.)</p>
<p>법률 제17265호</p>	<p>형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li> <li>-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함</li> <li>-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li> </ul>	<p>2020. 5. 19. (2020. 5. 19.)</p>
<p>법률 제17263호</p>	<p>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개별 범죄사실의 특정 및 개별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입증에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 등의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보다 원활한 환수에 기여하려는 것임</li> </ul>	<p>2020. 5. 19. (2020. 5. 19.)</p>

법률호수	법률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포일 (시행일)
<p>법률 제17338호</p>	<p>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li> <li>-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li> <li>-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li> <li>-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li> <li>- 관련 규정에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정함</li> <li>-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li> </ul>	<p>2020. 6. 2. (2020. 6. 2.)</p>
<p>법률 제17823호</p>	<p>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임. 그러나 4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고,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의 목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를 명시하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는 것임.</li> </ul>	<p>2021. 1. 5. (2021. 1. 5.)</p>

법률호수	법률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포일 (시행일)
<p>법률 제16924호</p>	<p>형사소송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임</li> <li>-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함</li> <li>-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가 하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경무관, 총경 등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인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함</li> <li>-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도록 함</li> <li>-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li> <li>-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함</li> <li>-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둠</li> <li>-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li> <li>-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li> <li>-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li> <li>-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함</li> <li>-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음</li> <li>-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li> </ul>	<p>2020. 2. 4. (2022. 1. 1.)</p>

## 2020 군사법원 연감

**발행일** 2021년 4월 일

**발행처** 고등군사법원 | 육·해·공군 군사법원

**인 쇄** 국군인쇄창 재경지원대